2025년 법전원협의회 심포지엄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일 시 2025. 11. 25. 화 13:10 ~ 18:00

장 소 롯데호텔서울 (에메랄드홀 2F)

주관/주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AKLS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PROGRAM

2025년 법전원협의회 심포지엄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 일　　시 : 2025년 11월 25일(화), 13:10~18:00

□ 장　　소 : 롯데호텔서울(에메랄드홀 2F)

□ 주관/주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공동주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3:10~13:30	**등록 및 환영**		
13:30~14:00	**〈인사말 및 기념촬영〉** ■ **인 사 말 : 홍대식**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축　　사 : 조순열**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 기념촬영		■ **사회** **이탁건** 사무국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14:00~14:30	**〈기조발제〉 오수근** 명예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법전원협의회 제6대 이사장)		
14:30~15:30	**〈주제 발표〉**		■ **좌장** **박수곤** 교수 (한국민사법학회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1	■ **표준판례 개정(안)과 실무적 법학교육 개선방향** • 표준판례 로스쿨 강의 및 변호사시험 연계 • 과목별 주제발표 - 발제자 : **홍영기**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서종희**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연**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30~15:50	휴식시간		

시 간	내 용		비 고
15:50~16:50	주제 2	■ **변호사시험 개선(안)과 실무적 법학교육 개선방안** • 시험유형별 주제발표 :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선택과목 시험의 유·불리 문제 개선방안 - 발제자 :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이황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곽희경**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좌장** **박경철** 원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50~17:5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본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 **이사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홍수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제34대 의장)		■ **좌장** **안수현** 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50~18:00	**〈폐회〉**		

Contents

인사말 및 축사

인사말 ····· 1
홍대식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축사 ····· 5
조순열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기조발제 | 법학교육에 대한 자문(自問)과 제안

오수근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법전원협의회 제6대 이사장) ····· 9

주제발표 1 | 표준판례 개정(안)과 실무적 법학교육 개선방향

좌장 박수곤 교수 (한국민사법학회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표준판례 로스쿨 강의 및 변호사시험 연계**
■ **과목별 주제발표**
발제자 홍영기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33
토론자 서종희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46
토론자 김정연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49

주제발표 2 | 변호사시험 개선(안)과 실무적 법학교육 개선방안

좌장 박경철 원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시험유형별 주제발표 :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선택과목 시험의 유·불리 문제 개선방안**

발제자 서보국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55

토론자 이황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01

토론자 곽희경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04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안수현 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11

토론자 구본억 과장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 119

토론자 이사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123

토론자 홍수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제34대 의장) ····· 127

인사말 및 축사

인사말

홍대식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인 사 말

홍대식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홍대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7년의 성과 위에서, 우리 법학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법조인 양성 체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다양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그 과정에서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변호사시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본래 일정한 역량을 갖추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응시자의 절반이 탈락하는 '선발시험'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험 대비를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어 특성화 교육, 리걸클리닉, 공익·실무 역량 강화와 같은 다양한 학습 기회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시험 대비가 교육 전반을 압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우리 법학교육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런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급변하는 법조 환경이라는 또 다른 과제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확산과 법률 시장의 구조 변화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해야 할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도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문을 열어주실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의 기조발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법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근본적으로 짚어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통찰과 함께, 기초법학·실무교육·시험제도·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오늘 논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논의될 '표준판례 개정안'과 '변호사시험 개선안'은 로스쿨 교육이 암기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표준판례 체계가 정착되면 암기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핵심 판례의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교육이 가능해지고, 교육과 시험의 기준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학습 환경도 한층 정상화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개선 또한 교육의 질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행 시험 준비가 암기 중심으로 흐르면서 전문 분야 교육이 위축되고 실무 역량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오늘 제안되는 개선안은 실무와 이론이 균형을 이루는 시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로스쿨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현장과 법조 실무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법률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 25개 로스쿨·학회·법조 단체·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오수근 명예교수님을 비롯해 좌장,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에 함께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법학교육의 발전을 향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2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홍 대 식

인사말 및 축사

축 사

조순열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축 사

조순열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순열 변호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님과 공동으로 참여해 주신 각 법학회 회장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제도 도입의 이유로 강조되었던 '법학교육의 정상화'라는 문제의식을 다시 돌아보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차분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법학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자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인 오늘의 자리는 더욱 뜻깊고 소중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장이 앞으로도 매년 이어져, 우리 법학교육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전통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조는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전문적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법학전문대학원의 핵심 교육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될 '표준판례 개정안과 실무적 법학교육 개선방향', '변호사시험 개선안과 실무적 법학교육 개선방안'은 바로 이러한 교육이념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다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실무적 법학교육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으로 이어져 이론·기초·전문·실무가 균형 있게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체계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오수근 명예교수님을 비롯하여,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어 주실 박수곤 교수님, 박경철 원장님, 안수현 원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에 함께해 주실 교수님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법학교육의 미래를 그려가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조 현장과 법학교육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이 현실의 법조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계

와 법조계가 서로의 비전을 꾸준히 나누는 협력 구조가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학계와 법조계가 지혜를 모은다면, 법조인 양성과정은 더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순열

기조발제

법학교육에 대한 자문(自問)과 제안

오수근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법전원협의회 제6대 이사장)

법학교육에 대한 자문(自問)과 제안*

오수근**

1 시작하며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오랫동안 사법시험의 그늘에 가리워져 있었다. 그런 사법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큰 제도의 변화를 이루었지만 법학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변호사시험의 무게가 여전히 크게 느껴진다. 변호사시험 합격생 수는 법학교육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어 교육기관으로서 법전원, 법학교육자로서 법학교수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래 많이 들은 이야기가 "공부는 학생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다"였다. 교수는 법학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는 셈이었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는 법학교육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 법학공부는 사법고시, 변호사시험 등 시험을 위한 것이고, 시험은 시험 볼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니 교수가 챙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했으니 어떻게 배웠는지 별 관심이 없을 것이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함은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신만 탓하니 법학교육자가 교육을 고민할 필요가 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법학교육은 수업의 구성과 진행, 활용하는 교재와 평가 방식같이 개별 교수가 정할 수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의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법조인 양성제도, 변호사시험의 유형과 출제 범위, 그리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법전원 체제가 도입된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 늘리면 법학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적지 않다. 이 자리에서는 법학교육 제도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법학교육자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변호사시험 출제와 채점에 관해서 논한다.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관련하여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현재의 법학교육 방법이 학습의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 즉 미래 법률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나 서비스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 가운데 법률서비스는 없다. 한국의 법률가가 국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법대와 법전원에 진학해서 법률가가 됐는데 왜

* 이 글은 필자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6권 제1호 통권 75호 (2021.9)에 기고한 "법학교육방법에 대한 의문과 대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前 법전원협의회 제6대 이사장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까? 언어의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고 법체계나 국가의 규모를 이유로 들 수도 있다. 그런 문제를 다 고려하더라도 개별 법률가의 역량이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이고, 그 점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법률가의 업무역량을 제대로 배양하지 못한 법학교육에 있다고 본다.

법학교육 방법의 개선은 개별 교수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강의실에서 분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학교의 법학교수들이 중지를 모아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도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법학교수 전체가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 해방 후 법학교육 방법에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명의 퇴임교수라도 변방에서 소리를 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용기를 냈다.

2 법학교육에 대한 자문

1) 법전원 교육은 법학교육의 시작인가 끝인가?

필수과목 담당교수님들 중에는 할당된 수업시간이 부족해서 진도를 다 나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 각 과목에서 어느 만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는 법전원 석사과정이 법학공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일이다. 법전원 석사과정은 법학공부의 시작인가 끝인가?

법률가는 평생 공부하면서 일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법전원 석사과정은 법학공부의 시작이지 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법전원 석사과정을 법학공부의 끝으로 생각하는 쪽인 것 같다. 필수과목 교과서는 해마다 페이지를 더 한다. 새로운 판례와 학설을 담기 위함이다. 변호사시험에는 과목별로 신판례가 끊임없이 출제된다. 새로운 학설과 판례를 법전원 석사과정 3년 동안 다 공부해야 하나? 다 공부할 수 있나?

1997년 인하대학교에 재직할 때 교수학습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여러 외국대학을 방문한 일이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탠퍼드대학에서 인기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물으니 “학습방법(How to learn)”에 대한 과목이라고 한다. 스탠퍼드대학처럼 명문대학에 온 학생들은 이미 학습방법을 마스터한 사람들이 아닌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졸업 후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용한 지식이 아니다. 각 영역에서 리더로 살려면 새로운 분야나 원리를 평생 학습하면서 살아야 하므로 학습방법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점을 학생들이 알고 있다.” 그 과목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길래 그리 인기가 많은지 궁금해서 수업시간과 청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담당 교수가 지난 학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스카우트되어 이번 학기에는 개설하지 못했다고 한다.

법전원 석사과정이 법학공부의 시작이라면 앞으로 실무에서 다루게 될 법령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참고해야 할 판례를 읽고 추론 과정을 분석하여 논리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법전원에서 판례를 배울 때 판례의 결론이 아닌 추론과정을 분석하는 연습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수는 가르쳐야 할 판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추론과정을 분석할 시간이 없다고 하고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는 결론을 외우기도 힘든데 판결문 전체를 읽고 추론과정 분석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게다가 변호사시험에는 신판례까지 나오니 3학년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신판례의 결론을 모아 별도로 학습한다. 신판례를 정리한 책도 출간되고 특강도 있다.

법률가가 평생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법전원 석사과정 교육의 목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 전체로는 말할 것도 없고 법학계나 법조계에 법전원 석사과정 교육의 역할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법전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혹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은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나 검사로 근무하다가 변호사가 된 경우를 변호사의 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법전원 석사과정에서 '실무'도 교육해야 한다고 믿는다.

교육을 지식의 전달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사고에 매여있는 점도 이유가 될 것이다. 지식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지식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에는 지식 자체가 권력이고 교육의 대상이었다. 지식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진 지금은 지식 자체가 교육의 대상일 수는 없다. 이제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법에서 새로운 지식은 기존 판례의 결론이 아니고 기존의 추론보다 더 설득력 있는 타당한 논리이다. 그런 추론능력의 배양은 법전원 석사과정을 법학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때 가능하다.

2017년 법전협 원장단이 홍콩 대학을 방문하여 현지 법학교수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다. 변호사 선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필자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홍콩에서 법학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3곳[1]이 있는데 한 해에 약 650여명의 졸업생의 대부분이 변호사가 된다고 한다.[2] 그런데 변호사단체에서 법대 정원을 증원해서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늘려달라는 요청했는데 법과대학들이 거절했다고 한다. 이유는 현재의 법과대학 자원으로는 변호사가 될 만한 수준의 학생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홍콩의 법과대학 교수들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어느 수준이 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 또는 법학교수 사이에서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논의 자체도 들어보지 못했다. 직접 참여해 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선을 정할 때 수준에 대한 논의를 한 기억이 없다. 오직 몇 명을 합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만 격론을 벌일 뿐 그 합격선이 어느 수준인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그러한 공감대가 없으니까 변호사시험에 이른바 "불의타"가 나오게 된다. 불의타는 법학교육의 관점에서 매우 안 좋은 현상이다. 배움에는 순서가 있는 것인데 예상치 못한 문제를 출제하는

1) The University of Hong Kong (HKU),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UHK),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CityU).
2) 명재진, 홍콩 사법제도 참관기, 「로스쿨 창」, 2018년 1/2월호, 2018. 1. 12.

것은 배움의 질서를 깨트리고 시험을 운의 영역에 묶어 둔다. 과거 사법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니까 불의타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변명할지 모른다. 그 논리에 동의할 수 없지만 설사 그런 논리가 받아진다 해도 이제 자격시험이 되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의 수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법학교육에서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학업의 수준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변호사시험 필수과목의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이 담당교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필수과목 강의에서 다룰 범위와 도달해야 할 수준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학생들은 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된다. 많이 배우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없다. 3년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있다. 더욱이 법전원에서 배워야 할 것이 필수과목만이 아니다. 선택과목이나 기초과목들도 배워야 할 대상이다. 필수과목의 학습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려서는 안 되는데 그 수준이 어디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

법전원에서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혼란은 실무교육에서 좀 더 심각하다. 실무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도 부족하고 구성원 간의 인식도 제각각이고, 실무교육을 언제, 누가,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많다. 법전원 체제가 도입되던 초기 무슨 근거에서 누가 처음 의견을 낸 것인지는 불확실한데 법전원 졸업자가 사법연수원 1년 수료생의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법전원 교과과정과 변호사시험 내용이 구성되었다.

'법전원 졸업생 = 사법연수원 1년 수료자'의 공식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명제이다. 법전원 졸업생은 법학 수학기간이 3년이지만 사법연수생은 입소 당시에 이미 3년 이상 법학을 공부했다. 사법연수원은 실무교육에 특화된 곳이지만 법전원은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할 적당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3)]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4)]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법률 이론'과 '실무'가 각기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실무의 의미에 대해 국내외의 법학계에서도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5)]

---

3) 아래의 내용은 오수근, 김두얼, 이승준 공저,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삼영문화사, 2020), 44~46면에서 발췌했다.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5) 미국 법전원의 교육에 대한 보고서로 자주 인용되는 MacCrate Report(American Bar Association, 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 An Educational Continuum, 1992)는 장래 미국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변호사 업무 기술(Fundamental Lawyering Skills)로 10가지를 제시하였다(138~207면).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법적 분석(legal analysis), 법적 조사(legal research), 사실 탐지(factual investig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상담(counselling), 협상(negotiation), 소송과 대안적 분쟁해결(litig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법적 사무의 조직과 관리(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legal work)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를 인지하고 해결하기(recognizing and resolving ethical dilemmas)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가 "법적 지식이나 법적 원칙의 이해(legal knowledge or understanding of legal rules)"를 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변호사 업무 기술"은 "실무"의 영역에 두고 "법적 지식이나 법적 원칙의 이해"는 "이론"의 영역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준("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 교육" 「저스티스」 통권 151호, 2015. 12) 교수는 법학교육에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의미를 관념적으로 정의하는 대신 법학교육의 스펙트럼을 다음의 네 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① 법이론과 법원칙의 학습, ② 법이론을 사실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사고방식의 학습, ③ 법이론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방법 학습, ④ 의뢰인과의 상담에서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여러 기술의 학습. 이 스펙트럼은 법학교육의 여러 측면을 전적으로 이론적인 측면과 전적으로 실무적인 측면을 양 극단에 두고 여러 측면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법이론과 법원칙 자체를 학습하는 것과 이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법이론을 사실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과 적용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의문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이 항에서 "실무경력교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보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하는 법률 관련 일을 ‘실무’라고 할 수 있겠다. 법률은 법률실무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에서 ‘실무’는 소송기록을 작성하는 기록형 시험으로 평가한다. 즉 실무역량을 소송기록 작성으로 단순화하였다. 이러한 접근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에 대한 논란은 이들이 각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서 출발하여 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된다. 첫째, 학습의 순서이다. 무엇을 먼저 배우고 무엇을 나중에 배우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이는 어떤 것이 학습효과가 더 큰지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둘째 학습 자원의 배분이다. 3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무엇을 배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호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셋째, 법전원에서의 교육과 변호사자격 취득 후 교육 간에 역할 분담이다. 법률가는 평생 학습이 필요한 직역이므로 양자 간에 어떻게 역할을 배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전원 교수 응답자의 63%가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의 실무연수를 거친 후 법률적 사무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32%는 1년간의 실무연수를 선택했다. 법전원 학생 응답자는 69.3%가 6개월 실무연수를, 23.3%가 1년의 실무연수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교수 학생 모두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의 6개월 실무연수를 전제로 하여 나머지 실무교육을 법전원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래프 1] 귀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법률 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이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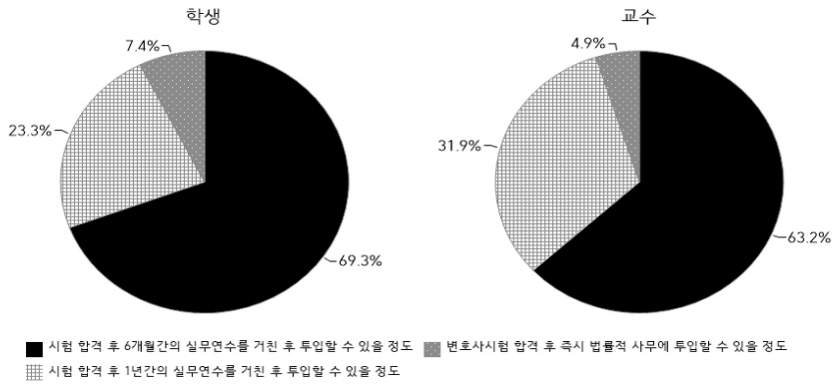

있다. 또 법문서 작성(legal writing)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오수근(Soogeun Oh, A Reflection on Practical Training in Legal Education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3 (2016)) 교수는 ① 법령, 판례, 학설에 대한 이해, ② 법적 쟁점 추출과 관련 법원칙 적용, ③ 소장, 의견서, 판결서 등 법문서 작성, ④ 조사 등 관련 정보 수집, 의뢰인과의 의사소통, 협상, 협업 능력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230-236면).

설문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실무교육의 내용을 확정한 후 이를 법전원에서 학습할 것, 6개월 실무연수에서 학습할 것,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학습할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구분에서는 학습의 단계, 효과 그리고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전원에서 학습할 실무교육의 내용이 정해지면 그 내용 중에서 교과목의 시험에서 평가할 항목과 변호사시험에서 평가할 항목을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분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형식과 내용이 실무교육에 대한 이러한 구분에 근거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 법학교육자는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고민하나?

법전원에 들어와 법학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학습능력에서는 매우 우수한 학생들로 증명된 이들이다. 법전원생들은 대부분 학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적능력 측정시험이라는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학생활이나 전공과목에 대해 방황할 처지도 아니고, 법전원에 진학함으로써 그들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학습의지가 분명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준비된 법전원생들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 심한 좌절을 겪는다. 무엇을 배운 것인지, 제대로 공부한 것인지, 앞으로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시험 선수이고 학습의 신이라 할 그들로서는 아마도 그들의 학습 여정에서 처음 겪는 시련일지 모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필자의 체험으로 잠시 돌아간다. 필자가 법학을 전공한 것은 법학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사회계열로 입학해서 3학기를 수학한 후 전공분야를 선택하는데 특별히 전공하고 싶은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법대로 간다고 하고, 다행히 성적이 되어서 법과대학으로 진학했다. 사회계열에서 들은 유일한 법학과목이었던 헌법과목에서 A-를 받아 법학이 그리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법대에 들어가서 처음 수강한 민법총칙은 법에 대한 나의 모든 예상을 깨버렸다. 휴강이 많아서 진도는 한정치산에 그쳤지만 교과서와 강의에서 나오는 표현이나 용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사용하는 한국어가 아닌 것 같고, 그런 개념이 왜 필요한지 또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 불편함은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나아가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계속되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학습의 재미를 느낀 일이 없었고 책임감으로 열심히 할 뿐이었다. 법학공부는 원래 그런 것인 줄 알았다.

법학공부에 대한 불편함과 법학에 대한 거리감은 미국 로스쿨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서서히 없어졌다. 언어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학공부 자체는 재미있었고 내가 스스로 추론하는 것이 가능했다. 판례 이름의 철자법을 외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외울 것도 없었다. 영어만 잘 된다면 토론도 잘 할 수 있고 성적도 잘 받을 것 같았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민법총칙을 법학교육의 첫 과목으로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학습효과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본다. 판덱텐 체계의 제정법은 법원칙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조문을 구성한다. 논리 완결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총칙은 해당 분야의 법원칙 중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모아놓은 것이다. 총칙은 다른 규정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과 법원칙을 먼저 배우는 것이 효과적일까? 법학 초학자 대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더 쉽게 이해하고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모여서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을 형성할 때 그 추상적인 개념의 의미와 역할에 공감할 수 있다. 그런 공감이 있어야 개념이 자기 것이 되고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민법총칙은 그러한 학습순서와 역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행위를 예로 들어보자. 민법총칙 교과서를 보면 먼저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정의하고 그 예로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다고 설명한다.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요건'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어서(또는 일상적인 의미와는 차이가 있어서) 문자적 의미만으로는 그 정의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욱이 예로 제시한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에서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의 단서를 찾기도 어렵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률행위의 정의와 예를 암기하고 넘어간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인 계약을 먼저 학습하고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국 로스쿨 첫 학기에 계약법을 수강했는데 첫 시간부터 학생들이 교수님의 질문에 답하고 판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 분야의 첫 과목인 민법총칙 첫 시간에는 있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이다. 개념 정의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필요한 상황을 먼저 다루기 때문에 그 사실과 밀착된 법원칙이 쉽게 다가온다. 추상적 개념이나 법원칙을 우격다짐으로 머리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법전원에 따라서는 채권법을 민법총칙에 앞서 강의하거나 같은 학기에 강의하기도 하고, 나아가 민법의 각 영역을 해체하여 수준별로 재구성하여 과목을 개설하기도 한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초학자의 법학공부를 위해서는 제정법 체계에 따라 구분된 현행 교과목 대신 민법의 각 분야는 물론이고 민사소송법과 상법 등 민사법 전체를 효과적인 학습순서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힘든 이유는 법학교수와 수업이 '과목'이라는 벽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수업에서 각론과 총론의 연결이 안 되고, 민법과 상법의 연결이 안 되고, 절차법과 소송법의 연결이 안 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이를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무에서는 이 모두가 다 통합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상법교수인 필자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학교수가 자기 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기시된다. 또 인접해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해도 용서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사람들은 계약을 할 뿐이지 민법의 계약을 하거나 상법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상법 시간에 M&A 거래를 다루면서 어떻게 채권각론의 문제나 공정거래법의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가? 이런 과목 간의 벽 쌓기는 교수에게는 편할지 모르지만 법학 전체나 학생들의 법학공부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각 제정법에 근거한 과목별로 교과과정을 편성하거나 수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학습이나 연구에서 통합적 접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미국 미시간 로스쿨에서 유명한 법철학자의 계약법 수업을 들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교수가 민사법 초급이나 중급 과목을 모두 같이 강의하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학습효과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또 다른 예가 현행 교과서이다. 역량있는 법학 교수님들이 평생 다듬은 교과서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업적이다. 해당 분야의 법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판례를 거의 빠짐없이 망라하고 있다. 전에는 세법 책만 해마다 판을 달리하여 출간했는데 요즈음에는 법령 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기 위해 해마다 신판이 나온다. 필자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는 대부분 해당 법령의 순서에 따라 구성된다. 의의, 목적, 연혁 등에서 시작하여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원칙에서 예외의 순서로 서술되어 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빌리면 이른바 '체계서'이다. 체계서는 말 그대로 해당 분야의 법원칙과 해석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상세히 서술한 책이다.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실무가나 법학자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기 쉽다.

문제는 체계서가 학습의 순서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들어본 것, 나아가 경험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먼저 또 쉽게 학습한다.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학습자가 받아들이기에 용이하다. 크게 보면 체계서의 구성 순서는 학습 순서와 역순이다. 독해 능력이 출중한 법전원 학생들이 체계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과서의 필자에 따라서는 입문서를 출간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입문서도 학습의 순서에 따라 구성되어 있지 않고 체계서의 요약본이어서 서술 순서는 체계서와 다름이 없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강사의 저술도 체계서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체계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적인 양을 줄이고 독자가 읽기에 쉽게 편집한 장점은 있지만 양을 줄이다 보니 배경설명이 부족한 약점이 있다. 초학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체계서와는 다르게 효율적인 학습 순서에 따라 서술한 입문서를 찾기는 쉽지 않다.

3) 강의가 가장 좋은 수업방식인가?[6)]

법학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다. 주부가 요리를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뿐이다.

교수의 연구 역량은 학위과정에서 쌓을 수 있다. 그러나 가르치는 역량을 키우는 체계적 과정은 없다. 논문제출자격시험과 같은 제도적인 압박수단도 없다. 더욱이 수업은 교수의 여러 임무 중 하나일 뿐이다. 연구처럼 양적 질적 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회봉사처럼 나름의 유인요

6) 강의의 의미를 넓게 보면 수업을 진행하는 행위 전체를 가리키고, 좁게 보면 교과서나 강의안을 설명하거나 읽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소가 있어야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다. 수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개별 교수가 정한다. 초중고 교사의 수업보다 교수의 수업이 부실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 진행 방식은 개별 교수가 학생시절에 경험한 것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법전원 수업 방식 중 강의안이나 교과서를 읽거나 순서대로 설명하는 유형이 가장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교수가 학생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 법학교육에서 강의를 위주로 하는 수업방식은 큰 변화가 없었고 법전원 도입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강의안이나 교과서를 읽거나 설명하는 강의방식은 과거 책이 귀한 시절에는 나름의 기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가 넘쳐나는 지금 강의안이나 교과서가 최적의 수업 교재인지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 초학자가 학습하기에 적합하게 기술된 강의안이나 교과서라면 학생이 직접 읽는 것이 낫다. 특별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의안이나 교과서의 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

만일 수업을 교수가 자신의 학설을 설파하는 기회로 생각한다면 전장을 잘못 찾은 것이다. 학설은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 간에 토론을 통해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지 아직 지식의 양이 교수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인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대륙법에서는 학설이 법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수업에서는 대립되는 학설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고 논리전개를 분석해야지 자신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학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교수의 강의는 이미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일부 강의는 학생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전원에 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더 도움이 되는 학원강의를 선호한다면 강의자로서 교수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법학교수는 학원강사가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강의자로서 교수의 경쟁력이 없다면 교수가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4) 좋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교육학 이론을 거론하지 않아도 평가가 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자격 취득이 첫째 목표인 법전원 학생들의 학습은 변호사시험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교수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의 유형과 범위, 그리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중요하다. 현재 법전원 법학교육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일 변호사시험 문제가 장기적으로 역량있는 변호사를 분별하는 데 효과적이라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와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변호사시험 문제가 장차 변호사로 일할 응시생의 역량을 잘 평가하는 좋은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변호사시험 관리 전담기관인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문제의 질을 상시 평가하는 전문 인력이 없다. 출제관리의 우선순위는 오답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지

변호사시험의 고유한 목적에 합당한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지 않다. 전담기관을 탓할 수도 없다. 출제위원이 되는 법학교수들이 좋은 문제여야 한다는 요구도 하지 않고 출제된 문제가 좋은 문제인지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시험적으로 선택형 민사법 문제를 검토해 봤다. 기출문제 해설집을 보면 각 문항의 질문와 지문에 관련된 판례가 빼곡히 소개되어 있다. 법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선택형 민사법 문제에는 판례의 논리를 묻는 문제보다 결론을 묻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 2012, 2015, 2018, 2021, 2024년의 민사법 문제를 검토했는데 판례의 논리가 갖는 장단점을 묻는 문제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문항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질문의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어 판례와 다른 생각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판례를 기억하지 않고는 사실상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위의 5개 년도의 선택형 민사법 문제와 미국 변호사시험 출제기관인 NCBE[7]가 공개한 미국 변호사시험 선택형[8] 샘플 문제 21개 중 민사법 문제 14개를 주고 이 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Claude Max Plan에 물었다. 한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암기에 집중하고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원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능력을 키우라고 조언한다.

학습에서 암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다. 필자는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할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법학은 외국어처럼 암기가 꼭 필요한 분야는 아니라고 본다. 법률가가 법적판단을 할 때 이용하는 법령과 판례는 항상 공개되어 있고 법률가가 법률사무를 할 때 언제든지 찾아서 이용할 수 있다. 반복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 암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상당 기간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면 "암기한 것은 모두 휘발된다"고 말한다.

판례를 암기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원리적인 면에서 합당하지 않다. 판례는 법이 아니다. 판례가 있다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어느 생각이 맞는지는 끊임없이 논의할 사항이지 외워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일이 아니다. 판례의 결론을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법은 과거에 묶이게 되고 법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다. 판례암기는 법학교육의 측면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선택형 시험이든 서술형 시험이든 판례를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은 판례의 추론 과정을 묻지 않고 판례의 결론이나 적용요건과 관련된 특이한 문구를 외울 것을 요구한다. 당연히 학생들은 판결문 전체를 읽고 논리의 흐름을 분석하고 익히는 대신 문제풀이에 필요한 사항만 암기하니 아무리 판례를 외웠어도 법률가처럼 생각하지 못한

7)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미국 변호사시험에 사용되는 표준화 시험을 출제·관리하는 기관.

8) 뉴욕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Uniform Bar Examination(UBE)은 다음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MBE (Multistate Bar Examination): 200문항의 선택형 시험, 전체 배점의 50%
MEE (Multistate Essay Examination): 6문항의 논술형 시험, 전체 배점의 30%
MPT (Multistate Performance Test): 2문항의 실무능력 평가, 전체 배점의 20%
MPRE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변호사 윤리시험
이 가운데 MBE(선택형 시험)는 총 200문제로 구성되며, 이 중 175문제가 실제 채점되고 25문제는 시험문제 개발을 위한 예비문제이다. 시험은 2개 세션(오전 100문제, 오후 100문제)으로 나뉘며, 각 세션은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 법적 추론 능력이 변호사 역량의 핵심인데 시험 문제들은 법적 추론 능력의 배양을 방해하고 있다.

시험에서 암기 여부 자체를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출제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법령의 내용이나 판례의 결론을 직접 묻는 문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출제할 수 있다. 게다가 새로운 판례가 계속 나오니 이전과 다른 문제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둘째, 오답 시비를 막을 수 있다.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한다"라는 한 줄로 출제자나 출제기관은 면책될 수 있다. 셋째, 출제자가 평가의 목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학교육의 목표는 법적 추론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장래 법률가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은 응시자의 법적 추론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법령의 문구나 판례의 결론을 암기했다고 해서 그런 추론능력이 배양되는 것은 아니다. 추론능력이 있어서 암기를 잘할 수는 있지만, 암기가 돼서 추론능력이 배양되는 것은 아니다. 법학교육의 목표를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적지 않은 시험문제가 법률가가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잘 외우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강의와 마찬가지로 출제도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출제에 공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다.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니 시간이 흘러도 문제의 질이 별로 개선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현행 문제 자체의 적부가 아니고 출제된 문제가 법학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반면에 의사 국가시험의 출제는 변호사시험 출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이다.[9] 의사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주관기관이다. 국시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26개 보건의료 직종의 국가시험 출제와 시행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시원에는 교육평가 전공자를 포함하여 박사 7명이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사 국가시험의 문항은 1999년 실시된 의사의 직무분석에 근거한 평가목표에 따라 만들어진다. 직무분석이 있기 전에는 의과대학 과목의 학습목표에 따라 문항을 제작했다고 한다. 의사 직무분석은 1999년에 한 번 실시되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문항 개발기준과 출제기준을 계속 수정하고 있다. 문항 개발위원으로 위촉된 의대(의전원) 교수가 문항 개발기준에 따라 각자 신규 문항을 개발한 후 합숙 심사에서 타 전공자가 포함된 팀별로 문항 수정 및 심사를 하여 문제은행에 입고한다. 2017년 암기형 문항을 대량 폐기했고 그 후로는 문제해결형 문항을 확대하고 있다.

출제위원들이 문제은행에 입고되어 있는 출제후보 문항 중에서 출제기준에 따라 출제문항들을 선정한다. 이때 각 문항에 맥락효과를 주지 않도록 답가지 및 문항 내용을 다듬는다. 전년도 기출문제와 문제별로 분석한 난이도(정답률), 분별도를 고려하여, 적정 난이도와 분별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원칙적으로 선정된 문항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수정이 필요한 문제는

9) 의사 국가시험의 출제와 관리에 관한 내용은 오수근, 김두얼, 이승준 공저, 앞의 책(각주 3) 72~84면에서 발췌하였다.

출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듬기 과정에서 용어나 표현의 통일을 위한 다듬기는 가능하다.

출제문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출제과정에서 그리고 출제 후 검토작업을 한다. 출제단계에서는 과목별 출제위원들이 해당 과목 출제작업을 마치면, 검토위원들이 전체적인 난이도가 적절한지, 중복문항이 있는지,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문제구성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시험문제를 확정한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난이도, 분별도, 답지반응도를 분석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되는 문제는 검토위원들이 집중 검토하여 출제오류가 확인되면 정답을 정정하여 출제 오류에 따른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문항과 시험의 타당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문항분석을 시행하는데 이는 통계적 수치에 근거한 양적 문항분석으로 문항난이도 분석과 문항 변별도 분석, 오답분석이 있다. 또 의사국가시험의 문제구성이 바람직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산출한다. 문제은행 방식의 출제 시스템에서 양호한 시험문항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오차없이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다.

국시원의 연구개발 인력을 통해 의사 국가시험 제도와 문항 자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된다. 문항 자체에 대한 연구 개발사례의 하나로 확장결합형 문항(Extended Matching Set Type Item, 이른바 'R형')을 들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출제에 반영되어 R형 문항의 출제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전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법학적성시험에서도 문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법학적성평가연구원(前 법학적성시험연구사업단)은 각 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 실시된 후 문항별 반응에 대해 양적 질적 분석작업을 실시한다. 양적 분석작업에서는 난이도, 신뢰도, 5분위 평가를 측정한다.[10] 질적 분석은 연구위원이 각자 문항을 좋은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로 구분하고 이를 사업단 전체 회의에서 토의하여 대표적인 좋은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선별한다. 문항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결과는 입고예정 문항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또 출제위원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좋은 문제를 출제하는 길잡이가 된다.

5) 채점은 공정한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문제의 정답은 공개하지만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의 채점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채점은 주관적인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하지만 자격 부여 여부를 정하는 시험에서 주관적인 재량행위라고 하여 판단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장기간 허용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본다.

과문한 탓이겠지만, 변호사시험에서 채점기준이 작성되는 과정을 전해 듣기로는 한 두 명의 출제위원이 작성하고 이를 해당 과목의 출제위원들이 돌려보아 수정할 수는 있지만 시간의 제약도 있고, 힘도 들고, 서로 체면도 있어서 채점 기준 자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10) 난이도는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신뢰도는 시험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평가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5분위 평가는 전체 성적을 5분위로 나누고 각 답가지별 응답률을 비교한다.

않는다고 한다. 시험 실시 후 가채점 단계에서 채점기준을 논의하지만 참여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충분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과연 출제위원 한 두 명이 작성한 채점기준이 공정하다고 할 만큼 법학교수들 간에 채점기준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까? 시중에 나와 있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을 보면 채점기준이 서로 같지 않다. 출제위원들이 작성한 채점기준과도 다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상태에서 서술형 문제의 채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법전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모의고사의 채점기준은 법전원 교수들에게 "대외비"로 제공된다. 물론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도 그 내용은 볼 수 있다. 이 채점 기준을 보면 명백히 틀린 경우도 있고 채점기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논점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고 배점에 대한 의문도 있다. 실제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준에 충실히 따를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법학교수들이 채점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필자는 경험하지 못했다. 출제위원이 작성한 채점기준은 기준대로 존재하고 실제 채점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이든, 법전협 모의고사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 기말고사든 각자 자신의 기준으로 채점한다. 그런 채점행위는 사실상 특별한 제한이 없이 재량행위로 인정받았다. 물론 서술형 시험의 채점이 선택형 시험의 채점처럼 객관적으로 일관될 수는 없지만 채점자 간의 차이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지 조사해 보거나 논의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채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참고할 사례가 있다. 하나는 사법연수원에서 채점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법학적성시험의 논술문제 채점이다. 사법연수원 교수가 담당하는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 과목에서는 담당교수들이 분야를 나누어 각자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기준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전체 교수가 논의하여 기준과 배점을 확정한다. 채점은 문항별로 나누어 한 교수가 연수원 전체 답안을 채점하고 다른 교수가 점검한다.

법학적성시험에서 논술의 채점기준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다. 우선 출제 현장에서 출제위원들이 상의하여 채점기준을 만든다. 그 채점기준으로 갖고 채점위원을 포함한 다른 출제위원들이 학생 검토위원들이 작성한 논술답안을 5장씩 채점을 하여 결과를 비교해 본다. 출제교수와 비출제교수간에는 물론이고 출제교수 간에도 채점 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채점기준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채점기준을 적용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토론을 거쳐 채점기준을 수정하고 다시 5장을 채점한 후 결과를 대조해서 채점기준을 수정한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쳐 최종 채점기준을 확정한다.

법학적성시험의 논술을 과거에는 모든 법전원에서 개별적으로 채점했는데 2018년부터 희망하는 법전원에 한해 법전협에서 집중 채점하게 되었다. 채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절차와 검증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전문 채점위원(대부분 변호사)들이 모여서 채점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답안을 시험 채점하여 그룹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고 다시 시험 채점을 하고 차이에 대해 토의한다.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서 채점기준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전문 채점위원들은 하루에 답안 20~30장만 채점할 수 있다. 채점할 답안을 미리 주지 않고

채점 결과를 답안을 받은 당일에 입력해야 하므로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 한꺼번에 많은 답안을 채점하는 데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문 채점위원들이 매일 받는 답안에는 모든 채점위원들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답안이 있다(이른바 dummy 답안). 더미 답안은 채점위원들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채점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더미 답안에 대한 채점결과를 비교하여 편차가 크게 나는 채점위원에게는 관리본부에서 이에 대해 통지를 하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고정된 환경에서 고정된 심리상태로 채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채점자의 채점 결과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채점위원 간의 편차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편차를 줄이기 위한 치밀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서술형 문제의 채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퇴임 전 변호사시험 채점기준에 대한 교수님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런 모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채점기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채점위원 각자의 채점행위에 대한 통제가 없다. 매일 일정하게 채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채점자 각자의 기준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채점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불공정한 채점은 법학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잘못 설정된 채점기준에 맞추어 공부를 한다. 수업을 하다보면 기출문제집을 들고 와서 질문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기준 자체가 잘못되거나 배점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 법학교수들이 공감하는 채점기준이 만들어지면 낭비하지 않을 일들이다. 불공정한 채점으로 인해 학점이나 당락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하나.

3 대안

3.1. 필수과목 학습내용의 표준화

변호사시험을 현행처럼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시험으로 운영해서는 법전원에서 제대로 법학교육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험 과목별로 어느 수준까지 학습할 것을 요구할지에 대해 법학계와 법조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합의가 있어야 합격자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어렵다.

필수과목별로 반드시 학습할 내용을 정하는 것이 표준화이다(이하 “필수과목 표준화”).[11] 필수

11) 법률가와 자주 대비되는 전문직인 의사 역시 표준화된 교육에 의해 양성된다. 의학교육은 전국적으로 상당 부분 표준화되어 있다. 의과대학/의전원의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설정한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표준에 맞추어져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각 대학의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전체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유지된다. 오수근, 김두얼, 이승준 공저, 앞의 책(주 3), 84면.

과목 표준화는 여러 의미를 갖는다. 우선은 법전원 수업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해당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표준화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필수과목 표준화는 변호사시험에서 다룰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변호사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이 제한 없이 확대되는 현재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필수과목 표준화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야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수과목 표준화에는 여러 이유에서 저항이 있다. 우선 수업의 운영을 담당 교수의 완전 재량으로 이해하여 표준화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수업을 학문 연구의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 수업은 학생의 학습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수는 수업을 하지 않고도 연구를 할 수 있지만 학생은 학습하기 위해 법전원에 진학했고 그 과정에서 필수과목 수업을 수강한다. 수업은 학문 연구가 아닌 학습을 위해 존재한다. 필수과목 수업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는지는 담당 교수가 아닌 법학계가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다.

필수과목이 표준화되면 담당 교수는 아무 재량없이 앵무새처럼 정해진 내용을 강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필수과목 표준화는 해당 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그 이상을 다루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교수의 재량이다. 또 정해진 내용을 다루는 방식은 개별 교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필수과목 표준화는 학습할 내용을 정하는 것이지 교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필수과목 표준화는 교수들의 심정적인 반발과도 마주하게 된다. 수업은 교수에게 주어진 배타적 시간이고 공간이므로 수강생 외에는 누구도 들여다보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다. 교수는 더 이상 지식을 독점하고 있지도 않고 학생들은 교수의 말이라고 무조건 순종하지도 않는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마음껏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의 강의와 비교하고 있다. 교수가 교실 문을 걸어 잠근다고 피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다. 법전원은 서당이 아니다.

필수과목 표준화를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과목별로 표준판례를 선정하는 작업을 해서 각 분야별 표준판례집을 출간했다. 필수과목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고, 변호사시험에서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신판례 출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표준판례에 대한 법학교수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를 종종 봤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선정 근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 유용한 반응이라고 본다. 사건을 담당한 실무가는 모든 판례를 탐구해야 한다. 그러나 초학자를 가르치는 법학교수로서는 먼저 다룰 판례가 있고 나중 다룰 판례가 있다. 학습에 더 도움이 되는 판례가 있고 덜 도움이 되는 판례가 있다. 먼저 다룰 판례와 학습에 도움이 될 판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만으로도 표준판례집 간행 사업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표준의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과목 교수들이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표준판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학교육을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 필수과목

표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표준판례집의 개정판을 기대한다.

3.2. 암기에서 추론으로

더 이상 법전원생을 암기에 묶어서는 안 된다.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 이제 정보 그 자체는 쉽게 획득할 수 있다. 검색 프로그램이 암기의 필요를 줄였다면 AI의 등장은 암기의 필요를 없앴다.

시험에서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 대신 법률규정과 판례를 주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물으면 법원칙에 대해 나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다. 그래야 학습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응용력이 발전해서 법률가로서의 역량이 강화된다.

암기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는 이른바 상대평가와 연결되면서 학생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학습공동체가 망가졌다. 암기를 잘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자질과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니 주변의 학생들이 다 적이 되어버렸다. 절대적 척도에 따라 적용능력, 추론능력, 적용능력을 키우게 해야 궁극적으로 법률가로서의 역량이 커진다.

법전원에서 경쟁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의미없는 경쟁이 아닌 의미있는 경쟁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다. 법전원이 상대평가를 한다고 해서 변호사시험 합격생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어차피 역량을 기준으로 합격생 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니 이제 법전원이 상대평가 체제를 스스로 폐기하고 스스로 절대평가 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기준이 암기가 아님은 물론이다.

암기에서 추론으로 변화하려면 법학교육자의 역할도 바뀌고 수업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법학교육자는 강의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 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수업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혼자 혹은 여럿이 함께 공부한다.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은 책도 읽고 문제도 풀고 동영상 강의도 듣는다. 수업이 여러 학습 경로의 일부이므로 수업이 전체 학습 경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습경로 전체를 활성화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수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수업을 통해 여러 경로의 학습활동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일이다. 수업시간 외 다른 학습활동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 교사가 예습을 포함한 적절한 과제를 내주는 것이 그런 활동이다. 다음 수업 시간에 질문할 것을 예고하고 그 답을 준비하게 하는 것도 좋다. 교수는 수업시간 외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교수의 강의는 그런 학습활동의 촉진과 조정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인 유익이 있을 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의 학습 활동에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다. 질문에 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여러 이유에서 교수에게 질문하기를 꺼린다. 교수님이 어렵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질문하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몰라서 질문을 하느냐는 반응이 나올까봐 염려되기도 한다.

학생들이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질문과 교수의 답변에서 배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은 공개하는 것이 좋다. 또 어떤 질문이 나와도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우리가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초급에서 고급으로 수준별로 일정하게 학습하지 않는다.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복잡한 추론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도 쉬운 문제를 풀지 못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개념이나 원칙을 완전히 학습한 후에 다른 개념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상태로 이것저것을 배워가면서 이를 상호 연결해서 전체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의 관점에서는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 없다. 모든 질문은 질문자의 학습에 중요하다.

수업의 의미와 역할을 이렇게 이해하면 교수의 역할이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고 학습공동체의 리더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12] 지식 자체는 교수가 전달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많다. 네이버에 물어보는 것이 교수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AI는 말할 것도 없다. 교수는 학습공동체의 리더로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인도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강의는 그 역할보다는 하위의 활동이다.

수업방식 역서 강의 위주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법학공부를 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다. 필자도 공부할 때 그랬고 지금도 늘 조심스럽다.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추상적 개념과 현실의 사실을 연결하는 일이 쉽지 않다.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스토리텔링이 도움이 된다. 그 개념이 나온 혹은 적용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뒷받침되면 이해하기도 쉽고 암기하기도 쉽다.

판례에는 법개념이나 법원칙을 둘러싼 스토리텔링이 있다. 추상적인 개념 이전에 사건에 이르게 된 이야기가 있고 그 사건에 적용된 법 개념과 원칙 간의 긴장이 있다. 사실과 개념이 완전체로 묶여 있다. 하나의 판례로 특정 법개념이나 법원칙의 전체를 학습할 수는 없지만 그 개념과 원칙의 중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법학교육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판례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점 외에도 여러 가지 점에서 유용한 학습 교재이다. 첫째, 판례(특히 사실심 판결문)에는 법률가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어떻게 '사실인정'을 하고 어떻게 '법적 추론'을 하는지가 기록된 것이 판례이다. 둘째, 1심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판결문 전체를 읽어가면 자연스럽게 소송절차를 알게 되고 소송법적 쟁점도 적지 않게 다루게 되어 초학자가 소송법에 입문하기에도 좋다. 셋째, 판결문에는 어느 한 분야나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어 법학 과목의 벽에 갇히지 않고 종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판결문 전체를 읽어나가면 판결요지만 볼 때와는 달리 긴 호흡을 할 수 있어 파편화된 이해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과과정을 보면 판례를 읽고 분석하는 일은 기본 원리를 배운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쟁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있으면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순서를 바꾸면 다른 효과가 있다. 판례를 읽고 분석하면서 판례에서 나온 쟁점과

12) 법학교육 방법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한 교수님은 교수의 주요 임무가 학생들을 격려하는(cheer up) 것이라는 의미에서 '리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치어리더'로 표현하시기도 한다.

익숙해진 후에 그 쟁점을 체계적으로 다루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각 과목의 도입부에서는 적절한 판례를 제시하고 그 전체를 분석하면서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법적 문제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다. 수업을 판례분석 중심으로 운영하면 학생들이 공부할 범위가 명확해지는 부차적인 장점도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판례의 논리전개에 더 집중하게 되어 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이러한 생각이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 방법이라고 알려진 케이스 메소드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채택하자는 주장으로 오해되지 않기 바란다. 판례를 교재로 사용할 때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판결문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13] 판결문에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례문제를 만들어 풀어 보게 할 수도 있고,[14] 처음 해당 분야를 공부하는 초학자에게 사실관계만 주고 학생들이 직접 교과서를 포함한 여러 자료를 찾아가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도[15] 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고 미국 로스쿨 수업이 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16]

논자에 따라서는 판례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대륙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필자는 대륙법 체계에 특화된 법학교육 방법이 있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늘 궁금하다.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방법이 학습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필수과목의 도입부에 판례읽기를 활용하자는 필자의 제안은 어느 나라의 법학교육 방법이니 해 보자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 법적 개념이나 법원칙을 덜 힘들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자가 경험에서 찾은 것이다.

암기에서 추론으로 법학교육의 중심이 이동하면 시험볼 때 법전 뿐만 아니라 판례를 참조하게 한다. 법률가가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와 동일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보안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판례는 마음대로 검색해서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판사임용시험이 그렇게 한다.

아울러 선택형 시험에서 정답을 공개하는 것처럼 서술형 시험에서 채점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채점 기준은 법률가가 추론하는 모범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서 제시해야 학생들이 학습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3.3. 법학교육연구소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위해서는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나라 법학교육이 변화하려면 법학교육자 사이에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법전원협의회뿐이다. 법전협의 구성 자체가 법전원이고 현재

13) 법학에서 케이스 메소드라고 할 때는 주로 이 방법을 지칭한다. 케이스 메소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김재원,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 - Case Method에 관한 오해와 이해-", 『법철학연구』(한국법철학회, 2006), 9권 2호.

14) 우리나라 사례 문제집에서 채용하는 방법이다.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케이스 메소드도 여기에 가깝다.

15) 문제중심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오수근, "문제중심학습법을 활용한 법학교육 - 모의수업의 내용과 관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제47권 제4호.

16) 오수근, 앞의 논문(각주 16), 42~43면.

하는 일도 법전원 입학을 위한 리트의 출제와 채점 그리고 변시 모의고사 출제와 채점 등 법학교육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법학교육자에 대한 가장 최신의 포괄적인 데이터를 가진 곳도 법전협이다. 법전협에는 역량있는 직원들이 있고 효율적인 업무조직이 갖추어져 있다. 법전원 입학부터 교육 그리고 평가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은 법전협뿐이다.

법전협에 교육학 전공자 한 두명만 추가되면 법학교육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법학교육연구소는 법학교육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법학교육자들이 교육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제공하면 좋겠다. 한 나라의 교육과정을 수립하는데는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전원에서 필수적으로 어떤 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교과내용을 정비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와 합의를 바탕으로 법전원 교육과 법전원 졸업 후 교육을 구분하고 법전원 교육 방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법전협 산하 법학교육연구소는 법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법학교육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초빙하여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전국 법전원에 전파하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제도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법학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되고 합의를 도출하는 역량이 갖추어지면 법전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비전공자의 법학교육 등 법학교육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차원의 법학교육에 대해서도 조언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법률관련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마무리하며

표준판례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다. 표준판례에 대해 법학교육자가 합의하는 것, 그 합의를 위해 법학교육의 전 과정을 각 전공 교수가 살피게 되는 것, 표준판례에 따라 수업내용과 출제가 달라지는 것 모두가 우리나라 법학교육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변화는 항상 어렵고 많은 저항을 이겨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법학교육자 각자가 수업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출제와 채점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나라 법학교육이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필자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법학교수나 법학도가 많이 있어 필자의 생각에 대해 반박을 해주면 좋겠다. 우리 법학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법학교육방법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다는 데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 글이 그런 논의의 단초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다.

주제발표 1

표준판례 개정(안)과 실무적 법학교육 개선방향

■ **표준판례 로스쿨 강의 및 변호사시험 연계**

■ **과목별 주제발표**

좌 장 **박수곤** 교수
(한국민사법학회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자 **홍영기**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서종희**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연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표준판례 로스쿨 강의 및 변호사시험 연계

홍영기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상황

법조시장에서 A.I.의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로소 불거진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단지 몇 년전부터 시작된 그 상황이 지금 법학교육의 한계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으로부터 수십만 개의 판례를 곧바로 찾아내어 이용하고 있었다. 판례를 머릿속에 암기하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음을, 그리고 그렇기에 법학교육이 판례를 암기하는 데에 집착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리석은 일임을 누구나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 십수년 간 이어진 변호사시험은 달라질 기미가 없었고 그 사정은 지금도 그대로다. 그러는 사이에 로스쿨 내 법학교육의 현재는 더욱 참담해져갔다. 합격률 50퍼센트인 변호사시험을 앞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낙방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짓눌려 방대하면서도 단순한 판례의 결론을 외우고 있을 뿐이다. 주어진 시간은 채 3년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이 다가올수록 학생들의 관심은 판례의 단순한 결론에 쏠리고, 이를 간결하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부 강사나 수험서에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로스쿨이 아무리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수들이 심도 깊은 법지식과 실무능력을 가르치고자 하여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불행은 결코 로스쿨 내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졸업 후 실무가가 된 이들에게 단기간에 외운 내용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이며, 설사 암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든 검색이 가능한 판례의 결론에 불과하기에 법실무에서 쓸모가 없다. A.I.에게 누구나 법문제를 물어보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그에게 물어오는 의뢰인보다 어떤 면에서 더 우월할 수 있는가? 나아가 이러한 지금 상황이 법률가의 전반적인 실력저하와 법문화의 퇴보로 이어져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려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일순간에 끊어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시적인 변화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한다. 그 관건은 단연 변호사시험에 놓여 있다. 단지 변호사시험만을 개선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를 바꾸지 않고서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제도의 변화를 생각할 수는 없다. 미래 법조인이 현재 로스쿨학생이며 그들 모두가 시험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기에, 시험방식의 작은 변화가 그 어떤 제도의 개선보다 영향이 클 것임은 분명하다.[1)]

Ⅱ 표준판례

변호사시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래되었다. 자격시험화, 합격률 재조정, 선택법과목 폐지 또는 개선, 선택형 시험과목 제한, 응시횟수 제한과 예외, 과목 개편, 유형별 시험분리, 시험일 조정 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2] 그러나 이러한 개선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 제한적일 것이다. 로스쿨교육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변호사시험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필요한 때다.

1. 변호사시험의 미래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때에 바로 필요로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에 이르기 위해 결국 변호사시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판례와 문헌을 자료로 참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례형 또는 기록형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지를 보는 형태여야만 한다(예: '오픈북'). 검색도구를 누구나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시대에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다녀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므로, 사안을 접하는 순간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고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것으로부터 논거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현실에서 사례를 접할 때 그 해결에 필요하여 찾아낸 자료를 분석한 후, 법논리에 맞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창의적인 주장을 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선 법률가들과 유사한 환경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도기에는 다소 제한된 정보만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개된 판례 및 주요 문헌을 발췌하거나 한정지어 폐쇄적인 데이터베이스(예: 과거의 '법고을LX')의 형식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잠정적인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3]

이때 출제와 채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거나 채점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P/F의 형식으로라도 객관식 시험을 남겨둘 수 있다.[4] 그러나 이 또한 판례암기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법적 사고의 프로세스를 묻는 일종의 '설문형' 시험이 지금 '선택형' 시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안을 주어 그에 포함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 단순한 분류부터 복잡한 문제풀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설문하여 그에 맞는 답을 수험생들이 O, X로 체크해나가도록 하는 방식이다.[5]

---

1) 변시개선에 대한 같은 논지는 박용철,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 법전원의 입시학원화와 법전원 교육의 파행화, 54면; 지원림, 변호사시험: 있어야 할 곳과 있는 곳, 69면.

2) 여러 자료가 있으나, 강명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 연구, 2면 이하; 김재봉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1면 이하; 김종호/김재일,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대한 연구, 193면 이하; 박용철,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 법전원의 입시학원화와 법전원 교육의 파행화, 47면 이하; 성중탁, 변호사시험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그 개선방안, 31면 이하; 조지만, 현행 법학교육체제 하에서 법학교육의 전반적 위기와 극복방향: 실무가 양성, 법학자 양성, 법학교양교육의 조화와 발전을 위하여, 9면 이하;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240면 이하 등 참조.

3) 같은 제안은 지원림, 변호사시험: 있어야 할 곳과 있는 곳, 89면.

4) 객관식 시험은 로스쿨 1학년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이에 대해 자세히는 홍영기, 변호사시험 개혁의 남은 기회, 193면 이하.

2. 변호사시험의 현재: 표준판례와의 연계

(1) 표준판례의 지정과 공유

자료제공형 시험을 곧바로 도입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에, 그리고 여러 사정 때문에 변호사시험을 통해 판례암기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 이제 시험에서 출제될 판례의 개수를 극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 시험에 대비하여 외워야 하는 판례를 세어보면 대략 만 이천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6] 이 가운데에는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것 이외에도 말단 실무적 판례, 개별 사실관계를 알아야만 결론이 이해되는 판례도 드물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7] 불과 얼마 전에 나온 새 판례 또는 지나치게 오래된 것이어서 지금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은 것까지 무분별하게 출제되기도 한다. 암기해야 하는 판례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수험생에게 판례의 단순한 결론만을 익힐 뿐, 그 논리를 분석하거나 비평하는 훈련을 할 겨를이 없다. 이 상황이 법률가의 실력 저하와 A.I.시대 속에서 법률 문화의 쇠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미 말하였다.

이에, 이른바 일정한 수의 '표준판례'를 선별하고 그 안에서만 변호사시험문제를 출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지금 과도기의 대안으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로스쿨 3년 기간 동안 배워야 할 판례의 개수를 미리 지정하고, 그것을 주된 대상으로 로스쿨 수업을 진행하며 바로 그 범위 안에서만 변호사시험문제를 출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중요성이 높은 리딩판례를 표준판례로 우선 확정하여 각 로스쿨의 교수와 모든 학생이 공유하고 변호사시험 문제지문이나 사례형·기록형 문제의 근거로 삼아 변호사시험을 출제한다면 로스쿨의 수업 또한 자연스럽게 그 판례들을 자료로 하여 진행될 수가 있다.

(2) 출제대상판례 제한의 효과: 교육의 정상화

1) 암기 부담 절감

표준판례만 출제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인식되면 곧바로 학생들의 암기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과 같은 비인간적인 로스쿨 환경에서 이것만으로도 이미 중대한 변화이다. 표준판례로 선정된 판례의 개수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미 1학년 때에 범위 안에 놓인 판례는 대체로 전부 익힐 수가 있을 것이다. 교수들 또한 무엇이 출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무작정 가르쳐야 하는 예측불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 확정된 대상을 놓고 지도하게 되어 수업 효율성도 높아진다.

2) 양보다 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암기에만 쏟던 에너지를 깊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식의 공부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표준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 판례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절차에서 주장되었던 각 입장과 그에 따른 논거를 충분히

6)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248면.
7) 지원림, 변호사시험: 있어야 할 곳과 있는 곳, 71면.

이해·분석한 후에 배운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자발적으로 비평해 볼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판례를 둘러싼 여러 학설들의 우월성 판단 또한 그 바탕이 되는 이론들과 그것을 지탱하는 법원칙을 근거로 한 대화를 통해 가능해진다. 논증에 도움이 되는 학술논문 등을 읽으려는 의욕도 커질 것이다. 나아가 이와 대비되는 다른 판례사안도 함께 읽으면서 구별되는 쟁점을 발견하고, 관련된 여러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 더 합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논거를 찾는 방법을 배운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적 논증이 바뀌게 될 것까지 염두에 두어 응용적, 창의적 학습도 추가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법조인으로 활동할 때 주어진 사안을 해결하는 '리걸마인드'가 비로소 훈련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로스쿨 학생들의 시간, 노력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 수많은 판례에 시각을 흩뿌려 놓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자원의 낭비이다. 법학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통해 읽는 판례의 '양'이 아니라 의미가 분명한 판례학습의 '질'에 있는 것이다.

3) 교육와 시험준비의 일치

출제가능 판례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준비과정이 서로 다르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로스쿨은 외부로부터 '실무와 괴리된 교육', 내부 학생들로부터는 '변시준비와 무관한 수업'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게 반복된 일상이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것은 중간·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용도일 뿐이었다.

출제 범위를 표준판례로 제한하고 그 양을 최소화하면,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같은 대상을 놓고 이루어진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내용이 곧바로 시험준비이기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교육이나 수험서를 찾을 필요가 없어진 학생들이 로스쿨교육을 신뢰하게 될 것이므로 로스쿨 본래 취지인 '학교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한결 더 다가서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4) 교육의 표준화

학생 사이, 각 로스쿨 간 불합리한 편차도 줄어들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떤 수험서나 요약집을, 어느 학원강사를 선택하는지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로스쿨 입학 직전부터 알아야 한다는, 선배들이 전수해주거나 온라인에 전파된 소위 '법학의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인터넷 강의를 듣고 어떤 수험서를 선택해야 유리하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학생들이 보기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찍어서 암기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력이 곧 '수업의 질'이었기에 로스쿨과 교수의 교육수준도 그것으로부터 결정되었다.

표준판례가 지정되면 법전원마다 같은 자료를 놓고 교육하게 된다. 이제 로스쿨 각 과목의 '기본강의'에서는 -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등한히 했던 - 해당 법과목의 여러 이념과 원칙을 더욱 충실히 학습하도록 한 이후에, 표준판례를 예로 들어 그에 담겨 있는 주요 논증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 중점을 둘 수 있게 된다. 각 과목의 '연습'시간은 이미 숙지한 표준판례의 배경에 놓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유사사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구별되는 사례와의 차이를 익히며

논증방식을 심화하여 체득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이론과 실무에 익숙한 교수들이 모여 있는 각 로스쿨뿐이다. 이젠 로스쿨생들이 많은 양의 판례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암기하게 도와주는 외부 학원에 더 이상 관심을 둘 이유가 없다.

(3) '표준판례연구집' 개선의 필요성

법전원협의회도 같은 취지로 이미 유사한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20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전국 로스쿨의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이른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표준판례연구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지금 로스쿨학생들은 표준판례가 발표된 것과 무관하게 여전히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판례를 암기하고자 하며, 그 수십 배가 넘는 판례를 소개하는 수험서에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 과반의 학생은 표준판례가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변호사시험이 표준판례 안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8] 법전원협의회가 처음 '표준판례연구'시리즈를 기획하기 전, 발표자가 법전원협의회에 제안한 것은 '변호사시험의 판례는 오로지 표준판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할 것이었다.[9] 그러나 협의회는 표준판례집에 수록된 판례 범위에서 변호사시험이 출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을 뿐, 출제범위를 제한하는 데에 여러 저항이 있음을 드러내어 보여 왔다. 발표자의 전공인 형사법은 민법에 비할 때 주요판례의 개수 자체가 많지 않고, 의미가 큰 판례에 대한 전공교수 내 공통관심이 확인되고 있는 편이어서 출제범위와 표준판례집의 판례가 크게 상이한 것은 아니다.[10] 그러나 단지 그 범위 안에서 출제된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원래 목표했던 학생들의 부담경감과 기초교육 강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표준판례에서만 변호사시험을 출제하기 어려운 기존의 사정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에 앞서, 표준판례집 개정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제안만을 간략히 추가하고자 한다. 우선 소개된 판례의 숫자를 더욱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023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민법 930개, 형법총·각론 498개, 형사소송법은 416개, 헌법 331개 등, 선택법을 제외하고 3,593개가 실려 있다. 암기부담 면에서 표준판례가 없는 것에 비해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판례들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한 개수는 더욱 아니다. 더욱 심층적인 판례분석 교육의 효과를 살리려면 각 과목당 100여 개, 많아야 200개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 학생들에게 '중요한 판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선도적 판례(리딩판례)', 즉 주요 법률과 법원리가 현실에서 펼쳐 보이는 모습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판례를 앞에 놓고

8) 표준판례 개정판과 2024~25년도 변호사시험 출제 연계현황 파악 (시중 수험서 참고).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24.7%	28.95%	29.31%	30.11%	34.48%	41.46%	26.55%	44.78%	23.08%

9) 명순구/홍영기,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집, 2019, 51면; 박정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43면 이하 참조.

10) 이창현, 10년간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시험의 분석과 개선방안, 71면.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대상 판례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와 같은 목적에는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러면 판례의 선별방식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 표준판례집을 만들기 위해 로스쿨교수 25명이 '분야별로' 판례 선별을 나누어 맡았다. 그러다 보니 형법영역에서 현실에서 중요하지 않은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일수죄'의 판례와, 결정적으로 중요한 '횡령죄', '배임죄' 판례 개수가 비슷할 정도이다. 여러 교수가 법이론 측면에서나 사례의 빈도 면에서 선도적인 판례를 꼽고자 한다면, 각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를 일정 개수(예: 50개) 선정하도록 하여 많이 중복선정된 순서대로 리딩판례를 추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과목 진도별로 영역을 분할하여 반드시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게끔 하는 (무슨 의도에서 유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현행 출제지침의 폐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

3. 표준판례의 변호사시험 연계 방안

(1) 수험생의 신뢰

표준판례 선정의 효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판례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을 출제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 표준판례를 '존중하여',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출제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시험 개선의 의미를 살릴 수가 없다. 예외 없이 표준판례에서 출제된다는 데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어떤 판례가 더 출제될지 알 수 없는 수험생들로서 어차피 지금까지 그래왔듯 '출제가 가능한' 만 이천 개 판례를 암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수업과 수험준비와의 괴리가 결코 극복될 수 없다. 시중의 수험서처럼 '주요판례 선정'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표준판례의 제공'은 '시험범위의 제공'과 같은 뜻이 되어야만 한다.

(2) 출제대상 판례의 이원화: "표준판례" + "최신판례"

그렇지만 표준판례에서 변호사시험문제를 예외 없이 출제하려면 그것을 습득하고 시험을 치르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표준판례집을 매년 발간하면서도 그것이 적어도 변호사시험을 1년여 앞두고 각 로스쿨과 학생들에게 배포되어야만 할 것이다.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기가 어렵다면 각 과목당 '업데이트 판례' 몇 개를 추가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인데 그것 또한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출제대상을 이원화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표준판례'와 '최신판례'를 나누어, 기존 판례를 근거로 한 문제는 표준판례집 안에서만 출제하고, 최신판례는 표준판례집 이외에서 출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11] 표준판례를 통해 기초적인 해당 법과목의 법리를

11) '최신'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나 1년은 다소 짧고 3년으로 하면 표준판례를 제공하는 의의가 반감될 수 있어 2년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익히는 한편, 최신판례를 습득함으로써 법조의 흐름을 읽고 단순히 과거 소수 판례를 암기하는 데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다. 최신판례만으로도 이미 분량이 방대하기에, 이러한 방식이 수험생들의 공부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최신판례 가운데에 지엽적인 것을 배제하고 의의가 분명한 것에 출제를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과거와 같은 상황에 머물지는 않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적어도 "표준판례에서 벗어나는 과거 판례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신뢰가 생기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방법은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표준판례의 사실관계와 논증방식들을 철저히 습득한 상태에서 최신판례의 경향도 놓치지 않는, 절충적이지만 개선된 변호사시험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구체화방법: 연계표 작성

기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변호사시험을 반드시 표준판례 안에서만 출제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전원의 모든 교수들과 출제주체인 법무부를 향해 이해와 공감을 구하려는 계속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감안하면, 공감대가 두루 형성된 이후에 이를 시도하기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모든 변호사시험 출제위원들을 강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출제본부에게 그와 같은 권한도, 여력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되, 변호사시험을 출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를 다시 전달하여 출제위원들을 환기시키는 한편, '출제문제와 표준판례 간 연계율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표준판례 내 출제를 강권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 출제시에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선택형지문, 사례형·기록형 시험의 근거가 표준판례 또는 최신판례에 포함된 것인지를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다. 출제 이후에 연계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문제를 만드는 때에 이를 자료로 하였음을 체크하도록 권유하면 된다[연계율표의 예시는 발표문 맨 뒤에 수록].

연계표를 자발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것만으로 표준판례 내 출제를 강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직후에 연계성 정도를 검토하여 출제장에서 문제를 수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연계표를 염두에 두고 출제하도록 권고하는 것만으로도 연계율은 크게 높아질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표준판례 선정의 본래 의미는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4. 비판에 대해서

표준판례 선정과 그로부터 시험이 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1) 단순한 학습 편의?

표준판례 안에서만 문제를 출제한다면 로스쿨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표준판례 이면에 놓인 논거와 원리를 탐구하리라는 것은 그저 이상적인 기대일 뿐, 단지 '암기대상이 줄어든 것'으로만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형(= 객관식) 시험에서는 암기대상을 줄인 표면적인 효과는 곧바로 눈에 띄게 된다. 사례형·기록형 시험 또한 더 집중된 논점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글로 풀어 쓰는 선택형'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많은 논점이 나열되어 있고 그에 대한 판례의 결론만을 단순하게 서술하는 식의 시험형태였다면,[12] 특별히 중요한 판례를 대상으로 소수의 논점을 묻고 그에 대해 논증하고 서술하는 능력까지 함께 평가하는 시험으로 자연스럽게 변모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암기대상을 줄인 데에 그쳤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험형태가 이처럼 바뀐다고 하더라도 – 상대평가제도와 경쟁률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 학생들이 시험준비를 게을리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줄어든 논점에 대한 심화된 공부를 하도록 자연스럽게 바뀌어가게 된다.

간혹 '학생들이 쉽게만 공부하려 한다'는 우려를 들을 때마다 다소 의심스럽다. 그것이 단지 표면적인 암기가 아니라 체계적인 법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려는 의도라면 바람직할 것이지만, '암기할 판례의 분량을 더 많이', '더 구석에 있는 판례까지도 암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A.I.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고습관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부 학생들만 체계적인 학습을 할 뿐, 나머지는 더 간단한 암기에 만족할 것이라는 걱정에는 의미가 없지 않으나, 어차피 예나 지금이나 법학도의 분포는 그래왔음을 이야기해야겠다. 비록 일부 역량 있는 학생들이라도 수준 높은 법학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능력 고하를 불문하고 만 이천 여 개의 판례를 무작정 외우게 하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낫기 때문이다.

(2) 출제 및 채점의 어려움

출제와 채점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을 것이다. 선택형시험의 전 과목에서 수백 개 정도의 판례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매년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출제자로서 매해 비슷한 문제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인 것은 사실이다. 수험생들이 대부분 정답을 맞히게 된다면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그러나 바로 이로부터 출제대상 판례 제한의 먼 효과가 생긴다. 각 시험제도의 의미가 함께 변화될 수 있다. 선택형시험의 의의는 일부 극히 나태한 학생들만을 가려내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축소된다. 추후에는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수험생들만을 선별하는 P/F 채점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단순암기형 선택형시험으로 변별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대부분 교수들의 비판적인 생각을, 이를 통해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선택형시험의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사례형·기록형시험의 중요성은 커진다. 의의가 크지 않은

12) 이에 대한 비판은 박정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47면.

것을 포함, 여러 판례의 결론을 모두 알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쟁점을 나열하고 그 암기여부에 따라 채점하는 지금의 방식은 유지될 수 없다. 판례의 간략한 결론이 아니라 그것이 도출되기까지 주장되었던 논거들과 결론에 이르는 논리, 또는 그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까지 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만 한다. 표준판례와 사실관계가 달라 그 결론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면 판례와 학설을 이용하되 관건과 쟁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아울러 묻는 것이다.

채점하는 작업도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판례를 잘 요약해 받아 적었는지를 보려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주장과 그에 합당한 논거들 및 그 반론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만 한다. 수험생이 생각해낸 사안풀이 경로가 전혀 잘못 파악한 쟁점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논리비약이나 결여가 있지 않은지를 함께 본다. 독창적인 논거를 이용하였다면 추가적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모범답안'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지만 채점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뛰어난 인재를 발견한다는 생각보다 법조인으로서 논리력이 크게 부족한 수험생을 배제한다는 목적으로 살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채점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기준만을 놓고서도 충분히 변별해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3) 외부 인식

제한된 판례만을 학습한다는 것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인식도 문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의 실력을 문제삼기 좋아하는 일부 인사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우려도 있다.

우선 로스쿨 교수들 안에서 지금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암기중심에서 사고중심으로 교육의 대변환이 있어야 함을 다 같이 인식한다면 과거와 달리 여러 단순한 비판에 쉽게 흔들릴 수 없다. 변화하게 될 로스쿨 교육의 방향전환에 대해 선제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변호사시험이 단순히 수많은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미래 사회는 물론 현재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에 상응한 법률가를 도저히 양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회구성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일 것으로 생각한다. 적어도 주변에서 만나는 법조인들은 방대한 판례를 무작정 외우는 것이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노동임을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4) 부족한 대책이라는 비판

법학교육의 현재상황이 암담하고 그로부터 로스쿨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험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나아지겠느냐, 특히 표준판례에서 문제를 내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식의 반론도 많을 것이다. 변호사시험이 암기 중심이 된 과정과 배경, 시험합격률의 문제, 기존 법조인과 일반인의 인식, 법무부와 변협, 법전원협의회 등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등등 복잡한 문제상황이 산적해 있음을 아는 사람일수록 이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 앞에서 무엇을 해결해가야 하는지를 가늠해보는 것으

로 지난 십수 년을 보냈다. 풀어내야 할 사항이 너무도 많아 넋 놓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현실적인 개선이 감행되었던 일은 CBT 시험으로 바꾼 단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자격시험화', '합격률 재고'와 같은 주제는 특히 변호사 취업시장이 암담해진 현실에서 각종 주체들의 반응에 부딪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에 표준판례 내 출제는 법개정은 물론 출제주체인 법무부의 승인조차 필요하지 않다. 출제를 맡은 교수 스스로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범위 안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작은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와 같은 노력이 1, 2년간 지속되고 표준판례 학습의 위력이 학생들 사이에 체감된다면 법학교육은 단순 암기 분량 늘리기로부터 멀찍이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당장 해낼 수 있는 것,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부터 하나씩 풀어가야만 할 실타래가 눈앞에 놓여 있다. 비록 작아 보이더라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런데 막상 실천해 보면 그 효과가 결코 작지만은 않을 것이다.

Ⅲ 맺음말

암기 위주의 변호사시험준비 과정은 전국 모든 로스쿨 학생들을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학교 교육을 왜곡시켜 법전원 내 구성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요소이다. 판례의 결론을 많이 암기하는 사람이 유능한 법조인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암기된 판례의 양으로 승부를 가리는 상황에서 이제 속히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공부방법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률가양성교육 자체를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비로소 우수한 법조인이 양산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 자체와 법률문화 전반에 곧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준판례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변호사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이 글의 주장 또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번에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노력 또한 과거의 그것처럼 아무 효과도 없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와도 다르다. 일선 법률가, 법학교수는 물론, 배우는 학생들조차 A.I.시대에 기존의 법학교육이 관성적으로 진행되어서는 그야말로 '법조계 자체가 황폐해질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번 우리의 제안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관철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인용문헌

강명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84집, 2024
김성룡, 로스쿨에서 형사법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외법논집 42-3, 2018
김태명,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방안 - 형사법 시험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3-1, 2012
김종호/김재일,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7-1, 2023
명순구/홍영기,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집, 2019
박용철,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 법전원의 입시학원화와 법전원 교육의 파행화, 법과 사회 76호, 2024
박정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고려법학 95, 2019
성중탁, 변호사시험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그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63, 2018
양선숙, 로스쿨에서의 전문법률과목교육과 학점이수제의 도입 - 도산법 사례를 통해서 본 선택과목시험의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35-1, 2024
연세대·고려대 법학연구원,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토론문, 고려법학 95, 2019
이승준,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과 과제 - 형사법에 착안하여, 법과 정책, 24-3, 2018
조지만, 현행 법학교육체제 하에서 법학교육의 전반적 위기와 극복방향: 실무가 양성, 법학자 양성, 법학교양교육의 조화와 발전을 위하여, 법과 사회 76호, 2024
지원림, 변호사시험: 있어야 할 곳과 있는 곳, 법과 사회 76호, 2024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36-1, 2017
홍영기, 변호사시험 개혁의 남은 기회: 리걸테크의 시대를 맞아, 법과사회 77, 2024

2026년 1차 모의고사 표준판례 연계율표(공법)[13)]

1. 선택형

* 리딩케이스(~2024.12.31.) 연계율 90~100%, 최신판례 포함 전체 연계율 80%

: 발문/자료 - 비표준판례를 사용금지, 0% 또는 100% 중 하나로 판단함

문제	발문/자료	①	②	③	④	⑤	연계율
1	-	85누303	2009두7967	2018두44302	2004추10	2019두52799	100
2	2013두26552	-	-	-	-	-	100
3	-	2016다201395	2016두60591	최신판례 2024두34122	90누5825	97도3121	80
4	최신판례 2023두61349	-	-	-	-	-	0
5							100
6	-	2008두167	2010두14954	99다37382	2017두34087	비표준판례 2010두13340	80
7							80
8							100
9							60
10							100
11							100
12							60
13							100
14							100
15							100
16							…
…							…
…							…
38							…
39							…
40							…
리딩케이스(~2024.12.31.) 연계율**				170 / 182			93.4
최신판례 포함 전체 연계율 (문항별 연계율 총합 ÷ 40)							82

** ((최신판례 제외 표준판례 문항수 - 비표준판례 문항수) ÷ 최신판례 제외 표준판례 문항수) × 100

13) 충남대 서보국 교수가 만든 연계표임.

2. 사례형

* 최신판례 포함 전체 연계율 70%(표준판례의 내용만으로 70% 득점 가능한 정도)

문제	문항(배점)	판례번호	연계율(배점 대비)
사례1 (100)	1-1(40)	1-1:	75
	1-2(20)	1-2:	
	1-3(40)	1-3:	
사례2 (100)	2-1(25)	2-1:	70
	2-2(35)	2-2:	
	2-3(20)	2-3:	
	2-4(20)	2-4:	
전체 연계율 (배점별 연계율 총합)			72.5 (37.5+35)

3. 기록형

* 최신판례 포함 전체 연계율 70%(표준판례의 내용만으로 70% 득점 가능한 정도)

문제	배점	판례번호	연계율(배점 대비)
작성서류1	50	2009두2825, 2007두16127, 2006두2954, 96누14661, 2012두28728(비표준판례), 2010두14954, 2015두41579, 2017두38874	80
작성서류2	20	93누6164, 2022두0000(최신판례)	50
작성서류3	30	2007두18154, 2021두0000(최신판례)	60
전체 연계율 (배점별 연계율 총합)			68 (40+10+18)

확인위원 및 출제위원(장) 서명

구분	문제1	문제2	문제3	문제4	문제5	문제6	문제7	문제8
성명								
서명								

구분	문제9	문제10	문제11	...	문제40	위원1	위원2	위원장
성명								
서명								

토론문

서종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녕하십니까!

먼저 홍영기 교수님의 훌륭한 발제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인 저는 민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형법의 표준판례와 법학교육 개선에 대한 홍영기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홍 교수님의 발제에 담고 있는 문제의식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교수, 학생, 실무자 모두 대부분은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의 로스쿨 교육은 로스쿨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향하지 않았던, 오히려 지양했던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됩니다.

1. 판례실증주의에 대한 우려

판례의 요지 및 결론만을 암기하는 지금의 교육은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에서도 본인이 알고 있는 선례와 연결하여 결론을 내려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법관이 심리적 지적 불안 때문에 당면한 사안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본인이 사용하기에 좋은 판례를 억지로 끌어와 해당 사건에 덮어씌우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의 뒤에 숨어 본인에게 필요한 사실관계만을 인정하거나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기도 하는 소위 '판례실증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솔직히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관의 번뇌에서 나온 악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판례실증주의는 로스쿨 학생의 사례형 문제의 답안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제자가 법 조항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의도하였는데도 학생들의 답안은 "우리 판례는 ..... 따라서 ..... 인용된다."라는 식의 답안을 구성합니다. 성문법 국가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판례에 대한 암기에 치중하다 보니 법조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판례속에서 발췌된 조문의 일부만을 피상적으로 읽고 판례의 요지와 결론에 대한 암기에 집중하는 것을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수가 판례가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학생 스스로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라는 문제를 출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판례위주의 암기방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 창의성 교육

법과대학에서 부과된 과제는 대체로 판례를 찾아내거나 이를 주어진 사례에 응용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보다는 정답과 같은 결과를 중시하게 됩니다. 법학교육에서

일정한 형식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학교육자는 기존의 해법을 숙지시키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가식의 정답을 습득시키는 것이 법학교육의 불가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에게 종전의 해법을 답습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하나의 민사판례를 공부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관련 법리(신탁법, 민사집행법, 통합도산법, 민사특별법 등)에 대한 이해, 하급심 법원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실관계가 변형되는 경우에 판결이 변경될 것인지, 판결과 다른 결론 및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원고측 또는 피고측 변호사였다면 어떻게 접근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그 과정의 사유가 있어야 학생들은 창의성을 함양해서 사유하는 법률가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심리학자 Maslow가 말했듯이, 가진 도구가 망치뿐인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도구, 즉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창의성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은 개인의 특질들과 사고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로스쿨 교육이 다양한 학부의 전공자를 선발하는 것도 그들의 특질의 발현이 법조계에 새로운 자극이 되길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의성을 유발하거나 향상시키는 방안은 무수히 많은 판례를 더 많이 암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동원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의 판례를 분석하고 자기만의 논리적인 사고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3. 표준판례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

창의적 사고도 탄탄한 전공지식과 기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선례로서 가치를 가지는 표준판례의 공부는 중요합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대법관 전원이 치열하게 논의하여 결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는 과연 달리 주장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일까 하는 위축된 마음이 일기도 하며 곰곰이 읽고 생각하다 보면 판례도 이전의 선행판결에 의해 확립된 선례를 너무 답습하는데 익숙해 있어 새로운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기도 하고, 또는 변론 당사자들이 제시한 법리나 조문을 깊은 성찰없이 받아들여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가끔 심도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게다가 각종 보충의견까지 가세하여 벌어지는 논쟁들을 읽으면서 수준높은 논리의 향연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느끼면 그 즐거움을 학생들과도 공유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판결들을 표준판례로 선정하여 수업시간에 교수는 표준판례를 기초로 하여 문제를 항상 열어 둠으로써 학생들에게 지적 자극을 주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조문이나 법원칙을 물신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지 말고, 역사적이고 비교법적인 관점을 추가하여 유연하게 사고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창의적 교수법을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엽적인 판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표준판례에 집중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요구는 표준판례를 통한 공부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반화의 관심이고,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개별화의 관심입니다. 법률가는 직면하는 사안을 기존의 선례와 다르게 취급할 것인지, 같게 취급할 것인지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안이 선례들과 동질적이라고 판단한다면 해석자는 선례를 유지할 것이고 이는 일반화의 관점에서 해명됩니다. 반면 선례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때에는 선례를 폐기(overruling)하고, 선례가 합당하지만 현재 사안과의 관련성이 떨어질 때에는 이른바 구별(distinguishing)을 통해 선례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AI 시대에 법조인의 소임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AI 시대에 법률가가 설 자리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회가 다변화된 세상의 법적 분쟁에서는 어떠한 사례에 직면하여 선례나 전형적인 예상 답안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하는 경우의 문제 상황(problem situation)이 항상 발생할 것입니다(소위 하드 케이스, hard cases). 문제 상황에서 새롭고 적합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움의 실체에 새로움의 형식을 부여해야 함에도 오로지 판례의 답습을 추구하는 법률가의 행태는 법의 병리적 현상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가들의 형식주의적 태도는 '변화하는 법현실에 대한 공포와 도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AI 시대에는 문제 상황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과 적절한 수사에 기초한 논증을 제시하는 것이 창의적인 법률가의 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적중하는 통찰력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교육을 통해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홍 교수님께서 발제문을 통해 주장하시는 내용이 실천되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 출발선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5. 변호사 시험의 변화

변호사 시험이 최소한 표준판례로 출제 범위를 제한하고, 사례형에서도 "쟁점의 양"이 아니라 "논증의 질"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로스쿨 내에서의 표준판례에 대한 교육을 전제로 하는 창의성 교육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쿨에서는 표준판례와 창의성 교육을 지향하지만 변호사 시험이 이와 역행한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표준판례교육은 "잡을 수 없는 신기루(앞문 열고 뒷문 닫는 격)"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 시험이 다른 방향을 지향하면 로스쿨 수업과 별개로 학생들은 사설학원 등에서 수험법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중고의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이중고의 위험을 학생들에게 떠안기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의 토론을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홍 교수님의 발제에 감사드리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토론문

김정연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로스쿨에서 상법을 가르치는 교원이자 로스쿨 졸업생으로서 홍영기 교수님의 문제제기에 기본적으로 깊이 공감한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싶습니다. 발표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사실상 "판례 결론을 얼마나 많이 암기했는가"를 겨루는 시험이 되어 있고, 이는 A.I.와 리걸테크가 전제하는 환경에서는 교육적으로도, 직업윤리적으로도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본 토론문에서는 상법 영역에서 표준판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과 평가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1) 표준판례 중심 교육·평가에 대한 법무부·기존 법조계의 주저와 그 한계, 2)상법 내부의 영역별 비대칭성, 특히 회사법·어음수표법·상법총칙·보험법 사이의 현실과 표준판례 배분의 문제, 3)'리딩 케이스를 사실관계까지 읽고 찬반 논증을 해보는 교육'의 필요성과, 현행 시험체계가 이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는지 정도입니다.

첫째, 표준판례 중심 교육·평가에 대한 저항과 그 한계입니다. 발표문은 이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표준판례 연구집을 여러 차례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 존재조차 잘 모르거나, 여전히 "만 1만 2천 개의 판례를 외워야 한다"고 느끼는 핵심 이유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시험이 실제로는 표준판례 범위에 제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제위원들이 표준판례 밖의 최신·지엽 판례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법무부 역시 "표준판례 안에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수험생과 로스쿨 교수진 누구도 표준판례를 "시험 범위"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 권한을 누가 쥐고 있는가라는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시험 출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체는 결국 법무부와 출제경험이 축적된 기존 법조계입니다. 이들은 "출제 재량의 축소", "변별력 저하", "실무에 필요한 세부 판례의 반영 부족" 등을 이유로, 표준판례 중심 출제를 제도적으로 묶어두는 데 상당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발제문에 인용된 출제위원장의 인터뷰에서 보이듯, 법무부가 매년 "협소·지엽적 최신판례는 지양해 달라"는 권고를 하면서도, 실제 출제는 여전히 출제위원의 재량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 교수들만 "표준판례 중심 교육·평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실상 수험·출제 권력을 쥔 법무부와 기존 법조계의 협조 없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표준판례가

진정으로 교육의 기준이 되려면, “표준판례 = 시험범위”라는 제도적·절차적 연결이 명시되어야 하고,출제위원이 이를 준수했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공개하는 연계율 관리(연계표 작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발표문 말미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계표 작성 의무화는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의 영역별로 역시 법전원협의회, 법무부, 변협과의 협의 과정에서 “표준판례 내 출제율을 언제까지 얼마까지 끌어올릴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숫자를 함께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교육의 이상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구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법 분야에서는 우선 영역별 비중을 고려한 표준판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법 분야에서 이미 지적되었듯, 표준판례 선정 작업이 “분야별 할당”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현실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범죄와, 실무·이론 모두에서 핵심이 되는 범죄가 비슷한 숫자의 판례를 배분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안을 해하는 죄’와 ‘횡령·배임’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식의 결과가 그 예입니다. 상법에서도 매우 유사한 문제가 그대로 재현될 위험이 큽니다. 회사법은 상장회사 지배구조, 이사의 책임, M&A, 자본시장법과의 접점 등에서 매년 의미 있는 판례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리딩 케이스 선정”의 필요성과 효과가 분명합니다.

반면 어음·수표법은 이미 거래 현실에서 상당 부분 사장되었고, 새 판례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 판례 역시 오래된 상거래 관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오늘날 지급결제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총칙 역시 소멸시효와 같은 몇몇 쟁점에 판례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법·개별 특별법과 교차하여 논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출제지침은 회사법·어음수표·상총·보험을 일정 비율로 안배하여 반영할 것을 요구해 왔고, 표준판례 작업이 이 틀을 그대로 답습할 경우, 학생들에게 실무와 동떨어진 ‘균형’을 강요하는 결과가 됩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회사법은 리딩 케이스를 통해 법인격, 기관, 책임 구조, 자금 조달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어음·수표는 이제 상행위 일반, 금융·지급결제 법제의 역사적 기반으로서 핵심 개념과 구조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험과 표준판례가 “각 영역별로 최소 몇 개씩”을 요구하면, 실제로는 거래 현실에서 거의 만나지 않을 소수의 어음·수표 판례를 학생들에게 억지로 암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쓰임있는 법률가를 선발하고 기르는데 기여하는지 납득이 잘 안됩니다. 발표문에서 지적된 것처럼, 출제지침의 “진도별·영역별 골고루 출제” 원칙은 상법 영역에서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상법학계가 표준판례 선정 시 회사법에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어음·수표·상총·보험은 “핵심 개념을 보여주는 소수의 리딩 케이스”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역별 출제비중에 대한 논의가 우선입니다)

셋째, 리딩 케이스 학습을 수업에서 충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법 교육에서야말로 **“리딩 케이스를 사실관계부터 주문까지 직접 읽고, 원문을 바탕으로 찬·반 논증을 구성해 보는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의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서 결론만 외워서는 좋은 법률가가 될 수 없습니다. 지배구조, 자금조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험체계에서는 이런 과목이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심화 판례 분석 과목보다, 여전히 "판례 결론 요지만 빠르게 제공해주는 수험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형 시험 역시 "글로 쓰는 객관식"이라는 비판처럼, 가능한 많은 쟁점을 한 문제에 쑤셔 넣고, 판례 결론을 빠르게 나열하게 만드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는, 지엽·말단 판례를 가능한 많이 외워두는 것이 시험전략상 여전히 합리적이고,한 학기 내내 리딩 케이스를 심층 공부하는 과목은 학생에게는 큰 리스크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제문처럼 A.I. 시대에 "더 구석에 있는 판례까지 암기하도록 요구하는 사고방식"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최소한 표준판례로 출제 범위를 제한하고, 사례형에서도 "쟁점의 양"이 아니라 "논증의 질"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바뀌지 않는 한 리딩 케이스를 중심으로 한 상법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상법 영역에서 표준판례를 전제로 한 '판례연구·사례연구' 과목을 정규 커리큘럼에 두고, 그 과목에서 다루는 리딩 케이스는 변호사시험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시험 준비와 별개인 좋은 수업"이 아니라 "시험 준비이기도 한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수강을 결심할 것입니다.

주제발표 2

변호사시험 개선(안)과 실무적 법학교육 개선방안

■ **시험유형별 주제발표 :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선택과목 시험의 유·불리 문제 개선방안**

좌 장 **박경철** 원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자 **서보국**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이황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곽희경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제2부
2025. 11. 25

변호사시험제도 개정(안)과 실무적 법학교육 개선방향

서보국 교수
(법학박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023.12. 국거국 법전원장협의회 심포지움(부산)과 2024.03. 법전협 심포지움(서울) 발표 자료로 「법학연구」(충남대 법학연구소) 제35권 제3호 게재 논문과 제36권 제4호에 게재될 논문 등을 요약/보완하여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리.

목차

[별첨자료- 참고]
A -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6page)
B - 변호사시험법 선택과목제도 박균택 의원 개정안(4page)
C - 선택형 필기시험의 분리 실시를 통한 법학교육 개선 방안(29page)

I. 전문화과목(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 개선(A)
II. 박균택 국회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상정(B)
III. 필수과목 선택형 시험의 분리실시 필요(C)

I. 전문화과목(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 개선(A)

1. 전문화과목 변호사시험 제1회~제15회 응시자 현황

회수＼과목 (총응시자/합격율)	국제법 (비율)	국제거래법 (비율)	노동법 (비율)	조세법 (비율)	지적 재산권법 (비율)	경제법 (비율)	환경법 (비율)
1회 (1,665/87.1)	94	413	516 (30.9)	59	82	228	273
2회 (2,046/75.1)	60	804 (39.3)	405	45	88	285	359
3회 (2,292/67.6)	63	1,032 (45.0)	359	33	61	225	519
12회 (3,255/52.9)	382 (11.7)	1,599 (47.9)	138 (4.2)	71 (2.2)	103 (3.2)	258 (7.9)	744 (22.9)
13~15회 (3,290/53.1)	CBT시험으로 13회 졸업자/출원인원은 증가하였으나 선택과목간 선택비율은 12회와 유사함. 14~15회 변동 없음						

3

2. 전문화과목 강의를 맡은 로스쿨 전임교수 총원

연도(총원)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2012(233)	50	25	33	31	39	28	27
2019(213)	39	27	30	26	38	26	27
2024(191)	36	22	26	24	35	24	24

- **233명(2012년) → 213명(2019년 : 9% 감소) → 191명(2024년: '12년 대비 19% 감소)**
- **전문화과목 전담 전임교수 : 192명(2012년) → 140명(2024년 : 28% 감소)**

- **로스쿨에서 신규임용 계획 없음 : 2029년까지 4년 내 정년퇴직 후 충원 X**

  : 국제법(2), 국제거래법(6), 노동법(3), 조세법(7), 경제법(5), 환경법(6)의 경우 2012년 이후 퇴직 공석 충원하지 않음

3. 전문화과목 부실화 개선방안 [법률개정이 어려운 경우]

① 학교별 학칙개정을 통한 개선방안(1단계)

- 전문화과목 학점이수를 졸업요건으로 규정(연세대학교 로스쿨)
- 국제법(비교법) / 기초법 / 과학기술법(의료법) / 사회법 및 경제법(조세법)

② 로스쿨평가기준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2단계)

- 전문화과목, 기초과목(외국법 포함):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P/F)로 전환

③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변호사시험 점수 조정(3단계)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4] "...,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10%로 변경

II. 박균택 국회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상정(B)

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9.24.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생 략)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② ----------논술형 필기시험(제9조제1항 시험(제9조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한 시험은 제외한다)-다)----------. ------각 과목(제9항제1항제4호의 과목은 호의 과목은 제외한다) 중---------- ----------.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9조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한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은 각각 합격 여부----------.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제9조제1 ----------제9조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한 시험과 법조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각각 필요한 점수----------

6

III. 필수과목 선택형 시험의 분리실시 필요(C)

1. 선택형 필기시험의 진급시험화로 변경할 필요성

1. 변호사시험(5일) 1회에 선택형(객관식)과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필기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부담
2.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의 문제점
3. 종합적 응용능력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이해를 위한 학습시간 부족

7

2. 변호사시험법의 개정 없이 가능한 개선방안

(1) 변호사시험법상 법률의 개정 없이 객관식 시험의 분리는 불가능함

(2) 대안으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환산비율의 조정을 통한 객관식 시험의 비중을 낮출 수 있음

(3)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3]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 → 600퍼센트로 변경

3.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변호사시험에서 객관식 시험 분리
: 2학년으로의 전국적 진급시험으로 실시함

1 안	법조윤리시험일(7월)에 3학년 대상 객관식 실시 : 응시횟수의 기산점 주의
2 안	변호사시험 기간에 2학년 대상 객관식 실시 : 학년유급에 따른 실익이 부족함
3 안	변호사시험 기간에 1학년 대상 객관식 실시 : 객관식 시험범위 조정 및 5탈자 조기 예방

9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시험 개선(안)과 실무적 법학교육 개선방안*

서보국**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론

변호사시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선택과목'[1] 또는 '전문화과목'으로 줄여서 통용되고 있다. 문제유형 중 하나인 객관식 '선택형'과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하에서는 '전문화과목'으로 줄여서 사용한다.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로스쿨의 출범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채로 점점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문화과목을 통한 법학교육의 전문화(특성화)라는 의미는 사라진 채 오로지 변호사시험 합격에의 유·불리가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점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9월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에서 강명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빅3'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 제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라고 밝힌 바와 같이 시험제도와 교육과정 모두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로스쿨 입시에서도 학교별 전문화(특성화)를 자기소개서에 반영하여 서술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학교나 지원자 모두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전문화과목의 운용 현황과 로스쿨 특성화 현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과 실현가능한 법령개정안을 주장한다.

■ 투고일자 : 2024.08.07. 심사종료일자 : 2024.08.19. 게재확정일자 : 2024.08.28.

* 본 논문은 2023.12.19. 부산에서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주관 '2023 로스쿨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제도 개선방안'으로 발표한 내용과 2024.3.29. 서울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2024년 법전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으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1) '선택과목'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서 법률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Ⅱ 전문화과목의 운용 현황

1.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응시자 현황과 '빅3' 쏠림 현상

〈표 1〉 전문화과목 변호사시험 제1회~제13회 응시자 현황

회수＼과목 (총응시자/합격율)	국제법 (비율)	국제 거래법 (비율)	노동법 (비율)	조세법 (비율)	지적 재산권법 (비율)	경제법 (비율)	환경법 (비율)
1회 (1,665/87.1)	94	413	516 (30.9)	59	82	228	273
2회 (2,046/75.1)	60	804 (39.3)	405	45	88	285	359
3회 (2,292/67.6)	63	1,032 (45.0)	359	33	61	225	519
4회 (2,561/61.1)	64	1,116 (43.5)	319	49	52	192	769
5회 (2,864/55.2)	95	1,240 (43.3)	405	57	73	199	795
6회 (3,110/51.4)	181	1,397 (44.9)	439	71	80	270	672
7회 (3,240/49.4)	241	1,404 (43.3)	415	81	95	309	695
8회 (3,330/50.8)	236	1,493 (43.2)	334	108	114	378	721
9회 (3,316/53.3)	303	1,224 (36.9)	242	99	115	427	906
10회 (3,156/54.1)	298	1,147 (36.3)	203	103	121	386	898
11회 (3,197/53.6)	348	1,291 (40.4)	169	87	98	336	868
12회 (3,255/52.9)	382 (11.7)	1,599 (47.9)	138 (4.2)	71 (2.2)	103 (3.2)	258 (7.9)	744 (22.9)
13회 (3,290/53.1)	CBT시험으로 13회 졸업자/출원인원은 증가하였으나 선택과목간 선택비율은 12회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위 〈표 1〉은 2023년 9월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의 발표자료에서 발췌하였음. 12회 음영처리 과목은 이른바 82%의 응시생이 몰리고 있는 '빅3' 과목임)

앞 〈표 1〉에서 알 수 있는 응시생들의 선택기준은 수험부담이 낮고 조정점수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2회는 선택과목의 유·불리를 응시생들이 인식하지 못한 데다가 전체 합격률도 70%가 넘었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심하지 않았고, 또한 로스쿨 출범 당시 취지에 맞게 강의 개설도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수강한 과목을 바탕으로 선택과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합격자 누적으로 인해 시험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재학생들에게도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면서, 전문화과목에 대한 수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따라서 단기특강으로 시험준비가 가능하면서도 조정점수의 계산에 불리하지 않은 과목으로 쏠림현상이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변호사시험 필수과목(민사법/형사법/공법)의 부담이 높아지게 되니[2] 그 반작용으로 전문화과목은 최소한의 부담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전문자격사(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인 수험생 또는 전문화과목을 이미 공부한 로스쿨 재학생들로 인해 조정점수를 계산했을 때 응시생의 수가 적은 과목의 경우에 원점수보다 조정점수가 더 낮아지는 위험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전문화과목 조정점수에 있어서 노동법(노무사), 지적재산권법(변리사), 조세법(공인회계사, 세무사) 과목은 선택할 유인이 거의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현재 응시생 중 앞의 3과목에 대한 선택은 각 2~5%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로는 더 이상 개선될 여지는 없으며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2. 전문화과목 전임교수의 현황과 감소추세

아래의 〈표 2〉는 25개 로스쿨의 전문화과목 전임교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학교별 1번째 칸은 2012년, 2번째 칸은 2019년, 3번째 칸은 2024년을 기준으로 파악된 자료를 정리하였다. 2012년은 법학교수회 수첩의 전임교수 전공소개를 바탕으로, 2019년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수첩의 전임교수 전공소개를 바탕으로 정리하였고, 2024년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임교수 전공소개 및 최근 개설강좌 등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이다.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임용 당시의 전공이나 현재 연구하고 있는 전공 또는 강의개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필수과목에 대한 시험준비 부담과 3년의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손종학,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과 법학시장",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62면 이하 참조.

〈표 2〉 전문화과목 강의를 맡은 로스쿨 전임교수의 최근 12년간 변화

학교＼과목 (특성화)	국제법	국제 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강원대 (환경)	김한택	홍석모	전형배*	김석환	정진근	한만주	박태현
	오시진		김희성		정진근 신동룡	이혁*	박태현 함태성 박시원
건국대 (부동산)	박병도	X	조용만	김영우	정연덕	정해방	이계수*
				X		X	
경북대 (IT)	김민서 채형복	정형진	윤진기 이달휴 문무기	이동식*	배대헌 최승재	윤진기 신영수	김창조*
			이달휴 문무기		배대헌 차상육	신영수	
경희대 (글로벌기업)	이영준 최승환	X	강희원	이준규 김두형 황남석*	X	정완	박균성* 전경운*
	최승환			김두형 황남석*			전경운*
	백범석		한권탁				
고려대 (GLP(국제))	강병근 박기갑 박노형 이재형	김정호* 신창섭	하경효* 박종희 박지순	신호영 박종수*	안효질 조영선	유진희* 이황	김연태* 이희정*
	강병근 이재형 조수정	신창섭	박종희 박지순			이황	
동아대 (국제상거래)	전순신 심영규	김용의 최성수	송강직	X	이점인* 최상필	김영호*	김세규* 최우용*
	심영규	김용의 최성수 신충일			최상필	X	최우용*
		최성수 신충일		노미리*			X
부산대 (금융·해운통상)	박배근 박찬호	이세인* 손태우*	권혁	이정란	계승균 조현래	정대근* 주진열	이기춘*
					계승균 강명수		
					강명수	주진열	
서강대 (기업(금융))	오병선	왕상한*	김재훈	김영심	박준우	홍대식	이은기*
	X		심재진	X			X

학교＼과목 (특성화)	국제법	국제 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서울대 (국제, 공익·인권, 기업금융)	정인섭 장승화 이근관 Folz	석광현	이철수	이창희 윤지현	정상조 박준석	권오승 이봉의	조홍식
	장승화 이근관 이재민					이봉의 임용	조홍식 허성욱
	장승화 이근관 이재민 원유민	이종혁	최석환				
서울시립대 (조세)	김대원 이창위	강정혜*	최창귀 노상헌	김완석* 박훈* 이재호	전민기* 구대환	X	X
			노상헌	이재호 양인준*	구대환		
				양인준* 김범준	X	박세환*	
성균관대 (기업)	나인균 성재호	남궁주현* 장준혁	김홍영	이전오* 이준봉	정차호	정호열*	김형성*
	성재호				정차호 이해완	정호열* 이선희*	강현호*
	성재호 이길원			이준봉		이선희* 손동환	
아주대 (중소기업)	소병천	윤성승*	이승길	최원	강헌*	오승한	소병천*
					강헌* 한지영*		
연세대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즈니스, 의료·과학기술)	김대순 김준기* 박덕영*	안강현*	이상윤	박정우 이중교	나종갑 남형두	신현윤*	X
	김준기* 박덕영*					신현윤* 최난설헌	
	박덕영* 이기범		권오성			최난설헌	홍강훈*
영남대 (공익·인권)	이환규 이용호	X	조임영	최성근*	이동형*	심재한*	김현준*
		권종걸					
	이용호	이성원*	X				
원광대 (의·생명과학)	김성원	이상진	이희성	윤현석	정태호	윤현석*	유권홍
		최영란			X		
	X	김희철*	X				X

학교＼과목 (특성화)	국제법	국제 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이화여대 (생명의료, 젠더)	최원목 김영석	김인호*	이승욱 박귀천	옥무석* 한만수*	전효숙* 신승남*	정재훈*	석인선*
				옥무석*	신승남* 이원복*		
				임재혁*	이원복*		X
인하대 (물류, 지적재산)	김현수 이석우 정찬모	이경규*	김인재	김의석* 김영순*	이경규* 이수미 홍승기*	손영화*	채영근*
		김천수 김린*			이경규 이수미 홍승기* 김원오		
	이석우 정찬모	X	김린*				
전남대 (공익·인권)	장신	신창선*	조상균	김재승	김원준 김정완	신창선*	정훈*
	장신 최혜선	최혜선*			X	장윤순	
	최혜선			X	류시원		
전북대 (동북아)	배정생 이세련	송양호*	김영문 김성진	한상국	최동배	박수영*	유진식*
			김성진	X			
제주대 (국제)	김부찬 김여선	오수용*	고호성*	X	X	고호성*	한삼인*
	김여선				문건영*		김은주*
	김여선 최지현	오수용* 조은희*	오대영			박준선*	
중앙대 (문화)	제성호 이성덕 박원석	정홍식	유성재	김성균	이규호	조성국	이상돈
	이성덕						김중권*
충남대 (지적재산)	이재곤 이길원	X	김소영	서보국*	최형구 육소영 김동준 이철남	X	최인호*
	이재곤						
	도경옥		김기선		육소영 김동준 이철남		
충북대 (과학기술)	이영진	윤남순	노병호	X	윤종민 신혜은	이동원	최선웅*
	X	X	김태현				이비안*
한국외대 (국제)	이장희	박영복*	이정	X	X	김동훈*	최승필*
	조정현	X	X			X	

학교＼과목 (특성화)	국제법	국제 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한양대 (공익인권 및 거버넌스, 지식문화 및 과학기술)	이재민 최태현 Reid	김선국	박수근 강성태	오윤	윤선희 김병일 박성호	김차동* 이호영	김홍균
	최태현	이종혁					
	김성원	이주연*	강성태 고수현		김병일 박성호		윤혜선*

* 전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화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전임교수(공법/민사법/형사법/법조실무 전임교수가 전문화과목을 보조적으로 개설하는 경우 또는 복수의 전문화과목을 맡은 경우 등)

다음의 〈표 3〉은 위의 〈표 2〉를 바탕으로 25개 로스쿨의 전문화과목 전임교수 총원을 간단하게 연도별로 합산한 것이다.

〈표 3〉 전문화과목 강의를 맡은 로스쿨 전임교수 총원

연도(총원)	국제법	국제 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2012(233)	50	25	33	31	39	28	27
2019(213)	39	27	30	26	38	26	27
2024(191)	36	22	26	24	35	24	24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7개를 담당하는 전임교수의 총원은 2012년에는 233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213명으로 2012년 대비 9% 감소되었으며, 2024년 현재에는 191명으로 2012년 대비 19% 감소되었다. 위 〈표 2〉에서 별표로 표시된 전임교수의 경우 주로 필수과목(또는 실무과목)을 강의하면서 보조적으로 전문화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7개 전문화과목만 전담하는 전임교수는 2012년 192명에서 2024년 현재 140명 정도로 28%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사법과 형사법의 시험 비중이 늘어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전문화과목을 전담할 전임교수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법전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제법(2개 학교), 국제거래법(6개 학교), 노동법(3개 학교), 조세법(7개의 학교), 경제법(5개 학교), 환경법(6개 학교)의 경우 퇴직한 빈자리를 더 이상 채우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강생이 없어서 로스쿨에서 전문화과목이 폐강이 되기 때문이다.[3] 학부 교양과목이나 일반대학원 세미나과목으로 책임시수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면 굳이 로스쿨 전임교수로 채용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3)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미 백경희·장연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동아법학」 제84호, 2019, 284면 이하에서 지적하고 있다.

3. 전문화과목 수강생 감소와 폐강

로스쿨 출범 당시와 그 이후 몇 년간은 전문화과목이나 기초과목에서 수강생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자 전문화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학생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전임교수의 15주 정규강의를 원하지 않는 재학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문화과목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전문화과목의 기초이해에 필요한 여러 강의 중 1개 정도만 겨우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세법의 경우 조세법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법사례연습, 조세법판례연구 등이 개설될 수 있으나 3명 전후의 수강신청으로 폐강 여부가 학기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수험생이 가장 많은 국제거래법의 경우에도 아이러니하게 정규강의(1학기 15주)보다는 시험대비용 단기특강으로 충분하다는 학생들의 입장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수험생이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국제거래법 전임교수의 총원은 2012년에 비해 계속 감소하는 중이다. 결론적으로 국제거래법의 경우 시험을 준비하는 부담은 7개 과목 중 가장 낮긴 하나 이로 인해 정규강의를 듣지 않아도 시험대비가 가능하므로 정규강의 수강생이 줄어들어서 전임교수를 충원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합격률 상위권 학교의 경우 또 다른 원인으로 전문화과목의 수강을 통해서 그 수강이력이 취업에 유리한 경우(경제법, 조세법 또는 지적재산권법)에 수강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으며,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률 상위권 학교에서도 수강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4] 전문화과목의 선택에 있어서 재미있는 내용 중 하나는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권 로스쿨에서 경제법 선택 수험생의 차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도 있었다. *"경제법의 경우에는 지방의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 과목을 어렵게 느끼고 있고, 로펌에서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위권 로스쿨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아서 자신들은 경쟁에서 치일 것이라 생각되어 선택이 꺼려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5]

따라서 몇 개의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전문화과목에 대한 강의 개설이나 수강생들의 참여가 개원 초기에 비해서 절반 이하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전문화과목 전임교수가 퇴임하는 경우에 그 결원을 보충하지 않거나 필수과목 전임교수에게 전문화과목의 강의를 보조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5년간 더 지속되고 더 심화된다면 전문화과목은 대부분 강사로 대체되거나 공법/민사법/형사법 전임교수에 의해 필요시에만 개설될 것이며, 점차 전문화과목을 주로 연구하는 전임교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변호사시험 등을 출제할 로스쿨 소속 전임교수를 찾기 힘들 것이다. 2024년 현재에도 전문화과목별 30명 전후의 전임교수들이 있지만 정년이 다가오거나 연구년으로 국내부재한 경우 등 출제를 사양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경험으로 모의고사 전문화과목 출제위원장직을 맡으면서 7개 과목의 출제위원 위촉을 부탁드려야 했을 때 과목별 10명 이하의 전임교수만 출제가 가능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이미 변호사시험에서는 법무부에서 로스쿨 소속 전임교수가 아닌 분들에게 위촉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만간 로스쿨에서 전문화과목에 대한 강의들이 점점 폐강되면서 시험대비 단기특강 등으로만 시험을 준비하고 출제도 더 이상 로스쿨 전임교수가 출제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로스쿨 시스템의 출범취지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

4)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박덕영,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 Ⅳ. [선택과목] 선택과목의 교육과 평가 –", 「고려법학」 제9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403면 이하에서 지적하고 있다.

5) 박덕영, 앞의 논문, 410면 이하, 영남대 심재한 교수의 토론 내용.

Ⅲ 전문화과목과 연계된 로스쿨 특성화의 부실화

1. 특성화 인증평가 기준의 변화

〈표 4〉 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 중 특성화 선택과목 수

4.4.2. 특성화

◎ (1) (특성화 교육의 선택과목 수) 특성화 교육과 관련하여 개설한 전공 선택과목의 수는 3년의 교육과정 중 5개 과목 이상이다. (3주기에서는 10개 과목 이상)

[4주기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하여 개설한 전공 선택과목은 특성화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야 하고, 3년의 교육과정 중 5개 과목 이상이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며, 개설하였으나 수강인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폐강된 과목은 개설된 것으로 인정함.

2023년 11월에 발표된 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에서 특성화 교육의 선택과목 수가 3년에 10개 과목 이상에서 5개 과목 이상으로 축소하였다. 이러한 기준의 완화는 25개 로스쿨에서 특성화 교육과 관련한 과목의 수강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영향으로 강의를 담당할 전임교수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한 책자인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에서 개별 항목인 '라. 특성화 분야 운영의 충실성'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6] 이 보고서의 특성화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 25개 로스쿨별 특성화 과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는 답변과 함께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60%가 넘었다. 특히 특성화 분야가 진로선택 및 취업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답변이 절반에 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할 만한 학교는 강원대(환경), 동아대(국제상거래), 서울시립대(조세), 이화여대(생명의료, 젠더) 및 충남대(지적재산)로서 졸업생 변호사의 응답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0~30% 정도 되었다. 그러나 2019년까지의 학교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2020년 이후 전임교수의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긍정적인 응답비율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 대한변호사협회,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 2021. 이 보고서는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등록변호사 및 변협 연수참가자 1,275명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703명 응답) 및 전국 변협 개업회원 23,662명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2,780명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 특성화 반영 학술지 평가기준과 현황

(1) 특성화 반영 학술지 인증평가 기준의 변화

〈표 5〉 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 중 특성화 반영 연구지

〈4주기 평가기준〉

3.2.2. 연구소 지원

○ (5) (연구소의 특성화 반영 연구지 발간) 특성화를 반영한 연구지를 연 1회 이상 정기발간하고 있다. (3주기에서는 ◎였으며, 연 2회 이상 발간이 기준)

[4주기 해석지침]

[평가요소 ○ (5) 관련]

① 연구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을 기준으로 함.

② 게재된 논문 등이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를 반영하고 있어야 함.

③ 평가기간의 연구지 발간 실적을 평균하여 평가함.

* 정량평가요소

2023년 11월에 발표된 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에서 연구소의 특성화 반영 연구지 발간이 1년에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기준의 완화는 25개 로스쿨에서 특성화 학술지를 담당할 전임교수와 연구소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2) 특성화 반영 학술지 현황

〈표 6〉 로스쿨별 특성화와 반영학술지 및 학생참여 여부 현황

학교＼분류	특성화	연구소 특성화반영 연구소(센터)	기존 학술지 특성화반영 학술지	학생참여
강원대	환경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강원법학(등재) 환경법과 정책(등재)	X X
건국대	부동산	법학연구소	일감법학(등재) 일감부동산법학(등재)	X X
경북대	IT	법학연구원 IT와 법연구소	법학논고(등재) IT와 법연구(등재)	X X
경희대	글로벌기업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등재) KHU글로벌기업법무 리뷰	X ○
고려대	Global Legal Practice (국제법무)	법학연구원	고려법학(등재) KULR(Westlaw) ABL(Westlaw)	X ○(편집위원) X
동아대	국제상거래	법학연구소	동아법학(등재) 국제거래와 법(등재)	X X
부산대	금융·해운통상	법학연구소	법학연구(등재) 해운통상법연구 금융법연구	X X X

학교＼분류	특성화	연구소 특성화반영 연구소(센터)	기존 학술지 특성화반영 학술지	학생참여
서강대	기업(금융)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등재) 법과기업연구(등재)	X X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 기술과법센터 공익산업법센터 경쟁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 아시아태평양 법학연구소	법학(등재) BFL Law&Technology(폐간) 경제규제와법(등재) 경쟁과법(폐간) 공익과 인권 Journal of Korean Law	X X X X X X X
서울시립대	조세	법학연구소	서울법학(등재) 조세와법(등재)	X X
성균관대	기업법무	법학연구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성균관법학(등재) 성균관과학기술법저널	X X
아주대	중소기업	법학연구소 중소기업 법무센터	아주법학(등재) 중소기업과법	X X
연세대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즈니스, 의료·과학기술	법학연구원 센터통합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글로벌비즈니스와법센터	법학연구(등재) 연세법현논총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폐간)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폐간) YGBL(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폐간)	X ○ (대학원 포함) ○ (대학원 포함)
영남대	공익·인권	법학연구소	영남법학(등재) 인권이론과 실천	X X
원광대	의·생명과학	법학연구소	원광법학(등재) 의생명과학과법(등재)	X X
이화여대	생명의료, 젠더	법학연구소 생명의료법연구소 젠더법학연구소	법학논집(등재) 생명윤리정책연구(등재) 이화젠더법학(등재)	X X X
인하대	물류, 지적재산	법학연구소	법학연구(등재) IP & Data 法	X X
전남대	공익·인권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법학논총(등재) 인권법평론(등재)	X X
전북대	동북아	법학연구소 동북아법연구소	법학연구(등재) 동북아법연구(등재)	X X
제주대	국제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연구센터	법과정책(등재) 국제법무(등재)	X X

학교＼분류	특성화	연구소 특성화반영 연구소(센터)	기존 학술지 특성화반영 학술지	학생참여
중앙대	문화	법학연구원	법학논문집(등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후보)	X X
충남대	지적재산	법학연구소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법학연구(등재) Law&IP(등재)	X X
충북대	과학기술	법학연구소	법학연구(등재) 과학기술과 법(등재)	X X
한국외대	국제	법학연구소	외법논집(등재) HUFS Global Law Review	X X
한양대	공익인권 및 거버넌스, 지식문화 및 과학기술	법학연구소	법학논총(등재) Hanyang Journal of Law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국제소송법무(폐간)	X X X X X
총계			33 (폐간 제외) (그 중 16개 등재후보 이상)	3

위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몇몇 합격률 상위권 학교에서는 연구소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전임교수의 확보 및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과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 및 졸업생들이 합류하여 내실 있는 연구지를 발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도는 총 33개의 특성화를 반영한 연구지에서 3개 정도에 불과하며, 그 3개 중에서도 로스쿨 학생들의 특성화 교육과 관련한 연구지는 1개에 그치고 있다. 16개 로스쿨은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연구소의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여 등재학술지로 승격시켰으나, 로스쿨 특성화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투고자는 대부분 타 대학교의 교수나 연구자들이며, 편집업무는 연구소의 추가적인 부담이 된 상황이다.

물론 로스쿨 학생들의 연구학술지인 '로리뷰' 또는 '법학평론' 등은 일반적인 학생학술지로서 25개 로스쿨 대부분 매년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7] 앞으로 특성화반영 학술지 발간 등의 기준은 학생학술지인 '로리뷰'를 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학생학술지 로리뷰와 로스쿨 교육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공영호, "미국 로스쿨 교수의 양성 방식 및 로스쿨 로리뷰에 관한 쟁점 – 한국의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시사점 –",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65면 이하 참조.

3. 전문화과목 부실화와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 갈등 문제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부실화와 관련되는 당면 문제는 변호사 이외의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와의 (공동)소송대리권 갈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8]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는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대리권 외에 조세소송대리권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리사의 경우 현재 허용되어 있는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대리권 외에 추가적으로 소송가액이 훨씬 높은 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도 주장하고 있다. 노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주장이 존재한다.

세무사의 조세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요구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9]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과 등록 및 명칭 사용에 대한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10] 이러한 문제점 외에 추가적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회계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확인 등 세무 업무 대리) 허용요구도 계속 대립하고 있다.[11]

그 외에 변호사 총원과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의 총원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변호사로서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변호사는 3만명 이상이긴 하나, 공인회계사 2만3천명 이상, 세무사 1만5천명 이상, 변리사 3천명 이상, 노무사 5천명 이상, 관세사 2천명 이상인 현재 상황에서 세무사회가 조세소송대리권 허용을 위해서 변리사·관세사 등과 공동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는 상황은 변호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 측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서 전문화과목의 부실화를 논거로 주장한다면 소송대리권 갈등에서 변호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8)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손종학,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과 법학시장",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84면 이하 참조.

9)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24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10) 이세진·임재범,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95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6.3.

11)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116 결정과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가 선고된 이후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마279, 2018헌마344(병합), 2020헌마9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각되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Ⅳ 전문화과목 부실화 개선방안

개선방안의 핵심은 변호사로 활동하기 전에 로스쿨에서 전문화과목에 대한 강의와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전문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졸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졸업요건에 일정한 전문화과목(기초과목 포함)을 이수하는 기준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공동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서 민사법/형사법/공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문화과목에 대한 평점체계를 P/F로 변경하여 상대평가로 인한 학점경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에서 전문화과목의 평가는 P/F로 변경하여 총점에는 합산되지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12] 물론 변호사시험에서 전문화과목을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작업이 진행된다면 실효적인 경과조치로 당분간은 학점이수와 변호사시험 중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

1. 졸업요건에 전문화과목(기초과목 포함) 이수 기준 도입(1단계)

졸업요건에 필수적인 학점이수로서 전문화과목(특성화과목 또는 기초과목을 포함)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상 제한이 없으며 각 학교별로 학칙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학칙으로 이러한 내용을 졸업요건에 규정하고 있다.[14] 내규에는 민사법/형사법/공법 이외의 과목을 4개의 그룹(국제법 및 비교법 분야, 기초법학 및 연계 분야, 의료법 및 과학기술법 분야, 사회법 및 경제법 분야)으로 분류하고(이러한 분류작업은 학교별로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임) 이 중에서 3과목 즉, 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학교(특히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로스쿨)에서는 자율적으로 졸업요건에 전문화과목 학점이수를 추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학점취득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전문화과목을 1개 이하로 수강한 변호사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동의 쟁점으로 논의하고 인증평가 기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각 학교별 학칙 개정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12) 참고문헌에서 확인된 기존 논의 사항을 요약해 보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대신 '전문화과목 학점이수제'와 '전문화과목 법전원 온라인 공동강의, 공동시험 및 공동평가(객관식 P/F, 1년 2회)'가 주장되고 있었다. 물론 생각해보면 현재 법전협 모의고사를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선택과목(전문화과목) 사례형을 변호사시험의 형태와 동일하게 25개 로스쿨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르고 있다. 따라서 공동시험과 공동평가는 현재에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국회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에서 언제 이루어질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올 해에도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하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13)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원장인 양선숙 교수는 학점이수제와 변호사시험제도의 병행안 보다는 단독의 학점이수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양선숙, "로스쿨에서의 전문법률과목교육과 학점이수제의 도입 – 도산법 사례를 통해서 본 선태과목시험의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5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474면 이하 참조.

1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개정 2023년 07월 27일) 제7조 제2항 2문 참조.

2. 전문화과목 수강시 P/F 평점제도 도입(2단계)

학생들이 본인의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도 로스쿨에서 수강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기특강으로 대체가능하다는 점과 상대평가로 인한 불이익이다. 후자의 경우 필수과목의 학습부담으로 인한 변호사시험 준비시간의 부족이라는 이유와 전문자격사 등과 경쟁해야 하는 전문화과목의 상대평가제도 때문이다. 특히 장학금 선발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전문화과목이나 기초과목에 흥미와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에서는 학생들의 수강기피라는 선택을 비난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화과목, 기초과목, 외국법 등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P/F)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인증평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15]

3. 변호사시험 또는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화과목의 P/F 평가 도입(3단계)

1단계와 2단계 만으로도 당면 문제인 전문화과목(기초과목 포함) 전임교수의 감소를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 또는 로스쿨 인증평가 기준에서 전문화과목 학점이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과조치로 시험과목도 그대로 유지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학점이수제에서 학점의 기준과 과목군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16]하여야 할 것이며, 2단계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시의적절할 것이다.

4. 3단계 도입에 필요한 법령개정안

먼저 아래의 〈표 7〉에서 전문화과목에 대한 변호사시험법 관련 규정을 보면 법률의 개정 없이 전문화과목을 폐지할 수 없다. 시험과목에서 전문화과목(선택과목)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법 제9조 제4항(정확하게 제4항은 전문화과목의 종류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나 체계적 해석에 따라 시험과목에서 전문화과목 자체를 폐지하는 것 또한 제4항이 적용됨)에 따라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여러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과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인해 3단계 도입의 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15) 전문화과목 정규강의를 절대평가나 P/F로 운영하게 된다면 졸업요건과 장학금지급지침 등을 학교별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학생들이 절대평가 과목으로 학점을 이수하면서 필수과목은 학원강의에 의존한다거나 자신이 있는 과목만 듣고 나머지는 절대평가 과목으로 이수를 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계속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인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방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 자료집, 법무부 법조인력과 주최, 2023.9.21. 참조.

〈표 7〉 전문화과목 관련 변호사시험법 규정

변호사시험법

제8조(시험의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히려 법률 개정 없이 3단계 도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아래 〈표 8〉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화과목의 점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표 8〉 전문화과목 관련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각 과목별 배점비율

…,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별표 4] 1호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에 있어서 "…,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라는 부분을 10퍼센트로 개정하면 변호사시험에서 전문화과목의 상대평가 영향력은 줄어들고 거의 P/F 평가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래의 〈표 9〉에서 현행 변호사시험 과목별 배점 및 과락 점수표를 볼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별표 4] 1호에 의해 전문화과목의 만점은 160점이며 총점은 1,660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문화과목의 배점 영향력은 공법/형사법의 객관식 점수(100점)보다 더 높다는 점으로 인해 조정점수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택의 편중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표 9〉 과목별 배점 및 과락 점수표

구 분	민사법	공법	형사법	선택과목	총점
배점(만점)	700	400	400	160	1,660
선택형	175	100	100	-	-
논술형(사례형)	350	200	200	160	-
논술형(기록형)	175	100	100	-	-
과락기준	280	160	160	64	-
	단,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하나가 40% 이상이면 면과락[17]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기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화과목의 만점은 160점이 아니라 40점이 되며 총점은 1,540점으로 변경된다. 40점의 과락기준은 16점이며 통상 20~25점을 전후하여 득점한다고 예상했을 때 편차는 10점을 넘지 않게 되어서 그 효과는 거의 P/F 제도와 유사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단기적으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시행령 개정은 유예기간도 필요 없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으로 법무부에 제안한다면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전문화과목에 대한 시험대비는 통상 로스쿨 3학년 2학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뢰보호의 이익도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17) 변호사시험은 기본과목(민사법/공법/형사법)의 경우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과락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의 채점점수가 합산되기 전까지는 과락 여부를 미리 알 수 없다.

V 결론 및 요약

1.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선택과목) 응시자 현황에서 분석되는 점은, ① 변호사시험 준비에 부담이 적고 ② 단기특강으로 전문화과목 시험준비가 가능하며 ③ 조정점수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은 과목으로 응시생들의 선택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필수과목(민사법/형사법/공법)의 시험 준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전문화과목별 시험준비가 완성된 재학생(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 또는 경험자)들로 인해 조정점수의 불리함이 있는 과목이 존재한다는 점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의 시험제도로는 더 이상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2.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7개를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의 총원은 2012년 232명에서 2024년 현재에는 191명으로 2012년 대비 19% 감소되었다. 7개 전문화과목만 전담하는 전임교수는 2012년 192명에서 2024년 현재 140명 정도로 28%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전문화과목을 전담할 전임교수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법전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일부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전문화과목 폐강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이유로 전담 전임교수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거나 부수적으로만 개설되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규강의 없이 시험만 남는 상황이 된다.

3.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 중 특성화 교육의 선택과목 수가 10개 과목에서 5개 과목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연구소의 특성화반영 연구지 1년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문제점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 특히 특성화와 전문화와 관련된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도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로스쿨 출범 취지는 특성화는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특성화 학술지보다는 현재 대부분 잘 유지되어 오고 있는 재학생들의 로리뷰 학술지를 인증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전문화과목 부실화 개선방안으로 1단계는 학칙으로 졸업요건에 일정한 전문화과목(기초과목 포함)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2단계는 인증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전문화과목 평점체계를 P/F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 3단계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전문화과목(선택과목) 배점을 160점에서 40점으로 감소하면 빠르면 제14회(2025년 1월) 또는 늦어도 제15회(2026년 1월) 변호사시험에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참고문헌

손종학,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과 법학시장”,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공영호, “미국 로스쿨 교수의 양성 방식 및 로스쿨 로리뷰에 관한 쟁점 -한국의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시사점 -”,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백경희·장연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동아법학」 제84호, 2019.

박덕영,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 Ⅳ. [선택과목] 선택과목의 교육과 평가 –”, 「고려법학」 제9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대한변호사협회,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 2021.

이세진·임재범,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95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6.3.

김인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방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 자료집, 법무부 법조인력과 주최, 2023.9.21.

양선숙, “로스쿨에서의 전문법률과목교육과 학점이수제의 도입 – 도산법 사례를 통해서 본 선태과목시험의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5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 국문초록 |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은 로스쿨 출범취지와 부합하지 못하고 부실화되었다.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응시자 현황을 보면 몇 개 과목으로 편중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화과목 전임교수의 총원도 줄어들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다. 변호사시험 필수과목의 시험 준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전문화과목의 조정점수에 과목별 유·불리가 한계를 넘었다는 점은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험제도로는 더 이상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7개를 전담하는 전임교수는 2012년 192명에서 2024년 현재 140명 정도로 28% 감소되었다. 전문화과목을 전담할 전임교수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법전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전문화과목 폐강 현상이 나타났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규강의 없이 변호사시험만 남는 상황이 된다. 그 외에 로스쿨 특성화와 관련하여 인증평가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의 문제점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 특히 특성화 및 전문화와 관련된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도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로스쿨 출범 취지는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부실화를 방지할 개선방안은 우선적으로 학칙에서 졸업요건에 기초과목과 전문화과목을 이수하도록 개편하고, 로스쿨 인증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기초과목과 전문화과목 평점체계를 P/F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즉시 가능한 대안은 법무부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전문화과목(선택과목) 배점을 160점에서 40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주제어 :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시험,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 로스쿨 특성화

Abstract

Issues and Solutions for Specialization Subjects in the Bar Exam

Bo Cook Seo*

The specialization subjects in the bar exam have failed to align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law school and have become inadequate. Observing the current enrollment status in these specialized subjects, it is evident that there is an increasing concentration in a few subjects. Consequently, the total number of full-time professors in these specialized subjects has also decreased, leading to a serious situation. The excessive burden of preparing for the mandatory subjects of the bar exam and the limits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adjusted scores for specialized subjects need to be addressed. There appears to be no room for improvement within the current examination system.

The number of full-time professors specializing in the seven bar exam subjects decreased by 28%, from 192 in 2012 to about 140 in 2024. The trend of law schools no longer hiring full-time professors for specialization subjects is increasing, and apart from a few law schools, there has been a phenomenon of the cancellation of these specialized courses. If this situation continues, it may lead to a scenario where only the bar exam remains, with no regular classes. Additionally, the accreditation standards related to law school specialization are continuously being relaxed. This relaxation of standards reflects the existing problems of specialization subjects in the bar exam. In particular, the lack of participation from law school students in specialization and professional courses undermine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aw school initiative.

To prevent further inadequacy,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cessary: 1. Revise Graduation Requirements: Amend the academic regulations to require students to complete both foundational and specialization subjects as part of their graduation requirements. 2. Revise Accreditation Standards: Update the law school accreditation criteria to change the grading system for foundational and specialization subjects to Pass/Fail (P/F). 3. Immediate Action: An immediate alternative is for the Ministry of Justice to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ar Examination Law by changing the weight of specialization subjects (elective subjects) from 160 points to 40 points in [Appendix 4].

Keywords: National Bar Exam, Elective Subject Test, Subjects of Legal Specialization, Credit Acquisition System, Specialization of Law School

* Dr. iuris, Prof. ordin., Dean, Law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별첨자료 B]

〈변호사시험법 선택과목제도 박균택 의원 개정안〉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시험에서 표준점수제의 유·불리를 개선할 수 있는 P/F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필수과목인 공법/민사법/형사법의 점수로 합격이 결정되고 선택과목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한 1개 과목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변호사시험법 개정(박균택 의원안, 선택과목 P/F)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89

발의연월일 : 2025. 2. 17.
발 의 자 : 박균택·김준혁·맹성규
김주영·김승원·양부남
한민수·추미애·박지원
박정현·박해철·한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선택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택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응시자의 과목 선택이 특정 과목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환경법 등 7개 선택과목 중에서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등 3가지 과목에 80%가 넘는 응시자가 몰려있고, 전국 로스쿨에서 선택과목 자체가 폐강되거나 교수 채용도 중단되는 등 학문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법조윤리시험과 마찬가지로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도록 하여 응시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생 략)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논술형 필기시험(제9조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한 시험은 제외한다)----------. ------각 과목(제9항제1항제4호의 과목은 제외한다) 중----------. ③ 제9조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한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은 각각 합격 여부----------. ④ ----------제9조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한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각각 필요한 점수----------.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정확하게 제10조에 대한 개정을 통해 선택과목에 대한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은 별도로 합격점수 기준을 정하고 총득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선택과목 P/F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LAW SCHOOL 창

2025.11. Vol.56 5면

Q. 초선 의원으로서의 정치 비전은 무엇인가요?

A. 법조인으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발전 과제가 많으므로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 힘쓰고자 마음먹고 있습니다.

Q.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신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및 전문적 법률분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별로 요구되는 학습량의 차이가 크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여 응시생들의 선택이 특정 과목에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했던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총 7개 선택과목 중에서 국제거래법·환경법·국제법 등 3개 과목에만 응시자의 80% 이상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로스쿨에서 일부 선택과목이 폐강되거나 교수 채용이 중단되는 등 학문적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선택과목을 법조윤리시험과 마찬가지로 총점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정한 합격선 이상을 충족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는 'PASS/FAIL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응시생들이 점수 부담에서 벗어나 관심 있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Q.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인지요?

A. 지난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인 10월에는 사실상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1월부터 법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사위 고유법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여러 법안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첨자료 C]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필기시험의 분리 실시를 통한 법학교육 개선 방안*

서보국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시험법 제8조의 선택형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논술형(사례형과 기록형) 필기시험은 '주관식'으로 표현하고, 변호사시험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인 선택과목 7개(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경제법,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와 그 외의 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 과목(도산법, 사회보장법, 인권법, 외국법, 법경제학, 금융법, 은행법, 소비자법, 엔터테인먼트법, IT법, 방송통신법, 안보법 등)들을 포괄하여 '전문화과목'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기초법 과목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한다.

Ⅰ 서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전환된지 15년이 지났다.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사건[1]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사건[2]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정착단계에 진입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공론화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변호사시험법 제1조와 제2조의 입법목적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분조정을 해야할 때가 되었음에도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2009년 이전의 논쟁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객관식 문제의 점수가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3학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수험생의 부담과 법학교육의 부실화는 비례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 외에 현재 전문화과목 강의의 폐강 현상과 변호사시험과의 불일치 문제는 이미 10년이 넘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현행 시험유형의 집중화부담, 5회 탈락자의 증가 및 전문화과목 교육과 시험의 부실화라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 전문화과목에 대한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 방안과 객관식과 주관식 변호사시험의 이원화를 통해서 실효적인 부분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 투고일자 : 2025.11.09. 심사종료일자 : 2025.11.00. 게재확정일자 : 2025.11.00.

* 본 논문은 2024.3.29. 서울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2024년 법전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으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헌법재판소 2016.9.29.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결정.

2) 헌법재판소 2017.12.28. 2016헌마1152, 2017헌마15(병합), 2017헌마300(병합) 결정.

Ⅱ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객관식과 주관식(사례형/기록형)) 필기시험의 1회 집중의 부담

로스쿨 1학년은 주로 민사법/형사법/공법의 기본과목들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학년은 민사법/형사법/공법의 심화과목과 소송법, 실무과목 및 기록형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3학년의 경우 연습과목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법전협 변시모의시험을 3번(6월, 8월, 10월) 치른 후 다음 해 1월에 변호사시험을 끝으로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게 되어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수험생들은 3학년 1학기 또는 여름방학부터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기 시작하여 변호사시험을 치르기까지 준비시간을 30~50% 가까이 할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사법과 형사법의 객관식 문제에 80%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공법(헌법/행정법)과 전문화과목은 필요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물론 법조실무의 영역에서 민사법/형사법의 실무활용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서 그만큼 더 많은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내신 상위권 학생이나 공직임용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도 변호사시험에 대한 합격이 불안해질 정도로 상대평가의 합격선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이미 기존의 문헌에서 통계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3)]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계속 난도가 올라가고 암기해야 할 학습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현상으로 인해 로스쿨 교육 부실화와 입시학원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시험과목이 아닌 기초법 과목이나 전문화과목의 경우에는 로스쿨에서 이미 고사의 길로 접어들었고, 아래의 전문화과목의 문제점에서 볼 수 있듯이 5~10년 이내에 폐강의 문제로 전임교원이 없어진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로스쿨에서는 민사법/형사법/공법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만 남게 되고, 로스쿨로의 전환이라는 취지는 유지하지 못하게 되며, 예비시험의 부활 등의 쟁점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로스쿨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유형의 집중으로 인한 수험생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고, 종합적 법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3학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암기형 객관식 문제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의 문제점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서 법전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서규정으로 졸업 전에 통상 시험을 보는 경우를 상정하여 졸업예정

3) 백경희·장영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84호, 2019, 274면.

자부터 5년 5회를 적용한다. 그 외에 동조 제2항에서 시험응시 이후에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5년의 기간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4)]

통계적으로 지금은 매년 250~300명 정도(이 중에서 약 200명 정도가 마지막 시험에 응시하고 있음)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해당하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시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법학전문석사학위자의 숫자가 예전의 사시낭인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논의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이나 법학교육기관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로스쿨에서 3~5년, 시험준비기간 5년을 합해서 8~10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최종불합격자에게 법원/검찰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등의 제도적 방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관 특채시도[5)] 등의 노력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6)]

따라서 법학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과 맞지 않는 학생에게 입학 이후 몇 년 안에 다른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0대 후반까지 다른 진로를 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8~10년 동안 적성에 맞지 않는 시험 준비에 묶어 두기보다는 입학 이후 1~3년 안에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는 이미 작년 12월 심포지움에서 객관식 시험을 분리하고 그 범위를 줄여서 2학년 진급시험 및 유급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이 결정되며 유급의 기준은 학교별로 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유급된 학생의 숫자만큼 1학년 학생 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며 전체 총원은 동일하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관도 각 법전원이며, 진급과 유급의 책임도 마찬가지이다.

이와는 달리, 각 법전원별 유급 결정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예전의 사법시험처럼 변호사시험 객관식 시험의 점수를 기준으로 1700~1800명 정도로 진급 제한을 두는 것은 자격시험화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10년을 낭비하는 5탈자의 숫자는 그대로 200~300명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3년의 유급자로 제적되는 것으로 변경될 것이다. 그러나 각 법전원별 유·불리의 입장으로 인해 제도개선에 처음부터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기준점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방안이 받아들여진다면 5년 5회의 응시제한 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 이미 객관식 시험을 통해 적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금 더 늦게 시험준비를 할 수

4) 병역의무기간 외에 임신·출산·육아기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저출산시대에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기사, “법원 "임신·출산은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안 된다"”, 법률신문 2023년 8월 25일, https://www.lawtimes.co.kr/news/190666(최종확인 2025.11.8.).

5) 기사, “경찰 '변호사 시험 5탈자' 특채 7 → 8급 내려 재검토”, 문화일보 2023년 6월 8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0801071021227001(최종확인 2025.11.8.).

6) 이창현, “변호사시험 합격률”, 법률신문 2021년 5월 6일, https://www.lawtimes.co.kr/news/169834(최종확인 2025.11.8.); 한애라, “오탈자, 이대로 좋은가”, 법률신문 2023년 5월 1일,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7185(최종확인 2025.11.8.).

있게 하거나 응시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의과대학처럼 로스쿨 2~3학년의 학사관리가 더 엄격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전문화과목(선택과목) 시험의 응시생 편중과 로스쿨 교육의 부실화

발표자는 작년 12월 심포지움에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의 문제점과 로스쿨 소속 전문화과목 담당 전임교원의 감소 및 부재라는 문제점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총 7개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생의 특정 과목 편중현상이다. 제3회 시험 이후부터 제12회 시험까지 2,500~3,600명이 넘는 전체 응시생 중 국제거래법(40~50%), 환경법(20~30%), 국제법(5~12%) 3과목에 82% 비중으로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은 모두 합쳐도 10%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수험생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시험부담의 유·불리와 표준점수제의 유·불리 때문이다.

시험부담의 유·불리는 민사법/형사법/공법 과목에 대한 준비시간도 부족하다는 점과 특별법을 배우는 시기에 객관식 시험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표준점수제의 유·불리로 인해 전문자격사가 존재하는 과목(노동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에서 신규진입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편중현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문화과목과 기초법학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숫자가 모든 영역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법학과목을 제외하고 시험과목으로 되어 있는 7개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의 로스쿨 전체 총원이 2012년에는 약 230명 정도였으나 2023년 말에는 14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7] 아이러니하게도 50%의 응시생이 선택하는 국제거래법 과목에서조차 담당 전임교원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은 3년의 과정에서 민사법/형사법/공법을 제외한 전문화과목이나 기초법학은 0~2개를 수강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불안감과 주요 시험과목 이외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거의 모든 로스쿨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문화과목에 대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규강의 15주와 사설학원강의 5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자명하다.

따라서 기초법학과 전문화과목의 강의개설이 쉽지 않으며 폐강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강의를 담당할 전임교원의 자리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모든 로스쿨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결국 신임교원을 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전문화과목 전임교원의 정년이 길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5년 뒤에는 140명에서 70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강의와 교육 및 출제위원도 모두 없는 상황에서 전문화과목 시험만 남게 되는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래의 박스자료는 필자가 2023.12.19. 부산에서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주관 '2023 로스쿨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제도 개선방

7) 서보국,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35권 제3호, 충남대 법학연구소, 2024.8., 5면 이하 참조.

안'으로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다.[8)]

전문화과목(선택과목)에 대한 로스쿨 교육 내실화 방안

- 전문과목 교육부실화는 사법시험(예비시험) 부활주장의 주요 논거
- 전문자격사(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의 소송대리 주장 논거
- 표준점수제로 인한 전문자격사 과목의 신규진입 차단
- 전문화과목에 대한 정규과목 수강 없이 단기특강으로 수험준비 만연
- 졸업생 이수학점 중 민/형/공 아닌 과목은 0~2과목에 불과함
- 전문화과목 전임교원 감소중. 5년 뒤 강의/출제위원 없이 시험만 존재
- 따라서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보다 로스쿨 내 전문화과목 강의개설이 더 시급한 문제이며, 전임교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1단계: 졸업요건에 일정 선택과목(기초법/외국법 포함) 이수 기준 도입
2단계: 선택과목 수강시 P/F 평점 도입(장학금 선발기준 보완 병행)→ 법령개정 없이 학칙개정과 로스쿨 인증평가 개정으로 즉시가능
3단계: 변호사시험(전문화과목) / 학점이수제 중 선택가능성 부여

8) 최근의 문헌으로 양선숙, 로스쿨에서의 전문법률과목교육과 학점이수제의 도입, 법학연구 제35권 1호, 2024.2., 충남대 법학연구소, 463면 이하.

Ⅲ 통합형(객관식과 주관식(사례형/기록형))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로스쿨교육의 학원화 경향 심화 방지와 예비시험(사법시험)의 부활 등의 우려, 전문화과목 폐강 등의 로스쿨 교육 부실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개선은 로스쿨 내신 평가나 교육내실화 보다는 변호사시험제도를 개선해야 가능하다. 전문화과목 부실화 등은 학생들이 여유가 없을 정도로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이 상향되고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은 합격률과 합격기준의 문제와는 별도로 시험을 5일 동안 객관식과 주관식(사례형과 기록형)을 모두 한 번에 보기 때문이라는 점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변호사시험제도의 본질적 개선방안을 통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우선적 고려사항으로서 변호사시험법과 시행령

아래의 변호사시험법을 확인하여 법률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것과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먼저 변호사시험법을 보면 법률의 개정 없이 현행 법률에서 객관식 시험을 분리할 수는 없다. 모든 시험 유형을 5일간 집중하여 치루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법 제5조제1항에서 법조윤리시험을 제외하고 법학전문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3개월 이내 취득예정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조윤리시험일에 객관식 시험을 분리해서 보더라도 3개월을 벗어나기 때문에 법률개정사항이다.

그 외의 문제는 객관식 시험의 범위와 주관식 시험의 범위가 동일해야만 하는지 여부이다. 이는 법 제9조제3항에서 출제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는 과목별로 객관식과 주관식 모두 동일한 범위로 정하고 있지만 차후에 과목 내에서 객관식과 주관식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법 제10조제2항에서 객관식과 주관식을 합산한 각 과목의 원점수와 조정점수를 기준으로 과목 과락을 결정하고(전문화과목은 주관식 점수만 계산), 모든 과목을 합산한 총득점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으로 분리 실시된 객관식 점수를 별도의 유급기준으로만 사용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 없이 분리실시된 객관식 시험 점수를 유급기

준으로만 사용하고 변호사시험에 영향력을 줄이고자 한다면 아래의 시행령 제8조제2항의 환산비율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3]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각 과목별 배점비율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3.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한다.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3에 의해서 객관식과 주관식의 환산비율은 3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비율을 3배 보다 더 높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객관식의 합격기준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법 선택형(객관식) 40문제의 배점이 아래의 〈과목별 배점 및 과락 점수표〉에서 보듯이 100점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1문제당 2.5점으로 계산되지만, 40점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1문제당 1점으로 40%의 비중으로 줄어들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 시행령 별표3의 환산비율도 300%에서 600%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도 충분한 상황이기에 실현가능성은 높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과목별 배점 및 과락 점수표〉

	민사법	공법	형사법	선택과목	총점
배점(만점)	700	400	400	160	1,660
선택형	175	100	100	-	-
논술형(사례형)	350	200	200	160	-
논술형(기록형)	175	100	100	-	-
과락기준	280	160	160	64	-
	단,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하나가 40% 이상이면 면과락				

(변호사시험은 기본과목의 경우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과락 여부를 결정함. 따라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의 채점점수가 합산되기 전까지는 과락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음)

2. 객관식 필기시험의 분리 실시(5탈자 문제 개선 병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3학년 학생들의 가장 큰 부담은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시험 일정에 최대한 가깝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객관식 시험 준비는 기출문제와 최신판례의 결론과 중요이유를 암기해야 하는데 망각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2학년부터 준비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최대한 3학년 이후부터 객관식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늦어도 3학년 여름방학부터는 마지막으로 공법 객관식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수험생들의 정상적인 루틴이 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로스쿨 교육의 부작용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식 시험의 비중을 낮추거나(시행령 개정사항),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은 분리할 필요(법률 개정사항)가 있다.

3. 분리실시 가능한 객관식 필기시험 시기

(1) 법조윤리시험일(7월)에 3학년 대상 객관식 필기시험 실시 방안

먼저 객관식 시험을 분리하여 6개월 정도 앞당기는 방안으로 법조윤리시험일에 3학년 수험생이 치르는 방식이다. 시험집중 완화의 의미가 있으며 전국의 로스쿨 1학년이 법조윤리 시험을 치르는 날에 동시에 3학년이 객관식 시험을 실시하기에 행정적으로 시험장 관리의 문제는 어렵지 않은 편이다.

객관식을 분리하여 6개월을 앞당기게 되면 1월의 본시험에 대한 부담은 5일의 시험에서 3일 정도로 줄어들겠지만, 객관식과 주관식의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을 결정하게 되는 현재의 점수제에서는 앞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합격기준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문제와 전문화과목의 폐강이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로지 시험집중의 부담이 완화되어 수험생들의 피로도가 줄어든다는 장점만 존재한다.

(2)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2학년 대상 객관식 필기시험 실시 방안

2학년을 마치고 객관식 시험을 보게 된다면 시험범위의 변경은 필요 없다. 민사법/형사법/공법의 시험범위를 이미 공부한 상황이기에 객관식 시험 준비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방향은 시행령의 개정으로 각 과목별 객관식 시험 범위를 줄여줄 필요는 있다. 헌법/민법/형법은 현재와 같이 모두 포함하지만, 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은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의 마지막 날(또는 당분간 그 다음날)에 2학년이 시험을 보게 된다면 시험장 문제와 행정인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CBT시설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조금 더 공간 활용에 있어서 자유롭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현행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채점 및 관리의 문제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추가적인 예산도 필요하지 않다. 선택형 시험 출제위원은 동일하게 입소하여 출제를 하면 되고 변호사시험 1일차부터는 3학년 등 본시험 수험생 3천명이 CBT시험을 치르고, 마지막 날에 전국의 1학년 약 2천명이 각 학교별 시험장에서 선택형 시험을 보면 된다. 물론 시험범위가 변경되기 때문에 2년의 경과기간 동안에는 2개의 시험이 각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기존 시험에 탈락한 N시생들에게 기존의 시험방식을 5회 동안 유지할 필요도 있다. (물론 불리한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서 새로운 시험방식을 2년의 경과기간 후에 전면실시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법조윤리시험일에 객관식 시험을 실시하는 것 보다는 1년 더 분리가 되는 것으로서 교육내실화의 효과는 조금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2학년에서 3학년으로의 학년유급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선택하게 된다면 객관식과 주관식의 환산비율을 변경하고 객관식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은 가능하지만, 학년유급으로 사용하기에는 로스쿨에서 5년의 기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무리가 따른다.

(3)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1학년 대상 객관식 필기시험 실시 방안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객관식 유급시험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변호사의 자질에 관한 기본적인 평가는 사례형과 기록형으로도 충분하다. 이 경우 1학년 과정에서 현재의 객관식 시험 범위는 너무 넓다. 따라서 1학년에서 학습가능한 내용으로, 즉 헌법(헌법사 제외), 민법(가족법 제외), 형법으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법/상법/소송법은 객관식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유급시험을 통해 계속 문제되어온 '5탈자'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적성에 맞지 않는 로스쿨 학생은 최소한 8년의 기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유급시험을 통해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축소하여 본인의 적성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급시험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칙 개정과 로스쿨 인증평가로 충분히 자율규제가 가능하다. 유급시 1학년 과정을 반복하여 진급시험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5탈자와의 차이점은 로스쿨 입학 이후 10년 뒤에 5탈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학 이후 2년 뒤에, 즉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법학시험에

맞지 않는 적성을 확인하고 다른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1학년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치르고 있는 법조윤리 시험을 변호사시험기간의 마지막 날에 객관식 시험과 통합하여 볼 수 있게 한다면 경비도 줄어들면서 법무부와 로스쿨 학생들 모두 만족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객관식 필기시험과 주관식 필기시험의 환산비율의 개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행령 별표3을 개정하여 현재의 300%에서 600% 또는 750%로 주관식의 비중을 높여준다면 분리실시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분리된 객관식 시험의 시기를 1학년 말이나 2학년 말로 앞당기고 그 비율을 변경하게 되면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게 되며 각 학교별로 학년유급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개정안은 법 제10조제3항에서 법조윤리시험에 대한 규정과 같이 객관식 시험 점수도 40~50% 과락만 있고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래의 응시횟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객관식 시험의 과락기준 또는 유급기준을 상향하여 진급자의 숫자를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수준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졸업예정자가 치르는 주관식시험은 의과대학의 국가시험처럼 자격시험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5) 응시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법령 개정

분리된 객관식 필기시험에 대한 과락 제도와 각 학교별 진급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객관식 필기시험에 대한 응시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 법전원 학칙에 분리 실시된 객관식 시험 점수가 과락에 해당하거나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학년유급이 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의 여부를 로스쿨 인증평가에 포함시킨다면 응시횟수의 제한 규정과는 별개로 자율적으로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각 대학교의 학칙에서는 동일하게 학년유급이 2회 이상이면 제적대상이기에 변호사시험법을 적용할 필요 없이 학칙으로 응시제한이 가능하다.

유급제도와 연결하지 않고 환산비율도 조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객관식 시험만 분리하여 실시하게 된다면 어느 시기로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응시 제한 규정과는 관련성이 달라진다. 정책적으로 객관식 시험을 이미 보고서 객관식 점수를 취득했다면 1회가 시작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관식 시험까지 치르고 나서야 1회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학연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분리된 객관식 시험을 치르고 점수가 나온 다음에는 더 이상 객관식 시험을 볼 수 없으며 졸업예정자로서 또는 졸업자로서 주관식 시험까지 치른 경우에 1회로 인정하여 5년의 기산점이 시작된다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법률개정을 하여 객관식 시험은 1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정하며 응시 횟수 제한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변호사시험 1회 응시로 인정하여 횟수 제한 규정의 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장단점을 논의하여 전반적인 법률개정을 통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거나, 간단한 법률개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실효적인 단기간의 개선방안을 선택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Ⅳ 변호사시험 필수과목의 표준판례와 연계를 통한 법학교육 정상화 방안

변호사시험제도의 시험범위와 관련하여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필수과목(공법/민사법/형사법)의 시험에서 너무 방대한 판례에의 의존화 경향이다.

로스쿨 교육에 있어서 실무교육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기초법학과 이론교육의 비중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줄어들면서 많은 부작용을 만들었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정답오류의 논란도 피해가면서 실무교육의 비중도 강화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제시되는 자료와 객관식 선지 및 논술형 문제의 쟁점 등과 채점기준표를 모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처음부터 지배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상대평가라는 변호사시험에서 적정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위해서 매년 리딩케이스 판례를 벗어나서 예외적 쟁점을 다룬 판례와 그 판례의 예외 등 계속적으로 지엽적인 판례가 출제되면서 부작용은 점점 더 커져갔다. 결국 리딩케이스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는 지를 평가하기 보다는 중요 판례와 예외 판례를 얼마나 더 암기하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러나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은 이러한 시험의 경향을 따라가기 벅찬 상황이었으며 결국 로스쿨 학생들은 학교 강의에 의존해서는 시험에 나오는 판례들을 준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최신판례특강 등 시험대비 강좌를 별도로 준비해서 듣거나 공부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당연히 판례의 심도 있는 이해와 바탕이 되는 기본이론의 숙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이미 현재의 변호사시험에서의 좋은 성적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객관식이거나 주관식이거나 중요 판례를 바탕으로 수험생의 수준별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쟁점을 변형하거나 조합하거나 공통점을 추출하는 사례나 문항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새로운 판례나 예외적인 판례를 그대로 출제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라는 점이 지금의 현상을 묵과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리딩케이스 판례를 놓고 변형을 시도하여 수준별 쟁점과 문항을 만들어내는 시험출제 방식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3년간의 로스쿨 교육에서 그 많은 판례들을 모두 가르치기도 힘들고 이해하거나 암기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리딩케이스(표준판례)라는 중요 판례를 깊이 있게 가르치고 이해하는 것이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 중 하나라는 점과 이를 위해서 변호사시험에서도 리딩케이스에 한정해서 시험이 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최신판례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판례들 중에서 리딩케이스를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하는 문제(기존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필수과목별 '표준판례연구'를 활용하여 개정하는 방법)와 이렇게 정해진 과목별 표준판례를 변호사시험에 연계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로 연계할 것인지라는 문제는 25개 로스쿨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와 협력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능한 영역인 변호사모의시험에서 아래의 표준판례연계표를 의무화하고 출제단계에서 필수절차로 자리 잡는다면 차차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에서도 연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호사모의시험의 객관식 필기시험과

주관식 필기시험에서 리딩케이스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암기한 것으로도 충분하게 졸업기준과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로스쿨 교육과정에서도 표준판례로 깊이 있는 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샘플: 2026년 1차 모의시험 표준판례 연계표(공법)〉

1. 선택형

* 리딩케이스(~2024.12.31.) 연계율 90~100%, 최신판례 포함 전체 연계율 80%

: 발문/자료 - 비표준판례를 사용금지, 0% 또는 100% 중 하나로 판단함

문제	발문 /자료	①	②	③	④	⑤	연계율
1	-	85누303	2009두 7967	2018두 44302	2004추10	2019두 52799	100
2	2013두265 52	-	-	-	-	-	100
3	-	2016다 201395	2016두 60591	최신판례 2024두 34122	90누5825	97도3121	80
4	최신판례 2023두 61349	-	-	-	-	-	0
5							100
6	-	2008두167	2010두 14954	99다37382	2017두 34087	비표준판례 2010두 13340	80
…							80
14							100
15							100
…							…
40							…
리딩케이스(~2024.12.31.) 연계율**				170 / 182			93.4
최신판례 포함 전체 연계율 (문항별 연계율 총합 ÷ 40)							82

** ((최신판례 제외 표준판례 문항수 - 비표준판례 문항수) ÷ 최신판례 제외 표준판례 문항수) × 100

2. 사례형

* 최신판례 포함 전체 연계율 70%(표준판례의 내용만으로 70% 득점 가능)

문제	문항(배점)	판례번호	연계율(%) (득점 가능 정도)
사례1 (100)	1-1(40) 1-2(20) 1-3(40)	1-1: 1-2: 1-3:	75% (75점)
사례2 (100)	2-1(25) 2-2(35) 2-3(20) 2-4(20)	2-1: 2-2: 2-3: 2-4:	70% (70점)
전체 연계율 (배점별 연계율 총합)			72.5 (37.5+35) 기준 충족

3. 기록형

* 최신판례 포함 전체 연계율 70%(표준판례의 내용만으로 70% 득점 가능)

문제	배점	판례번호	연계율(%) (득점 가능 정도)
작성서류1	50	2009두2825, 2007두16127, 2006두2954, 96누14661, 2012두28728(비표준판례), 2010두14954, 2015두41579, 2017두38874	80% (40점)
작성서류2	20	93누6164, 2022두0000(최신판례)	50% (10점)
작성서류3	30	2007두18154, 2021두0000(최신판례)	60% (18점)
전체 연계율 (배점별 연계율 총합)			68(40+10+18) 기준 미충족

〈확인위원 및 출제위원(장) 서명〉

구분	출제1	출제2	출제3	출제4	출제5	출제6	출제7	출제8
성명								
서명								

구분	출제9	출제10	출제11	출제12	출제13	출제14	출제15	출제16
성명								
서명								

구분	출제17	출제18	출제19			확인1	확인2	위원장
성명								
서명								

V 결론 및 요약

1. 사법시험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가 15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받고 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도입취지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도 항상 남아 있다.
2.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해보다는 암기에 치중하게 되는 선택형(객관식) 필기시험의 합격에의 영향이 너무 커졌다는 점과 리딩케이스 판례의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예외적인 판례와 지엽적인 판례의 암기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법학교육에서도 중요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는 시간낭비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3. 전문화를 위한 법률과목에 대한 시험(전문화과목 또는 선택과목)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법학교수 및 연구자의 감소로 인한 법학교육 및 변호사시험 및 전문분야 법률전문가의 공백상태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주장한 바 있다.
4. 변호사시험법의 개정 없이 변호사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을 분리하여 미리 실시할 수는 없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1항에서 법조윤리시험을 제외하고 법학전문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3개월 이내 취득예정자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객관식 시험의 비중을 낮추어 기존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객관식과 주관식의 환산비율은 3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비율을 3배 보다 더 높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객관식의 합격기준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 있다.
5. 본 논문에서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현행 변호사시험 5일차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 유급시험으로 실시하는 법률개정을 주장한다. 객관식 필기시험의 범위는 1학년에서 학습 가능한 내용으로 현재보다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이러한 유급시험을 통해 계속 문제되어온 '5탈자'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현행 5탈자와의 차이점은 로스쿨 입학 이후 10년 뒤에 5탈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학 이후 2년 뒤에 자신의 적성부재를 확인하고 다른 진로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6. 현행 변호사시험에서 너무 많은 판례가 출제되고 있어서 수험생의 부담이 점점 가중될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법학교육은 외면받고 있다. 학생들은 최신판례를 비롯한 암기식 수험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출제단계에서도 기존의 리딩케이스를 변형하여 이해도를 평가하기 보다는 매년 새로운 판례를 암기하였는지 여부만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판례를 정하여 강의교재 및 시험출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변호사모의시험에서 표준판례연계표를 의무화하여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백경희·장영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84호, 2019.
서보국,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35권 제3호, 충남대 법학연구소, 2024.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변호사시험이 도입 된지 15년이 되었지만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는 객관식 필기시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점의 원인은 법리의 이해보다는 판례의 암기에 치중하게 되는 객관식 필기시험의 비중이 너무 커졌다는 점과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지엽적인 암기가 더 합격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식 시험을 분리하여 미리 실시할 방법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객관식 시험의 비중을 낮추어 기존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객관식 필기시험을 현행 변호사시험 5일차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 유급시험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객관식 필기시험의 범위는 1학년 동안 학습 가능한 범위로 축소해야 한다. 이러한 유급시험을 통해 계속 문제되어온 '5탈자'의 문제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에서 너무 많은 판례가 출제되고 있어서 수험생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으며 법학교육도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선방안으로 리딩케이스인 표준판례를 정하고 강의교재 및 시험출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변호사모의시험에서 표준판례연계표를 의무화하여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변호사시험, 객관식 필기시험, 진급시험, 법학교육, 표준판례

Abstract

Improvement of law education through separate implementation of multiple-choice written tests in the bar exam

Bo Cook Seo*[9)]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multiple-choice written tests that are hindering the normalization of law education and insists on improvement measures even though it has been 15 years since the bar exam was introduced. The cause of the problem is that the proportion of multiple-choice written tests, which focus on memorizing precedents rather than understanding legal principles, has become too large and that peripheral memorization has become a more important factor in passing than in-depth understanding of precedent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impossible to separate and conduct multiple-choice tests in advance without amendments to the current Lawyers Test Act. However, it is possible to remove some of the existing side effects by lowering the proportion of multiple-choice tests only by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without amendment of the law.

In this paper, as a legal amendment, it is argued that the multiple-choice written test should be conducted as a national promotion test for first graders on the 5th day of the current bar exam. The scope of the multiple-choice written test should be reduced to the range that can be learned during the first year. Through the promotion test,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problem of the 'Students who failed 5 times'.

There are so many precedents in the bar exam that the burden on test takers is increasing, and law education is difficult to normalize. As an improvement meas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precedent, which is a leading case, and use it for teaching materials and examinations. First of all, the law school council should make efforts to normalize law education by mandating the linkage of standard precedents in the practice test of the bar exam.

Keywords: National Bar Exam, Multiple-choice Written Test, Promotion Examination, Legal Education, Leading Case

* Dr. iuris, Prof. ordin., Law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토론문

이황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현재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의식은,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변호사시험 방식이 소위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1)]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경량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험부담을 줄이고, 그로써 확보되는 여력을 법적 전문성을 쌓는 데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문화과목 시험과 필수과목의 선택형 시험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발표자의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1) 전문화과목의 경우 '주변화 현상'과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전문화과목들은 변호사시험에서 비중이 낮아, 학생들은 수험적인 관점에서 전문화과목에 대한 시간 할애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판단으로 대응해 왔고, 이는 전문화과목들의 주변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화과목은 법조인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 이외에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법률지식에 해당합니다. 사법시험 제도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개혁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획일적인 법조인 양성을 탈피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문화과목을 충실히 공부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법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일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달성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전문화과목에 관한 문제는 필수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들로서 겪게 되는 전반적인 관심 부족 현상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거두려는 학생들의 전략적인 대응의 결과, 학습분량이 적은 과목을 선호하는 경향 혹은 조정점수 계산에서 덜 불리한 과목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법 7개 과목 중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이라는 이른바 '빅3' 과목에 전체 수험생의 약 70~80%가 쏠리고 있는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우선,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 이하 토론문의 주요한 내용은, 이황희·이재홍, 법학기초정책연구 Ⅱ ㉮ –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법제 개선 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2025 중 관련 부분을 발췌, 요약, 손질한 것입니다.

많은 학생이 선택하고 있는 소위 빅3는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인데, 이들 과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노동법, 경제법, 조세법 등 실무에서 수요가 많은 과목들이 시험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은 이들 과목의 학습 분량이 적어 공법이나 민·형사법 같은 기본법률 과목의 학습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수험전략적인 측면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정작 학생들의 선택이 쏠리는 과목들에 대해서조차도 "학교에서 … 1학기(15강) 수강하는 것보다 학원에 개설된 최종정리 강의(5강)를 하루 만에 듣는 것이 수험에는 더 적합하다"라는[2]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쏠림 현상은, 선택받지 못하고 있는 과목들에 대한 관심을 복원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선택받고 있는 과목들을 포함하여 전문화과목 전체에 대한 공부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전문화과목의 경우, 시험 방식을 유지하는 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의 비중 자체를 낮추어 버릴수록 '주변화 현상'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궁극적으로는 학점이수제 방식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학점 이상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설정한다면, '주변화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화과목들 간에는 학습부담상 차이가 있겠지만, 15주 강의라는 수업 분량, 중간·기말 시험이라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점, 전문화과목들에 대한 수강 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변호사시험 준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점에서, '쏠림 현상' 역시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간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동등하게 담보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겠으나, 법학전문대학원들 간의 자율로(가령,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도로) 교육 내용에 관한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 제시, 표준판례 선정 등과 같은 일정한 교육과정 표준화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필수과목들에 대한 기본기를 확실히 다지고 졸업한다면 그 이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전문화과목에 관한 시험을 준비하는 것 이상의 전문성을 쌓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설령, 이로 인한 어느 정도의 제도적 약점(예: 시험준비 과정을 겪지 않아 발생하는 전문성 약화?)이 발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정상화, 다양한 법률과목들에 대한 관심 환기라는 대의를 달성하려는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봅니다.

(2) 다음으로, 필수과목의 선택형 시험 역시 현재 방식에서 일정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분리실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다만, 저는 논술형 시험과 같이 실시하되, 그 비중을 줄이는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처럼 헌법, 민법, 형법에 대해서만 선택형 시험을 보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형 시험은 헌법 50점, 민법 75점, 형법 50점이 됩니다. 또한, 출제대상이 되는 판례의 범위를 줄인다면, 선택형 시험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법률신문, "변시 '빅3' 선택과목 국제거래·환경·국제법에 응시자 82.5% 편중", (2024. 4. 7.), https://www.lawtimes.co.kr/news/197381(최종방문: 2025. 7. 19).

3. 마지막으로, 논술형 시험의 경우, 사례형을 중심으로 하면서, 기록형 시험의 비중을 다소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록형 시험은 공법을 제외하고 민사와 형사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 아니면 공법 중 헌법을 제외하고 행정법, 민사, 형사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헌법 소송은 실무상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헌법 소송은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커서, 위헌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중요하지, 소송기술적인 능력은 그렇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헌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는 사례형 시험으로도 충분히 테스트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토론문

곽희경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께서 제안해 주신 개선안, 즉 ❶ 선택형(객관식) 시험 과목을 3과목으로 축소하거나(헌법, 민법, 형법, 이하 '기본3법'), 7과목 전부(기본3법 +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이하 '후4법') 시험을 보더라도 점수 비중을 현재의 1/3로 축소하고, 논술형(주관식)과 분리하여 1학년 겨울방학때 실시하여 2학년 진급시험화(유급제) 하는 방안, ❷ 전문법과목(선택과목) 활성화를 위해 일정 학점이수를 로스쿨 졸업요건화하고 평가방식은 P/F(절대평가) 방식으로 하며, 변시 점수 반영 비율을 현재의 1/4로 축소하거나 법조윤리와 같이 P/F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취지와 구체적인 방법론의 방향에 대해 매우 공감합니다.

아래에서는 발표자의 제안에 덧붙여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발표자와 세미나 참석자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현행 변호사시험 및 법학교육의 문제점 (공통 인식)

현행 제도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입니다.

❶ 판결요지 암기 중심이고 암기량이 과다하다. 정작 중요한 사고력, 쟁점 발견, 논증력, 문장력 등의 법률가 자질을 기르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❷ 시험준비에만 골몰하여, 전문법과목·기초법과목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이 절멸의 위기에 놓이기 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차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암기중심 교육·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1) 선택형 비중 축소, 논술형 비중 강화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방안은 수험생 부담 경감, 5탈자 조기 예방, 사고력 증진이나 전문법과목 학습에 보다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년유급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소정의 학점을 모두 이수했는데 진급을 못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유급시에 다시 LEET를 봐서 다른 로스쿨 진학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어 5탈자 조기 예방 효과에도 다소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그 대안으로 진급시험화(유급제)보다는 선택형(객관식) 시험 합격을 '졸업요건화 + 2차 시험 응시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졸업은 '석사학위' 취득을 의미하므로, course work를 모두 마쳤더라도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검증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반발심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1차 시험(선택형)에 합격한 사람만 2차 시험(논술형)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최종 합격 여부는 2차 시험 성적만으로 가리도록 함으로써, 2차 시험 응시인원 감소 + 경쟁률 감소 + 합격률 상승(정상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1차 시험을 졸업요건화 하기 위한 전제로는, 1차 시험(선택형)은 과목을 기본3법의 세 과목으로 축소하고, 난이도도 현재보다 다소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합격 여부를 정해진 특정 인원수(최종 합격자수의 몇배수 등)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일정 점수(기본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넘으면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문제유형 변경

교육은 시험에 동조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과정이 사고력 증진 방향으로 개선되려면 시험 방식도 그와 같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선택형(객관식) 시험

모든 선택형 문제에 예외 없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단서가 붙고, 모든 설문과 지문이 법조문 아니면 판례요지(중요판례뿐 아니라 지엽적 판례·최신판례 포함)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7과목 출제 대상 판례를 합치면 1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로스쿨에 들어오더라도 암기위주로 공부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문제 출제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대립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각 견해의 논거를 고르게 하는 문제, 사안을 제시하고 특정 당사자가 승소하기 위한 주장이나 논거를 고르게 하는 문제 등, 사고과정을 물어보는 새로운 문제유형을 공동의 노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1)]

암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요판례를 추린 '표준판례'를 편찬하여 교육과 출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표준판례는 판결요지와 선정이유만을 간단히 싣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수업에서 그 깊은 내용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판결이유를 포함한 전문을 표준판례집에 포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의 결론뿐 아니라 반대의견·보충의견·별개의견 등의 상호 반박·재반박 등 논증 과정을 모두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판례공보와 같이 판결요지만 모은 버전과 판결전문을 포함한 버전의 2가지로 편찬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PDF 파일 형태로 편찬하고 학생들도 PDF 형태

1)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36권 1호(2017), 264면.

로 보는 것을 선호하므로, 비용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례형 시험

현재 사례문제는 민사법/형사법/공법 세 과목 합계 약 40여개의 소문항을 문항당 약 10분 내외에 써내야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사례형 시험은 '문장화된 선택형 시험'처럼 되었습니다. 단편적 쟁점에 대해 적용될 판례를 찾아 판결요지 중요 문구를 암기하여 현출하는 식의 답안을 요구하므로, 깊은 사고과정이나 논증과정, 문장력 등을 테스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소문항 출제방식을 지양하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이 문제에서 이미 드러나는 형태보다는("을의 ... 관할위반이라는/원고적격이 없다는 ... 주장은 타당한가?"), 사실관계 안에서 무엇이 쟁점인지를 찾아내도록 하는 문제가 바람직할 것입니다(예컨대 여러 쟁점이 혼합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를 묻는 형태). 또한 예컨대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 쟁점에 관하여 각각의 논거를 검토하고 자신의 입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게 하는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답안 채점시에도 판례 문구의 충실한 현출보다는 자기만의 논증과정, 자신의 견해를 수립하고 그에 대한 논거를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과정에 배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록형 시험

현재 기록형 시험은 '인위적 쟁점과다형'으로 출제되어,[2] 실질적으로는 '기록화된 선택형·사례형 시험'처럼 되어 있습니다. 민사법 기록형 시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상담일지', '내용증명' 등에서 이미 쟁점을 제시해 주므로, 주어진 쟁점에 적용될 판례를 알고 있는지, 그 판례 문구를 잘 현출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게다가 '패소 부분이 없게 하라'는 지침, '상대방의 예상되는 항변·재항변 등에 대해서도 모두 작성하라'는 지침으로 인해 변론주의·주장증명책임·소송실무에 부합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변호사들이 "왜 요즘 신입변호사들은 소장에서부터 상대방이 할 얘기를 미리 다 쓰는가?"라는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3]).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암기하여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무에서도 이런 것은 외워서 쓰지 않고 기존 서식이나 기재례를 보면서 작성합니다. 위와 같은 시험 형태는 제대로 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쟁점 수를 대폭 줄이고, 기록 안에서 스스로 쟁점을 찾도록 하며, 깊은 사고를 거쳐 결론을 내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답안의 형식도 실무에 부합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소장/답변서/준비서면 형태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서술하게 하는 방식, 또는 차라리 검토보고서 형태로 예상 결론-청구취지·판결주문-과 함께 각 쟁점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길게 본다면,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 시험을 폐지하고, 실무 문서 작성 교육은 각 직역(법

2) 천경훈, 앞의 글, 245면.
3) 천경훈, 앞의 글, 253면.

원/검찰·경찰/변호사 등)마다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실무교육 내지 직무교육의 형태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년이라는 극히 짧은 로스쿨 교육기간 동안에 기본기를 다지는 것만해도 벅찬데 실무교육까지 하려다보니 이도 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뛰는 훈련을 시키는' 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무에서 각 직역마다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라면 수개월의 짧은 기간 안에 금방 습득할 수 있으므로, 차라리 로스쿨에서는 3년간 충실하게 기본기를 다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3) 교과과정 개편

위와 같은 제도의 변경에는, 로스쿨 교과과정의 개편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1) 실무과목(법원/검찰/경찰)의 개편

현재 실무과목은 사실상 '채용과정'(전국 로스쿨 공통 수업·시험 실시, 전국 석차 도출, 채용에 반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과목이 2학년 2학기부터 배치되어 있다보니, 그 전까지 3개 학기 안에 주요 7과목의 기초이론 학습을 모두 마쳐야 하므로, 많은 양을 주마간산격으로 얇고 넓게 암기하고 넘어가는 형태의 학습이 만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법을 예로 들면, 1학년 2학기에 민법의 절반(채권총론, 물권법)을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여 채권자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추심소송·공동소유관계소송 등의 소송구조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함에도 불구하고, 2학년 1학기에 민사소송법 과목에서 기판력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행정법 과목에서 행정소송에서의 기판력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무과목 시작 전인 2학년 1학기까지 주요 과목을 모두 마쳐야 하므로, 교과과정이 순서에 맞게 배치되지 못하고 억지로 끼워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위 실무과목들을 3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후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학교 입장에서는 교과과정을 순서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학생들도 기초이론을 조금 더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각 기관 별 채용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만, '로스쿨 교육의 충실화'라는 절실하고도 중요한 목표를 위해 법조실무에서도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 실무과목의 교육을 로스쿨에서 15학점(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 1, 검찰실무 2, 경찰실무 등 5과목 각 3학점씩)이라는 적지 않은 부분을 할애하여 진행하기보다는, 로스쿨 졸업 후 실무수습 과정에서 각 직역 별로 해당 직역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직무교육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로스쿨을 위해서도 해당 직역을 위해서도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 1학년 교과과정

위에서 제안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1학년 교과과정은 기본3법을 충실하게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전문법과목도 이 시기에 함께 수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간의 공부 끝에 겨울방학에 1차 시험(선택형, 객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선택형 시험의 경우 따로 '연습과목'을 수강할 필요 없이 기본이론 강의에 더하여 학생들이 각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2차 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졸업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1차 시험 난이도를 '기본기를 갖추었다면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하고, 합격자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점수제(절대평가제)로 함으로써, '자격시험화'라는 구호는 1차 시험 단계에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기출문제를 활용한 문제은행제 등을 통해 회차별 난이도를 균질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학년유급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학생들 스스로 2학년부터 이루어질 2차 시험 과목의 학습을 위한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면, '휴학 및 1차 시험 재도전'이라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로펌의 조기 컨펌도, 최소한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2학년 1학기 이후부터)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2학년 교과과정

2학년 교과과정은 후4법의 기본이론 강의 + 기본3법 연습과목(사례형 시험 대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2차 시험 준비 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1차 시험 합격 후에 수강하는 것이 2차 시험 대비에 유리할 것이므로, 학생들 스스로 2학년 진급 여부를 1차 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고민해 보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3학년 교과과정

3학년 교과과정은 후4법 연습과목(사례형 시험 대비) + 기록형 과목(기록형 시험 대비) + 실무과목(법원/검찰/경찰)으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기록형 시험과 실무과목이 폐지된다면, 그 여백은 1~3학년에 걸쳐 다양한 전문법과목·기초법과목이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3학년 과정을 마친 후 겨울방학에 2차 시험(단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을 치르게 됩니다.

5탈자 제도는 여러 비판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개선된 제도 하에서는 '2차 시험만을 기준으로' 종전과 같은 5탈자 요건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최종 합격자 결정 역시 '2차 시험만을 기준으로' 하며, 합격인원도 종전대로 변호사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1차 시험(자격시험화)과 달리, 2차 시험은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데도 실무에 나와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합격자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고, 일정 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 수를 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로스쿨 교과과정을 개편한다면, 로스쿨 3년 동안에 단계별로(1학년 : 기본3법 기본 다지기 → 2학년 : 기본3법+후4법 실력다지기 → 3학년 : 심화과정+실무과정)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체제에서는 암기량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선택형(객관식) 시험 공부(기출문제 풀이강의 반복학습 및 암기)가 3년 내내 따라다니는 상황이지만, 위와 같이 제도가 개편된다면 선택형(객관식) 공부는 1년으로 끝내고, 남은 2년을 사고력과 리걸마인드를 키우는 제대로 된 공부에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전문법과목 활성화 방안

발표자의 제안과 같이, 로스쿨 졸업요건으로 일정 학점 이수를 요구하는 학점이수제(P/F 평가방식)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도 전문법과목 시험을 존치하되 법조윤리와 마찬가지로 P/F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문법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이수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4. 보론 : 5탈자 문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탈자 제도는 현재로서는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1차 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구제가 어려우나,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최종 5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상당 기간 충실한 법학 교육을 이수하였고 1차 시험에 합격하여 석사학위도 취득한 것이므로, 이들에게 '변호사자격'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자격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로스쿨에 합격하면 주변에서 '이제 변호사 되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변호사도 못 되고 졸업 후 취직도 하지 못하면, 그동안 투자한 시간·비용·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어 엄청난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1차 시험 합격(합격증 발급) + 로스쿨 석사학위〉를 갖추는 경우 다양한 채용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검찰 공무원 채용, 경찰관 특채, 유사직역(법무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자격시험 중 일정 과목 면제 등의 혜택 부여하는 방법, 로펌 법률사무원이나 기업체·공공기관 채용 등에도 적극 활용하여 채용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도 시험에 최종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학부 법학 전공자들이 다양한 직역에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는 것처럼, 로스쿨 졸업생들이 비록 '변호사 자격'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다양한 직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토론

법학교육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문 1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문 1

이승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먼저, 두 분 발제자분들의 발제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소중한 발제 감사 드립니다.

2. 표준판례에 관해서는 제가 최근에 법률신문에 기고한 것이 있어,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 드립니다.[1)]

> 최근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의 모의시험은 최신 판례를 묻는 문항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공무원시험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는 판례공보에 수록되지 않은 판례들까지도 출제되고 있는데, 로스쿨에서 시험과목(행정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착잡함을 금하기 어렵다.
>
> 최신 판례를 출제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문제와의 중복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판례의 결론을 바탕으로 정오가 나뉘기 때문에 출제 오류 시비가 줄어든다. 또한, 수험생 간의 변별력을 높이기 쉽다. 나아가, 이제 막 실무에 진입하는 학생들에게 과거가 아닌 최근의 판례를 숙지시킨다는 교육적 효과도 있다.
>
> 그러나 지나치게 최신 판례에 집착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수험적으로나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학교육에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하는 것은 기존 판례의 판시나 결론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법학 방법론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판례는 이러한 법학 방법론이 잘 구현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하고,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학설과 판례의 논리적 충돌을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에 관한 철학적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수험 면에서도 최신 판례는 학생들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킨다. 교수 입장에서도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판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곤란하게 만든다. 사법고시 시절에 비해 공부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로스쿨의 현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신 판례, 특히 지엽적인 최신 판례까지 출제에 포함시키면 기본기를 다져야 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학생들이 원칙과 예외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문제인 사설학원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
>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판례의 결론을 맹신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출제된 최신 판례들 중에는 해당 판례가 공개된 직후부터 학계의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된 것도 있고, 판례의 결론에 부정적인 견해가 학계의 다수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판례의 논리와 결론만을 답습하는 문제를 출제하면, 수험생 대부분은 그러한 판례의 판시와 결론이 널리 지지받는 것으로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에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법률가가 아닌 법기술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
> 그러므로 최신 판례가 기존의 오랜 논의가 축적된 결과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어떤 판례에 대해 학계의 논의가 축적되려면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논의가 성숙된 판례들을 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판례들만 출제 범위에 포함시켜도 출제할 문제들

1) https://www.lawtimes.co.kr/opinion/211959

은 차고 넘친다.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그에 포함된 쟁점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쟁점은 당연히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존 문제와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쟁점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법조인으로서 기본기를 다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데 자꾸 예외적이고 지엽적인 것만을 지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예외적이고 지엽적인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변호사시험의 변별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것들은 변호사시험 이후 실무 교육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천적인 대안으로는 과목별 표준 판례를 정하고 해마다 연초에 이를 업데이트하여 출제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에도 몇몇 과목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구속력이 없었고 현행화가 되지 못하여 한계가 있었다. 교수들마다 강조하고 싶은 판례들이 다르겠지만, 변호사시험의 출제 범위는 전체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선정된 주요 판례 위주로 한정하고, 수업에서 법 이론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각 교수의 자율과 재량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법학교육은 법기술자가 아닌 법률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의 지나치게 수험화된 사법고시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법률가 지망생이 최소한의 법학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목표로 로스쿨이 출범하였으나, 오히려 더 수험화되고 사설학원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제 법학교육과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인 일설에 이를 정도로 견해가 다양하겠습니다만,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토론에 갈음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저의 사견이고, 제가 속한 학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저는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이 왜곡된 구조와 결과를 낳은 대표적 사례가 교육 영역, 특히 대학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허울 아래, 입학(학생 선발), 정원, 강의, 등록금 등 거의 전반에 걸쳐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고 반시장적인 통제를 한 것이 지금의 현실을 야기했으며(위와 같은 개입의 결과로 대체 무슨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학 스스로의 정당한 이익 추구와 자율성을 무분별하게 가로막은 결과 대학의 경쟁력은 날로 쇠퇴하였고 우수 연구자들은 해외로 유출되었을 뿐입니다. 서비스의 공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시장의 왜곡만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로스쿨도 이와 같은 잘못된 정부 개입과 규제의 과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불협화음 속에 기묘한 형태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 현재 국내 로스쿨 제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이 되어 관계자 전부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주지하다시피, 미국에서는 바 시험은 자격시험입니다. 로스쿨도 이러한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면, 매년 4만 명이 넘는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이들 중에 법조계에 몸담는 이들은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로스쿨의 인기는 하락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주요 로스쿨에서는 실질적인 법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바 시험 합격률이 높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하기 때문에 교수와 학교가 수험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LLM 과정을 마쳤던 Harvard Law School의 경우, 1년차는 공통과목을 위주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지만, 2년차부터는 학생 스스로 심화하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3년을 마치고 나면 최소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발전된 지식을 갖추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1학년부터 수험에 매달려야 하는 우리 로스쿨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미국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애초에 로스쿨이 그런 모델이니까요. 변호사시험은 완전히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법조시장에 진출하여 생존하는 것은 철저하게 경쟁에 맡겨야 합니다. 1년에 3천 명을 합격시키면 시장이 붕괴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4만 명 넘는 합격자가 배출되는 미국에서 법조시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는 졸업자들 중 과반 이상이 법조시장으로 진출하지 않기 때문이고, 애초에 미국에서 로스쿨을 가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법조시장 진출을 전제로 진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내 현실을 돌아봅니다.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합격자들이 취업도, 개업도 못한 채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 6급 계약직 변호사 채용 경쟁률이 10대1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천 명을 선발하면 최소한 2천 명 정도는 미취업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조시장 진출을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소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로스쿨을 진학하는 학생들 자체가 크게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정말 법을 공부하고 싶거나 법이 필요한 사람들만 로스쿨에 진학할 것이고, 각 로스쿨도 단순한 변호사시험 문제 풀이가 아닌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스쿨 중에는 로스쿨 인가를 반납하고 학부로 돌아가려는 곳도 생기겠지요 (이 경우, 정부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늘려 주어 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정원 통제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인 만큼, 정부가 학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 없는 일입니다). 시장은 파괴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어정쩡한 선발 숫자는 학생들에게 모두들 법조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정쩡한 기대를 낳고, 몇년 후 이들 중 많은 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힙니다.

합격자 증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변호사 자질의 하락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로스쿨 학생들의 수준과 신입 변호사의 수준이 날로 하락하고 있음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자질은 현재와 같은 교육과 선발 체계에서는 높일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자질 향상은 변호사시험 이후 시장에서 처절한 경쟁을 하도록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3천 명을 선발하면 변호사가 되어 법조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살아 남기 위해 처절하게 경쟁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쟁에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로스쿨을 가지 않거나 로스쿨 졸업 후 다른 진로를 택할 것입니다. 변협에서 1년 정도의 실무 교육 과정을 편성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변협의 실무 교육이 형해화되는 이유는 경쟁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면 변협의 실무 교육 참여율과 열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로스쿨 인가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임교원과 시설 요건을 법으로 정하되, 그러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정원은 그 요건에 맞게 늘려주어야 합니다. 로스쿨 간에도 경쟁이 필요합니다. Academic Degree가 아닌 Professional Degree를 부여하는 곳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는 학교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정상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퇴장하는 것을 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의 숫자의 적정치는 시장만이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변협이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현재 로스쿨 평가 제도 또한 대폭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도 말씀 드립니다. 로스쿨 교육의 질과 무관한 각종 기이한 평가기준들(예컨대, 도서관 장서(藏書) 수 등)은 모두 삭제하고 로스쿨의 현재와 미래에 맞는 평가기준들로 전면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현재의 기형적인 시험 제도 또한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3년의 부족한 교육기간 동안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실무교육은 변호사시험 이후로 미뤄야 하고, 기록형 시험은 폐지해야 합니다. 제대로 기초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 기재사항을 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다들 실력이 부족하니 할 수 없이 기록 맨 처음의 상담일지에 쟁점을 다 주는 기록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AI 시대에 소장 쓰는 방법을 일일이 외울 필요는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변호사자격 취득 후 실무교육으로 넘겨야 합니다. 변협 입장에서도 그토록 원하는 정원 통제를 하려면 실무교육 강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입니다. 예컨대, 변호사시험은 완전 자격시험화를 통해 자문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변협에서 1년 정도의 실무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송무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같은 것을 논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현재의 기록형 시험과 실무교육은 대체로 송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이렇게 변호사 자격을 이원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시험은 예전 사법시험처럼 선택형과 사례형으로 단순화하고, 과목별 융합 문제는 최소한 공법에 있어서는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과 행정법은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출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법 기록형과 사례형 마지막 문항이 매우 작위적이라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사법과 형법 규정에 대해서도 수많은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과 헌법 사례를 묶다 보면 문제가 한정되거나 아니면 작위적이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를 낸다 하여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실패로 판명난 이와 같은 무분별한 과목간 융합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는 풀이 시간을 최소한 2시간으로 늘리고, 현재와 같이 세부적인 쟁점을 쪼개어 내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가짓수를 상정하고 그에 맞게 법령을 토대로 학설과 판례를 반영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록형 시험을 굳이 남겨 두겠다면 아예 제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기록형 시험을 사법연수원 시절처럼 8시간, 최소 6시간은 보게 해서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하고, 진짜 기록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쟁점 하나하나를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6회 변호사시험 이래로 완전히 사라져 버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능력도 평가요소에 포함시켜야 하고요. 소장에 소송요건을 담게 하는 실제와 동떨어진 기록을 쓰게 하지 말고, 소장과 답변서를 각각 쓰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서 등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제와 채점의 부담이 늘겠지만 비용을 대폭 늘리고 인력을 추가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재정 투입도 하기 싫다면 완전 자격시험화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과목 시험도 현재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선택과목은 로스쿨에서 몇 개의 영역별로 코스웍을 만들고, 최소 2개 이상의 코스웍(최소 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코스웍을 운영할 것인지는 각 로스쿨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방안은 현재와 같은 3년제 로스쿨에서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며, 로스쿨을 4년제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필수과목의 수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코스웍을 이수해야 졸업요건을 갖출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제를 유지하면서 완전 자격시험화를 택하든 4년제로 변경하고 학습을 강화하든 어느 쪽이든 분명한 컨셉을 가지고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4년제로 할 경우, 법조인 양성기간이 길어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학부를 3년만 마치면 로스쿨 지원자격을 부여하거나 학·석사의 통합·연계 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로스쿨에 +1 과정을 신설하여, 3년 마치고 완전 자격시험화된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1년을 더 마치고 실무적 내용까지 소화하면 추가 자격을 부여하는 등 변호사자격을 2원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끝.

종합토론

법학교육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문 2

구본억 과장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법학교육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문 2

구본억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과장

종합토론

법학교육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문 3

이사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법학교육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문 3

이사백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1. 들어가며

변호사시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의 내실화, 주입식,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난 깊이있는 탐구, 선택과목 시험에 관한 균형잡힌 전문가 배출 같은것들이 주로 논의됩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고만 합니다)에서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사이의 연계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서 있다고 보입니다. 저 또한 법전원 교육이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되고, 법학교육의 내실화 및 깊은 탐구가 이루어지는것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몇가지 추가적인 논의나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이 법학교육의 실패로 평가될 문제인가?

검색의 편리성이 증대되면서 판례의 결론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세는 이미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부터 필연적인 것이었고, 실제로 AI가 상용화 되기 한참 이전부터 판례의 결과만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를 아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득점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되기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례의 결론을 얼마나 알고있는지를 주로 묻게 되는 방향으로 시험이 설계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판례에서 문제된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결론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그 논리를 이해함으로서 다른 유사한 사안에서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지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것입니다.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논리력을 저하시킨다고 보는 시각에는 동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히려 AI시대가 되면서 현재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논리를 설계하고 깊게 탐구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 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AI가 제시하는, 오류있는 정보에 대한 판별력은 다양하고 많은 판례의 결론을 아는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한된 숫자의 판례를 깊게 탐구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의 학습량을 줄여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수학능력평가시험으로 대표되는, 대학교 입학을 위한 제도가 그간 수없이 바뀌어 왔지만 정성적 평가기준을 올린다고 해서 학업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입시비리와 같은 문제점이 다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표준판례를 정하여 그 숫자를 제한하고, 그 안에서 논증을 하는 방식으로 시험방식이 변화했을 때, 실제로 학업부담이 경감될 것인지, 그리고 그 방식으로 평가 및 채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여전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전문화과목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졸업요건에 전문화과목 이수 기준을 도입하고, 평점을 P/F로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전원 재학생들의 전문화과목 응시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조정점수의 유·불리 때문에 특정 전문화과목에 응시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특정 과목에 응시생이 쏠리는것에는 단순히 그러한 사유(수험분량의 차이, 환산점수의 유·불리 계산)만이 있어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제거래법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 이용이 자주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법분야 또한 행정소송과 결합되어 실무적으로 이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응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노동법은 노무사가, 조세법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지적재산권법은 변리사가 그 영역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어 해당 분야를 수강, 응시하는것이 다른 전문화 과목에 비해불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전문분야에 대한 학습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반드시 법전원 단계에서 전문화과목을 '골고루' 수강 및 응시해야 하는지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나아가 법조인접직역(법조유사직역 보다는 다소 중립적인 단어인 '법조인접직역'을 사용하였습니다) 자격사들과의 갈등 문제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의 역량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변호사 및 법조인접직역의 자격사들 사이의 생존과 관련된 다툼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4. 결어

앞서 살핀바와 같이 법학교육의 정상화 및 변호사시험에서의 과도한 부담완화라는 측면에서 발제해 주신 교수님들의 의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종합토론

법학교육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문 4

홍수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제34대 의장)

법학교육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문 4

홍수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제34대 의장

법학교육의 내일, 공감이 쌓여 결단이 될 때
– 변호사시험 선택법과목 제도 개편 및 표준판례 연계출제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1.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소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학생대표단체로, 로스쿨 1기부터 결성되어 현재 16·17기를 중심으로 제34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전원 학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선택법과목 등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작업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등을 주요 현안으로 국회 입법과정 및 정부 논의 과정에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2.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안 제안을 위한 로스쿨생 설문조사' 취지

변호사시험 제도 변화와 더 나은 법학교육의 앞날을 위한 공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공론장에 정작 법전원 학생들의 자리는 턱 없이 좁습니다. 법전원의 3년 교육과정 속에 매일매일 숨 가쁘게 달리고 있는 법전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과 법학교육 개선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기에는 참여기회 자체가 애초에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합격률이 5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공론에 참여할 시간적, 심적 제약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설문조사 형식을 통한 의견 수렴마저도 그간에는 법학 교육자 위주로만 진행되어왔고, 그 내용 또한 학생 입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다소 요원하게 느껴지거나 교수님들의 의견마저도 파편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져 재학생으로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재학생들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 과정에 기록되고 반영될 수 있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하였던 변화가 조금 더 앞당겨지고, 그 정당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심포지엄 참석에 앞서, 오늘 주제발표 1·2에 해당하는 두 분 교수님의 발제문을 전달받은 후 설문조사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안 제안을 위한 로스쿨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항이 과도하게 광범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학협이

지난 10여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통적으로 추진해왔던 내용들과 오늘 토론회 발제 주제에 집중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가 추후 법안 논의 과정이나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들의 목소리라는 측면에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안 제안을 위한 로스쿨생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기간 : 25. 11. 17. (월) 09시 ~ 25. 11. 19. (수) 21시
2. 응답 인원 : 마감 시점 기준 총 267명 (전국 법전원 재학생 6,000명 중 약 4.4%)
3. 조사 내용 :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당일 주제1·2 발제문을 링크로 첨부하여 두 주제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시험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1) 선택법 시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폐지 또는 절대평가화/학점이수제 도입/유지 등)
   2) 표준판례 연계출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3) 변호사시험 과목에 대한 의견
   4) 변호사시험 유형에 대한 의견
   5) 휴식일에 대한 의견
   6) 합격률 및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의견
   7) 자유 의견 제시
4. 설문조사 링크

[QR 1] 설문조사 링크	[QR 2] 설문조사 응답결과 링크 (25.11.25. 1일간만 전체 응답 원본 공개)

4.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안 제안을 위한 로스쿨생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 재학 학년
   - 2학년 38.2%, 1학년 36.3%, 3학년 이상 25.1%

2. 선택법 시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폐지 또는 절대평가화/학점이수제 도입/유지 등)
   - 선택법 시험 폐지 및 학점이수(P/F)제 도입 65.2%
   - 선택법 시험 절대평가화 및 학점이수(P/F)제 도입 25.8%
   - 현행 유지 7.5%
   - 기타 의견

   - 선택법 시험 절대평가화, 학점이수제 미도입
   - 변호사가 되는데 과목을 특정해서 배우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7개 과목 다 공부하되, 시험 부담을 줄이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 모든 선택법 과목의 합격 점수 커트라인을 현행보다 완화(또는 절대평가화)하는 대신, 오히려 선택법

과목 수를 실무수요에 맞게 기존 7과목(1. 국제법, 2. 국제거래법, 3. 환경법, 4. 조세법, 5. 경제법, 6. 지식재산권법, 7. 노동법)보다 더욱 세분화 및 다양화하여 증설하되, 평소에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 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상 거의 공부하지 않았던[못했던] 부분을 별도의 선택법으로 분화시키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예컨대 8. 항공법(항공안전, 항공사업, 항공보안, 국제항공), 9. 물류·운송법(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10. 군사·안보법(군형법, 군사법원, 국가보안), 11. 선거·정치법(공직선거, 정치자금), 12. 부동산법(부동산등기, 부동산공법, 부동산세법), 13. 지방자치법, 14. 보건·의료법(의료법, 산업안전보건, 약사법), 15. 스포츠법, 16. 건축법, 17. 사회보험법 등 10과목 정도를 추가 개설하되, 모든 선택법 과목의 합격 점수 커트라인을 현행보다 완화(또는 절대평가화)하여 수험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특정 선택법 응시자에 대하여 해당 선택법 분야 유관기관에서 지원자의 취업서류를 평가할 때 해당 선택법 성적을 가점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표준판례 연계출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1) 표준판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 부정: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 48.7%, 아예 못 들어봤다 18.4%
- 긍정: 잘 알고 있다 20.2%
- 과목마다 다르다 12.4%

2) 표준판례 연계출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81.6%
- 아니다 17.2%

3) 표준판례 제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표준판례 연계율의 획기적 제고 66.3%
- 출제범위 표준판례 공시 등 접근성 제고 44.9%
- 출제범위 판례 수 축소 15.4%
- 기타 의견: 신뢰 및 인지도 제고 필요성 / 난이도 상승에 대한 우려

- 표준판례 운영할 거면 표준판례에서만 출제하고 외에서도 출제할 거면 폐지하라
- 표준판례 수 줄이면 난이도 올라갈 텐데 과연 좋은 일일지
- 교수님 글을 읽어보니 표준판례 내에서만 출제하게 되면 변별력을 위해 현행 시험과 출제방향이 달라지거나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려됩니다.

4. 변호사시험 과목에 대한 의견

1) 현재 선택법 외 7과목(공법 2, 형사법 2, 민사법 3)으로 이루어진 과목체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70%, 아니오 29.6%, 기타 1건 (어음 수표법 등의 출제 제외가 필요)

2) 어떤 과목의 비중이 확대되거나 축소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공법 축소 55.2%, 민사법 축소 22.4%, 형사법 축소 4.3%
- 민사법 확대 10.3%, 공법 확대 4.3%

5. 변호사시험 유형에 대한 의견

1) 현재 시험유형(과목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45.7%, 아니오 53.9%

- 기타 1건 (선택형 또는 기록형을 학년을 나눠서 보는것이 타당함. 예를들어 선택 사례만 2학년 끝나고 보고 기록만 3학년에 봄)

2) 유형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선택형과 사례·기록형 시험기간의 분리 (ex. 선택형-2학년 겨울, 사례 및 기록형-3학년 겨울) 43.2%
- 선택형 축소 30.1%, 기록형 축소 21%
- 기타 의견: 선택형 비중 축소 / 시험시기의 분리

- 2겨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임. 2-2는 사실상 형사법학기인데 그 기간에 형재실 검실 들으면서 전과목 선택형까지 하라고 하면 분리 안 하느니만 못할 듯
- 선택형 점수 축소 혹은 P/F로의 전환
-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한번에 시험보는 현 시스템은 오히려 제대로 된 학습을 막고 있다고 생각 됨 . 시험기간을 분리하거나 기록형 자체를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함. 현행 제도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로스쿨 생활 3년간 법학 자체에 대한 깊은 탐구보다 시험기술적인 측면에 몰두하게 함
- 선택형 축소,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기간의 분리
- 시험기간 분리(기간은 6모나 8모를 선택형으로 전환)에 기록형 폐지 적절(사례형과 구별되는 큰 의미는 없는데 부담이 과중, 실무수습기간에 배우는 것이 적절)
- 공법은 사례와 기록을 합쳐도 될 것 같습니다.

6. 시험 중 휴식일에 대한 의견
- 현재가 적당하다(5일 중 3일차에 하루) 58.8%
- 1일 더 늘어나야 한다 24.3%
- 2일 더 늘어나야 한다 9%
- 3일 더 늘어나야 한다 3.4%
- 휴식일을 없애야 한다 3.4%
- 기타 의견

- 월요일에 시작해야 한다
- 하루 시험치고 하루 쉬는 식으로
- 휴식일이 문제가 아니고 선택형 시험일을 분리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줄였으면 합니다

7. 합격률 및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의견

1) 현재 수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50% 초반)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 88%
- 적정하다 8.6%
-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 2.6%
- 기타 의견 2건 (입학생 수를 줄이고 합격률은 높여야 한다, 로스쿨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축소하고 합격자 수도 1200명 정도로 축소해야)

2) 변호사시험 자체를 의사 국가고시처럼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80.5%
- 반대한다 13.1%
- 기타 의견: 공통적으로 로스쿨 정원 축소를 전제로 한 합격률 제고 의견

- 합격률은 높여야 대신 로스쿨 입학 정원은 감소시켜야
- 로스쿨 정원 감소 후 절대평가제 도입

- 찬성하고, 변호사 수의 급증이 문제라면 차라리 로스쿨 정원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존 취지와 맞게 가야한다고 생각함. 제도자체는 절대평가에 의해 선발하기로 설계해 놓고 실제로는 상대평가도 절대평가도 아닌 방식으로 운영하는데에 문제가 있음.
- 로스쿨 입학 인원을 축소하되 입학한 인원들에 대한 수험식 강의가 아닌 질 높은 법학전공 수업을 통하여 리걸마인드를 기르고 합격률을 점차 상승시켜야함
- 지금같은 50퍼는 극단적이지만 60~70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5년 내 5회제한을 바꿔서 7~10년 내 5회 정도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음

8. 자유 의견 67개 ([별첨 1] 참고)
   - 로스쿨 입학 정원 축소 및 합격률 제고는 공통적 의견
   -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학원화, 사교육 의존 심화에 대한 공통적 문제의식
   - 타 국가고시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5. 결론: 법전원 학생들의 요구사항 요약

1. 선택법과목 - 변호사시험에서 폐지 또는 절대평가 전환, 학점이수제(P/F) 도입
2. 표준판례 연계출제 제도 - 도입 찬성
3. 단기 암기 위주의 선택형 시험 비중 축소, 시험시기 분리를 통한 부담 경감
4. 로스쿨 입학 정원 축소를 전제로 한 변호사시험 절대평가화 또는 합격률 제고, 법학 교육 실질화와 실무 역량 강화 및 진로 다양화

이상의 결과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전원 학생들의 의사는 위와 같습니다. 제34대 법학협에 해당하는 지금 완전히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제16대 법학협 논의 안건에서부터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졸업생이나 현직 변호사분들과도 충분히 공감대와 접점을 이뤄낼 수 있는 주제들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공감대가 이어져 온 주제들인 만큼 법학 교육 실질화를 위한 변화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선택법시험 과목과 관련한 응답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다수가 학점이수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제도 변화에 찬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학생들이 선택법과목을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과목의 다양성을 늘리거나 학습 기회를 늘려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기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선택법과목 개편은 학생들의 과중한 시험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학교육의 실질을 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법안도 이미 발의 되어있는 만큼, 법학 교육자 여러분께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의지를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준판례 연계출제 제도 도입, 선택형 비중 축소 또는 시험 시기의 분리에 대한 공감대도 강한 편입니다. 선택형 시험 시기 분리와 관련하여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그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법전원 교육과정의 일정 부분 조정과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앞으로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 교육이 본래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과도하게 수험 집중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서 공통적으로 안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어느 정도 뚜렷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전원 재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귀한 자리에 저를 종합 토론자로 초청해주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전원 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첨 1] 자유 의견 67개 답변

- 법학 교육 개선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 재학생들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길 기회가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응답 중에서는 공통적인 의견은 토론문 원본에 남기고 삭제하였으며 기타 의견들을 최소한만 편집하고 대부분 원본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은 찬성하나, 절대적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바가 아니라 로스쿨 입학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변호사 배출 수를 결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매년 시험을 치룬 학생들을 볼모로, 변호사협회와 대학원 사이 합격자 수에 대한 이견에 따라 갈등을 빚고 시험 발표 당일 합격자 수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됨.
- 변호사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나, 법전원 1학년 시기에 학부에서 법학과목을 접해본 사람과 접하지 않은 사람이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1학년 1학기에는 PF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정한 시기는 1학년 전체를 PF로 하고, 그 후에는 성적을 매기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 1. 오픈북 및 표준판례의 점
  표준판례 발제문을 보니 오픈북을 고려하시는거 같았는데 그 경우 변별을 위해 시험이 오히려 더 어려워져서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보여 걱정됨. 물론 오픈북 자체는 해당 발제문과 같은 취지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시험범위를 제한하거나 오픈북을 도입한다면 변별을 내기 위해서라도 결국 어떻게든 시험은 어려워지게 될것으로 예상됨. 표준판례 도입의 취지 및 도입 자체에는 동의하나 합격률 혹은 채점방식이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면 결국 수험생의 부담 완화의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수도 있을것같아 우려됨.
  특히 암기 부담이 줄어든 대신 변호사로서 법리구성력 등을 시험이 새로 묻게 된다면 결국 판례는 기본 소양으로 외우게 될거같고, 시험시간을 고려하면 시험장에서 판례를 검색하고 있을 시간은 더더욱 없을 것 같으며(결국 외워야한단 소리.. 법전이 주워져도 주요 조문은 결국 외우는 것처럼…) 로스쿨 3년 내에 법리이해도 벅찬데 법리구성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지 걱정됨
  2. 객관식 시험 분리 및 그 시기
  객관식시험을 분리하여 1,2차로 나누어 시험 치는 것에서는 강하게 동의하고 지지함
  그러나 2-2는 현실적으로 형사법학기고 형재실과 검실로 정신이 없는데 학기 종료 후 변시 객관식을 치라는 건 결국 그 기간에 전과목 객관식 공부까지도 병행하라는 소리인데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것 아닌지 의문임. 지금 변시치는 1월이나 아니면 12월에 객관식 먼저 치고 2월에 사례형 치는 수준만 되어도 지금보다 수월할듯함. 객은 어차피 omr일테니 성적도 빨리 낼 수 있을것으로 예측됨.
  3. 선택법의 점
  선택법 수업을 확대하는 대신 성적부담을 줄이고 변호사시험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에 적극 동의함. 시험 부담만 아니면 전부터 선택법 자체는 여러과목을 수강해보고 싶었음. 로생이 단순히 선택법이 싫어서 시험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해주십사 함.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법 위주로 개설도 많이 되기를 희망함.
  4. 절대평가의 점
  험생으로서는 적극 찬성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한다는 반대에 직면해 좌초되게 되거나 시험 자체를 어렵게 해서 현행과 같은 합격률을 유지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절대평가 컷 자체가 높게 설정된다거나 하는 상황도 걱정됨. 일단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있는지, 절대평가를 시행한 결과 학생의 부담이 더 커지지는 않을지 걱정됨
- 1. 기록형을 축소(내지 폐지)하고 사법고시 체제에서와 같이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에 적합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록형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도, 합격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운영 방안이 더욱 적절할 것 같습니다.
  2. '변시 낭인'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치열한 변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로스쿨이 아닌 학원에서 또 법을 배웁니다. 변시 합격률이 떨어지고 n수생이 쌓여가면서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법학 공부를 더 보충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무척 해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격 방식과 합격률에 대한

깊은 고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생들은 의학을 배우기 위해 사설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의대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학생들은 90% 이상 의사가 되고, 일단은 의사가 되어 사회에 나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경쟁하고, 그 때 새로운 평가를 받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을 차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대표적인 표준 판례를 적극 활용, 분량도 축소하여 최신 판례 외우기식 공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컴퓨터 검색으로 모든 판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AI 시스템이 판례를 요약해줍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수기식 시험을 IBT로 변경한 것과 같은 이유라 생각합니다.

- 교수님들 고생 많으신건 알지만, 자꾸 이상만 쫓지 마시고, 법조시장에 진출할 후배들에게 먹거리를 넓힐 방안을 대한변호사회와 협업하여 고민해보셨음 합니다. 현재 법조시장 구조 하에서는 변호사시험 제도 백날 고쳐봐야 어차피 합격률 80~90%까지 결코 올릴 수 없습니다.
- 변시를 국시처럼 바꾸는대신, 로스쿨입학허들을 높이고, 법전원차원에서 유급제도를 적실성있게 운영해야함. 변시 하나로 모든게 좌우되니 법전원은 그냥 3년짜리 입시학원이되어버림.
- 현재 로스쿨생에게는 계절학기를 통하여 학교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로스쿨생도 수강할 수 있는 계절학기 수업을 개설함으로써 학점 병행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켜 학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법전원 정원축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격률을 더 높여 지금보다도 변호사 배출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결국 모든 문제는 합격률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격률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궁극적으로 로스쿨 정원을 감축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늘리는 것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법조생태계를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포화를 막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만 낮추면 비용과 시간만 더 많이 드는 사법시험이 될 뿐이고, 그렇다고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률만 높이면 지금도 일감이 없는 변호사들의 생계가 힘들어지고 로스쿨 학벌만 공고해집니다. 재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긴 힘들겠지만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 암기 중심의 시험 방식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험 구조에서는 법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판례 결론을 최대한 많이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으로 직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지는 의문입니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중시하는 교수님들은 판례 암기를 강조하는 반면, 그와 같은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교수님들은 시험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게 드러나고, 학생들은 그 괴리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표준판례 제도의 개선이나 객관식 시험의 축소·폐지와 같은 변화는 이러한 괴리를 좁히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이 법률가로서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로스쿨 입학 정원 축소 및 4년제 도입, 졸업시험 + 변시 성적 기반 절대평가화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80%이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제도는 로스쿨을 도입할 때의 그 취지와 정반대의 현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낮은 합격률로 인한 시험부담 증가로, 오로지 시험과 관련있는 과목과 수업방식에만 학생들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성화 과목은 물론 다양한 선택법 과목들은 듣고 싶어도 변호사시험 준비의 부담이 커서 들을 수 없고, 상당 수의 학생들이 학원 강의 등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백만원의 로스쿨 등록금을 내고도, 또 수백만원의 학원비를 들여서 인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학원처럼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찝어주는 강의만을 선호하게 되고, '법학'을 위한 강의는 폐강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로스쿨제도로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화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없습니다. 합격률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 선택법 pf제도 시행
- 객관식 시험의 비중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사례형 시험과 기록형 시험에서도 암기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객관식이야 말로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험 유형이라고 생각함. 실무에서도 이러한 객관식 시험 대비를 하는 학습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임.

- 기록형 시험은 실무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단시간 내에 서면을 작성해야하는 것이 아닌데도 현행 시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실무 중심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선택법 또한 문제입니다. 과목 쏠림현상으로 인해 전문성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재학중 소정 학점수를 필수이수케하고 특정 선택법을 많이 이수한 사람에세 우수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탈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정과 관계없이, 5년 후엔 응시자격이 박탈되는것은 3년간 로스쿨 제도 속 학업을 계속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모든 사정을 다 고려하는게 어렵다면 일정 제한을 두고 그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 한해 오탈을 유예해주는 등의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지적해주시고 계시지만, 변호사 시험이 법리를 아는가 보다는 특정 판례를 아는가에 치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법리 및 판례법리를 배우고 실무를 통해 법조인이 되는 변호사 시험의 기본틀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선 표준판례 도입이 필요하며 올해 형법 문제의 학설문제와 같은 형식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 선택법 폐지 / 선택형 축소 / 공법 축소 / 변호사시험 3일 추가 /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조정(95%) / 절대평가 자격시험화
- 선택법 제도 폐지가 반드시 속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총평) 과거 사법시험과 비교해보아도 점점 제로베이스에서 3년 안에 공부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분량과 높은 수준을 요구 2.(시기)선택형과 논술형 분리실시 필요 3.(과목)아울러 기록형.선택법 같은 독자적 의미를 상실하고 과도한 부담만 주는 과목 폐지 4.(내용)시험문제가 지나치게 시간에 쫓기게 출제. 이러니 단순판례암기 공부로 변질. 표준판례 내에서 어느정도 생각할 여유가 있는 종합적 문제를 내야함 5.(기타)교대근무없이 현업을 하는 경찰 입학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 및 학사관리위반 등 총체적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규제 필요
- 변호사시험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그 합격률이 50%에 불과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신림동 고시촌에 있던 학생들이 전국 20개교에 나뉘어진 것 뿐, 사법시험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 의사들과 달리 변호사는 현재 공급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어 취업에 있어 문제가 큽니다. 채용에 관한 부분도 해결되어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재보다 높이겠다는 것이 실효성 있을 것입니다.
- 14회에서 형법 학설문제가 출제됨. 판례를 암기하자고 제도를 만들어놓고 다시 사법고시화 하고 있음. 학설문제를 변호사 시험에 제출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 후 재발방지를 요구해야함
- 첨부자료에서 제시되어 있는 안 중 선택법에 대한 객관식시험 시행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전문화 분야를 가지게 하려는 의도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수험 측면에서도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법 시험을 시행하지 않되 일정 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십시오.
- 선택형의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형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우 방대한 양 때문에 단기암기 방식으로 공부하는데 실질적으로 남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공부할 범위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 두 분 교수님 발제문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 변호사시험이 15회 가량 이루어져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에서 출제가 많이 이루어져 점점 지엽적인 쟁점이 등장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택형 방식의 비중을 줄이고, 표준판례 연계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법학적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다른 시험을 치르고 다른 일을 하다 온 사람으로서,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은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정형적인 문서를 보는 법을 익히고 실무적인 기초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크며, 선택형 방식에 비해 실무가 양성이라는 법전원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정 최신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르는 식의 문제출제는 지양되어야 함. 출제 범위를 일괄적으로 표준판례 형식으로 범위가 정해져있으면 모를까, 그런 방식이 아닌 이상 특정 최신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문제의 전반을 구성하는 식의 문제출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초 법리에 대한 학습이 아닌 개별적, 구체적 최신판례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이상적인 법학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즉, 해당 최신판례의 사실관계를 잘 모르더라도 3년 간 학습한 기초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충분히 결론을 이끌어날 수 있는 식의 문제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보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들에게 사례집이나 최신판례집이 아닌 탄탄한 법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본서'를 보게 하라."
- 현행 시험 내용의 경우 최신판례 의존도가 상당한 한편 상대평가로 인해 단 몇점 차이로 합불이 갈리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최신판례는 당연히 중요하고 변호사 수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려하지 못할 것은 아니나 당초 변호사시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작 중요한 법리인 표준판례의 학습을 게을리하고 단순 최판 암기로 이어지는 것은 옳은 방식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습량이 부족한 학생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는 것은 변호사의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소 지엽적인 최신 판례 위주보다는 중요도가 높은 표준판례의 연계비율을 높여 변호사시험의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합/불을 가르는 방식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제 변호사로서 역량이 갖추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선택법 폐지되면 법조직역이 오히려 축소될 위험.
- 오탈폐지해라 5번이 무슨 기준으로 정해진지도 모르겠고 3학년때 휴학하거나 졸업유예하면 시험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고시낭인 방지효과도 미미함
- 4년제로 전환하며, 정원을 줄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수험난이도가 급상승하면서, 수험법학이 이론법학보다 중요해져버렸습니다.
  4년제로 바뀌면서 생기는 재정적 부담보다, 들어와서 외부 인터넷강의, 재수,3수 비용이 더 심각합니다. 현재 수강생의 80%가 메가로이어스, 해커스 강의를 듣고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어떤 문장을 적어야 점수를 받는지. 알려주고, 영어단어 외우듯이 해당부분을 반복시킵니다. 이론적 토대 없이도 암기만 잘하면 고득점이 가능해집니다.
  교수님들은 위와 같은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라.... 수업과 시험의 괴리가 큽니다.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동 없이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 등 타 자격시험과 비교하여 수험생 집단이 결코 학업능력이 뒤떨어지지 않고, 4년의 대학과정을 거치고 LEET 시험 등으로 선발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대 등 보다 입학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시험만이 아직도 계속 수험생간 치열한 경쟁을 요구합니다. 의사 등 타 전문직은 자격시험임에도 전문성에 대해 다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만 다른 집단과 다르게 자격시험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쟁덕분에 수험생이 지출하는 사교육비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더욱 학교수업보다 학원수업과 선행이 위주가 되는 로스쿨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시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별 편차가 심해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cbt 도입을 이유로 시험 시간 내 작성하기 어려운 난이도 내지 분량을 출제하고, 변호사시험 목적인 3년 동안 성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난이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로 인해 하향평준화가 되면 중위권 변별력이 상실되는 문제도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합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장수생, '5탈자'가 매년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5년 내 합격이 아니라 5회 응시 내 합격으로 바뀌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병, 가정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한 해에는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 사례 기록형 시험시간 늘릴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리를 모르면 시간을 아무리 줘도 어차피 못쓰는데, 굳이 타임어택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안지를 풍부하게 쓰길 요구하면서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로스쿨 학생들과 서울권로스쿨 학생간 수업격차가 너무 심함. 현재 시행되는 민재실 형재실처럼 각 로스쿨별로

좀더 통일되고 일정한 내용의 수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인강학원만, 재수종합반 학원만 배불리는 제도는 이제 멈춰졌으면 합니다.
- 변호사시험 오탈제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험들은 다 오탈제도가 없는데, 오직 변호사시험만 오탈제도가 존재합니다. 오탈제도가 있어서 고시낭인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고는 하지만,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법무사시험을 많이들 보는것을, 생각한다면 오탈제도가 고시낭인이 생기는 것을 막는 옳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 우선 변호사시험 이야기에 앞서 의사 국가시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의사 국가시험은 한정된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닌 성취 여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점수를 매기며 일정점수 이상을 달성하면 합격합니다. 다만 의사와 변호사의 큰 차이점은 인턴으로서 생활하는 기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합격 후 실무수습기간을 가지긴 하지만 그 기간이 6개월이고, 실무수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냥 6개월간 변호사 업무에 적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법시험의 시절의 경우에는 수년간 사법시험을 공부하여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 가서 추가로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3년 이내에 그 모든 것들을 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인 이상,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뿐더러 효율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정수준의 법학에 대한 이론적 이해 토대를 기초로 쌓여진 실무경험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례와 객관식으로 법리를 이해하는 것과 실무상으로 직접 일을 하면서 체감하는 것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도 로스쿨생들을 위한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매우 짧으며 실제로 실무를 체험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생들은 수업시간 이외에도 원래 자습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습시간 중 일부를 차라리 실무수습으로 전환하여 그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개인들에게 자습시간을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습을 통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학생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일부 강제적인 교육과정인 실무수습을 통해 전반적인 법조인으로서의 업무 역량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전에 앞서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여 사회 여러 곳에서 개인의 전공과 법학을 연계하여 그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정부 및 공공기관 법원 검찰 법무법인등과 협력하여 로스쿨생들의 실무수습을 방학뿐만이 아닌 학기중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일주일 중 3일 정도는 법원, 검찰, 법무법인 중 하나로 출근하여 변호사 검사 판사님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정형화된 간단한 사건들을 위주로 경찰의 송치의견서를 로스쿨학생들에게 검토하게끔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사들이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의뢰인과의 상담일지를 토대로 서면의 초안을 작성하게 하여 변호사들이 이를 이용하여 서면을 완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끔하는 것입니다.

즉 본격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을 통해 변호사, 검사, 재판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기 전에 주니어 변호사, 주니어 검사, 주니어재판연구원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비밀 서약 의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사건의 경중도를 구분하여 비교적 그 내용이 가벼운 내용에 대하여 로스쿨생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로스쿨생들에게 사법연수원생과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한 뒤 비밀서약 의무 등을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검찰, 법원, 법무법인의 업무 부담을 덜어내는 역할을 하면서도 로스쿨생들의 실무경험도 쌓아올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각 기관들의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잘 설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로스쿨생들에게 한시적으로 사법연수생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여 각 기관들과 협력해 주니어 법조인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업무시간에 따라 일정수준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실무로서의 역량도 쌓을 수 있을 뿐더러 로스쿨생들에게도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의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 불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현재는 3년의 교육과정인 로스쿨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시간이 1년이나 늘어나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대다수가 변호사시험을 1월에 쳐서 4월에 발표가 나고, 미리 취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5월 이후에 취업을 하여 6개월 간 실무수습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6개월간의 실무수습과정과 변호사시험 이후 발표까지의 기간을 합쳐서 교육과정에 넣는다면, 법조인으로서의 활동하는 시간이 기존의 제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로스쿨을 다니면서 이미 주니어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일부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찰, 법원, 법무법인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주니어법조인으로서 어떤 업무를 배당할 것인지, 어떤 기관들과 연계하여야 할 것인지, 출근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과제를 내주는 형식으로 업무를 할 건지 등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으로 법학에 대한 공부도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실무를 제외한 현재 로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업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를 구성할지도 긴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로스쿨생으로서 느끼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토대로 작성해본 글이니 혹시 저의 의견 중 유용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현재 로스쿨의 문제점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5번 불합격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 현 상황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원들의 태도가 심히 실망스러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운영 초창기에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을 때도 직접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실제로 이를 막아낸 것은 학생들이었고, 교원들은 수수방관하는 모양새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음. 단순히 방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변호사 같은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는 취지의 극언을 언론에 쏟아낸 교원도 하나 있음. 지식인으로서 스스로의 행적을 부끄러워하셔야 하는 분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 생각함.
- 다른 고시들처럼 변호사시험도 1,2차를 나눠 선택형을 1차로 본다든지 해서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 재판실무,·민사집행법·요건사실론 등 교과과정의 실무화 및 내실화를 위한 4년제로 전환, 합격후 6개월 실무수습의 실질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후 4-2학기 실무수습 진행 검토,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위해 장학제도 확대 및 내실화
-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가 전제되어야 함.
- 로스쿨 합격 인원을 축소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상승시키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입학 전부터 해왔던 생각이며, 애초에 합격가능성이 없는 이들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보다는 합격가능성 있는 이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시켜 업계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비법에게 3년(실질 2년 반 이하)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4년제로 바꾸고(법대 등은 3년제 선택) 신입생 1500명 모집, 합격자수 1300~1400정도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 로스쿨 정원이 과다한 것이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memo

memo

memo

memo

2025년 법전원협의회 심포지엄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AKLS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